

법인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개혁에 관한 연구

2012. 12

안종석·김성태

Kipf 한국조세연구원

서 언

본 보고서에서는 법인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개혁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법인세는 국내 법인에 대한 자기자본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부분요소세로서 법인과 비법인 간, 국내와 국외 간, 차입과 자기자본 투자 간 배분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배당세액공제제도 도입, 세율 인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왔으나 아직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법인세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투자 및 재무구조 왜곡효과를 제거하면서 적절한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인세 과세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의 추진방향을 보아가며 큰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선도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민의 일환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개혁방안들의 의미를 점검하고 그 방안들을 우리나라 경제에 접목시켰을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가 앞으로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안종석 선임연구위원과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김성태 교수가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이 연구를 총괄하고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 개혁방안의 특성, 국내 도입시 세율 및 세수효과 분석 등을 담당하였으며 김성태 교수가 CGE 모형을 활용하여 근본적 개혁안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좋은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완료한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린다. 그리고 광태원 서강대 명예교수, 원광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본
원으로 자리를 옮긴 김학수 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의 황정훈
과장께서 연구자문위원으로 초기부터 중간보고·최종보고 세미나까지 연구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언을 해주셨다. 이들의 조언이 이 보고서의 완성에
큰 힘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분들의 노력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최종보고서를 평가한 익명의 평가자 두 분께도 감사
드린다.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교정을 담당한 박소희 연구
원, 원고의 정리를 담당한 홍유남 주임연구행정원, 보고서의 교정 및 출판
을 담당한 연구출판팀 직원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서 본 연
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2012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조 원 동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법인세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

법인세는 생산요소인 자본에 대한 과세로서 기업활동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법인세의 부과로 인하여 기업의 자본비용이 상승하면 국내 법인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도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의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세후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면 그 배당소득에 대해 주주 단계에서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는 법인의 재무구조를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법인세제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온 것으로서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법인세의 투자 위축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이중과세를 배제·완화하는 방법으로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법인세제의 두 가지 문제점은 아직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1993년에 34%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에는 22%가 되었으나 법인세의 투자 왜곡 효과가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주변 경쟁국들의 세율이 20% 수준 또는 그 이하인 경우가 많아 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경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과세와 관련해서도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긴 하였으나 낮은 세율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이중과세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중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

는 방법은 법인세를 폐지하고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을 소득세로 징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 폐지에 대해서도 법인이 주주와 분리된 독립된 실체로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 세무행정과 세수입 확보 목적상 법인단계에서의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 등 반론이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던 법인세를 폐지한 국가는 아직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법인 단계에서의 과세를 유지하면서 법인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 현금흐름(cash flow)을 기반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이자와 배당에 대해 동등하게 과세하는 포괄적 법인세(CBIT: Comprehensive Business Income)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EU에서는 ACE(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 근본적 개혁방안의 비교

현행 법인세제는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하는 과세체계인데, 이를 현금주의 과세로 전환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금흐름 과세에서는 투자 시점에 투자된 금액을 모두 비용으로 공제하므로 결과적으로 자본비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다. 또한 차입된 자금과 자기자본을 구분하지 않고 자금이 투자되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재무구조를 왜곡시키는 효과도 없어진다. 자본비용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인세는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초과수익(지대)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된다.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석유개발로부터 발생한 지대에 대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수단으로 현금흐름 과세가 사용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금흐름 과세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현행 발생주의 과세체

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본비용 공제(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ACE)제도이다. 이 제도는 법인소득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무위험자산의 수익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자본비용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므로 법인세가 한계적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인세는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초과수익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차입금과 자기자본에 대한 과세상 취급이 동등하여 법인세의 재무구조 왜곡효과가 사라진다. ACE제도는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크로아티아에서 도입하였다가 폐지한 바 있으며, 브라질과 벨기에에서는 아직 유지되고 있다.

ACE는 법인세가 유발하는 여러 가지 왜곡을 제거한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는 반면 과세표준이 축소되므로 도입 이전과 동등한 수준의 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명목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한계적 투자만을 고려할 때는 독점적 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므로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의 신설이나 국제 이동 등의 경우에는 총투자에 대한 평균 세부담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때 명목법인세율의 인상은 국제 투자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기술력 등 독점적 이익을 창출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해외 자회사 설립을 고려할 때는 평균 세부담이 높은 국가를 회피하게 된다.

CBIT(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는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비용뿐만 아니라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차입금과 자기자본에 대해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재무구조 왜곡을 축소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본비용에 대한 과세는 유지되므로 투자 왜곡 효과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과세표준이 확대되므로 평균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 제도는 아직 도입된 사례가 없다.

3. 근본적 개혁방안의 경제적 효과

본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ACE나 CBIT를 적용하는 경우 세부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투자와 경제성장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ACE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ACE1)에는 세수입이 27.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낮은 세율 제도를 폐지하고 초과수익에 대해 전액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ACE2)과 자본비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ACE3)을 검토하였는데, 전자는 세수 증대효과가 미미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ACE1에 비해서는 세수가 상당히 증가하나 ACE 도입 이전과 비교해서는 14.9%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중립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려면(ACE4) 자본비용에 대해서는 2010년 기준 11%(지방세 포함)보다 14.9% 높은 12.639%를 적용하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24.2% 대신 27.806%를 적용해야 한다. CBIT의 경우 현행 법인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CBIT1) 세수입이 15.8% 증가하며, 세수중립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면(CBIT2) 낮은 세율은 9.5%, 높은 세율은 20.5%가 된다.

투자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CBIT는 투자를 감소시키는 반면 ACE는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증가·감소 효과는 실효세율의 변화 크기에 비례하여 CBIT1과 ACE1의 경우에 효과가 크고, 세수중립적인 CBIT2와 ACE4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변화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의 경우에도 ACE는 GDP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반대로 CBIT는 GDP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변화의 크기는 실효세 부담의 크기에 비례하여 ACE1과 CBIT1의 경우에 변화가 크고, ACE4와 CBIT2의 경우에는 미미한 정도의 변화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책시사점

우리나라는 법인세 과세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 지금까지 큰 고민을 하지 않고 대체로 다른 국가들의 추진방향을 보아가며 큰 흐름을 그대로 따라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선도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비용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ACE3의 경우에는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로 구분되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하에서 검토해볼 만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세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세율구간을 설정하고 누진적 세율체계를 적용하는데, 이와 같이 과세소득의 규모를 기준으로 차등적 과세를 하는 데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명목상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조치로 인식되지만 중소기업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고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과세소득의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대기업을 구분하는 것도 타당성이 부족하다. 투입되는 자본 단위당 수익률이 매우 낮은 기업도 대규모 기업이라는 이유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문제도 있다. 이는 기업을 분할하여 소규모로 운영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이 단일세율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CE3은 단일세율체계만이 대안이 아님을 보여준다. 과세소득 규모가 아니라 수익률을 기준으로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 적용 대상을 구분하면 기업의 소득 중 자본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경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 규모 조정 유인이 사라진다.

목 차

I. 서 론	19
II. OECD 회원국의 법인세 과세체계 변화 추이	23
1. 법정세율 변화추이	23
2.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현황과 변화 추이	28
3. 한계유효세율 변화	34
4. 법인세 수입 변화 추이	37
5. 요약 및 시사점	40
III.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	44
1. 법인세 과세체계의 문제점	44
가. 투자에 대한 과세	44
나. 자기자본에 대한 이중적 과세	49
다. 과세체계의 복잡성	51
2.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	52
IV. 근본적 개혁 대안 논의	58
1. 현금흐름 과세(Cash Flow Tax)	59
가. 현금흐름 과세제도의 특징	59
나. 현금흐름 과세제도의 도입 사례	63
2. 자본비용 공제제도(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ACE)	65
가. 자본비용 공제제도(ACE)의 특징	65
나. 자본비용 공제제도(ACE)의 도입 사례	70
3. 포괄적 사업소득세제 (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 CBIT)	73

4. 근본적 개혁안의 비교	75
5.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 문헌조사	78
가. 에스토니아의 현금흐름 과세에 대한 평가	79
나. 크로아티아의 ACE에 대한 비판	80
다. 브라질의 ACE에 대한 평가	81
라. 유럽의 ACE, CBIT 도입에 대한 모의 실험	83
마. 요약 및 시사점	89
 V. 우리나라에서 ACE, CBIT 도입 시 세부담 변화 분석	91
1. 자료 및 분석방법	91
2. ACE를 적용한 경우의 세부담 변화	97
3. CBIT를 적용한 경우의 세부담 변화	101
 VI. ACE, CBIT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CGE 분석	104
1. 법인세의 귀착과 일반균형 분석의 필요성	104
2. Dynamic CGE모형 및 자료	106
가. Dynamic CGE모형의 개요	106
나. Dynamic CGE 분석 모형 개요	107
다. 자료	111
라. 모수(parameter)	113
3. 법인세 개편방안	115
가. 모의실험 방법	115
나. 모의실험 구성	117
4. 법인세 개편방안 모의실험 결과	122
가. 법인세 개편이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	122
나. 법인세 개편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파급효과	136
다. 법인세 개편의 세수효과	141
5. 요약 및 분석의 한계	144

VII. 요약 및 결론	148
참고문헌	154
〈부록〉 동태 CGE 모형 설명	166

표목차

〈표 II-1〉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지방세 포함)	26
〈표 II-2〉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분포	27
〈표 II-3〉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체계(2012년)	29
〈표 II-4〉 배당에 대한 총세부담(법인세+개인소득세)	31
〈표 II-5〉 배당에 대한 총세부담에서 법인단계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	33
〈표 II-6〉 총세수입에서 법인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추이	38
〈표 II-7〉 법인세 수입의 GDP 대비 비중 변화 추이	39
〈표 III-1〉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체계(2011년)	50
〈표 IV-1〉 주요국의 해외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74
〈표 IV-2〉 브라질의 ACE 도입에 따른 유효세율의 변화	82
〈표 IV-3〉 ACE와 CBIT 도입의 경제적 효과 모의실험 결과 (2007)	84
〈표 IV-4〉 각국이 독립적으로 ACE와 CBIT를 도입하는 경우의 효과 분석	86
〈표 IV-5〉 유럽국가들이 동시에 ACE, CBIT를 도입하는 경우의 효과 분석	87
〈표 IV-6〉 독일에서 ACE, CBIT를 도입하는 경우의 세부담 변화 분석	88
〈표 V-1〉 산업분류 매칭 표	94
〈표 V-2〉 세전수익과 법인세 비용, 이자비용과 자기자본	96
〈표 V-3〉 현행 제도와 ACE를 적용했을 때의 실효세율	98
〈표 V-4〉 ACE 적용에 따른 실효세율 변화	99

〈표 V-5〉 CBIT를 적용한 경우의 실효세율과 세율 변동	102
〈표 VI-1〉 분석대상 산업, 소비재화, 소득계층 분류	110
〈표 VI-2〉 주요 파라미터 값 및 출처	114
〈표 VI-3〉 28개 산업별 생산의 대체탄력성(σ)	115
〈표 VI-4〉 법인세 개편 모의실험	118
〈표 VI-5〉 법인세 실효세율	121
〈표 VI-6〉 법인세 개편이 투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123
〈표 VI-7〉 법인세 개편이 자본스톡에 미치는 파급효과	124
〈표 VI-8〉 법인세 개편이 GDP에 미치는 파급효과	126
〈표 VI-9〉 법인세 개편이 소비에 미치는 파급효과	128
〈표 VI-10〉 법인세 개편이 정부지출에 미치는 파급효과	129
〈표 VI-11〉 법인세 개편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파급효과	131
〈표 VI-12〉 법인세 개편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	132
〈표 VI-13〉 법인세 개편이 실질임금에 미치는 파급효과	134
〈표 VI-14〉 법인세 개편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135
〈표 VI-15〉 법인세 개편이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136
〈표 VI-16〉 법인세 개편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파급효과	137
〈표 VI-17〉 법인세 개편이 십분위 배분율에 미치는 파급효과	139
〈표 VI-18〉 소득계층별 동등후생 변화	141
〈표 VI-19〉 법인세 개편이 조세수입에 미치는 파급효과	143
〈표 VI-20〉 법인세 개편이 조세수입에 미치는 파급효과	143

그림목차

[그림 II-1]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변화추이(지방세 포함)	24
[그림 II-2] OECD 주요국의 한계유효세율 변화	35
[그림 II-3] 한계유효세율의 평균치 변화	36
[그림 IV-1] 당기순이익 과세와 ACE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66
[그림 IV-2] 벨기에의 법정 법인세율과 평균유효세율	72
[그림 VI-1] 모형에서의 재화 및 생산요소 흐름과 조세체계도	108
[그림 VI-2] 사회회계행렬(SAM) 구성도	112
[그림 VI-3] 법인세 개편이 투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123
[그림 VI-4] 법인세 개편이 자본스톡에 미치는 파급효과	125
[그림 VI-5] 법인세 개편이 GDP에 미치는 파급효과	127
[그림 VI-6] 법인세 개편이 소비에 미치는 파급효과	128
[그림 VI-7] 법인세 개편이 정부지출에 미치는 파급효과	130
[그림 VI-8] 법인세 개편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파급효과	131
[그림 VI-9] 법인세 개편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	133
[그림 VI-10] 법인세 개편이 실질임금에 미치는 파급효과	134
[그림 VI-11] 법인세 개편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135
[그림 VI-12] 법인세 개편이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136
[그림 VI-13] 법인세 개편이 지니계수 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	138
[그림 VI-14] 법인세 개편이 십분위 배분을 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	139
[그림 VI-15] 법인세 개편이 동등후생 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	140
[그림 VI-16] 법인세 개편이 조세수입에 미치는 파급효과	142
[그림 VI-17] 법인세 개편이 동등후생 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	146

[부도 1] 가계의 소비재 복합구조	167
[부도 2] 산업의 최종소비재화 생산구조	170

I. 서론

법인세는 생산요소인 자본에 대한 과세로서 기업활동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법인세의 부과로 인하여 기업의 자본비용이 상승하면 국내 법인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도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의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세후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면 그 배당소득에 대해 주주 단계에서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는 법인의 재무구조를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다. 법인이 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대가인 이자에 대해서는 개인 단계에서만 한번 과세되므로 기업은 주식보다는 채권을 발행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법인세제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온 것으로서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법인세의 투자 위축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이중과세를 배제·완화하는 방법으로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원적 소득세제(Dual Income Tax)를 도입하여 이자·배당·법인소득을 모두 포괄하는 자본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동등하게 과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법인세제의 두 가지 문제점은 아직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1993년에 34%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2년에는 22%가 되었으나 법인세의 투자 왜곡 효과가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주변 경쟁국들의 세율이 20% 수준 또는 그 이하인 경우가 많아 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경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과세와 관련해서도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긴 하였으나 낮은 세율을 기준으로 공제하

여 이중과세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중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인세를 폐지하고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을 소득세로 징수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 중 상당수가 법인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관(conduit)에 불과하므로 법인에 별도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한다. 한편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은 법인이 주주와 분리된 독립된 실체로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의 혜택을 받는다는 점, 세무행정과 세수입 확보 목적상 법인단계에서의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법인 단계에서의 소득세 과세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한 논쟁의 결론이 무엇이나에 대해 보는 사람마다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던 법인세를 폐지한 국가는 아직 없다¹⁾.

최근에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법인 단계에서의 과세를 유지하면서 법인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방안으로 현금흐름(cash flow)을 기반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이자와 배당에 대해 동등하게 과세하는 포괄적 법인세(CBIT: Comprehensive Business Income)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EU에서는 ACE(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금흐름 과세와 ACE제도는 법인의 소득 중 자본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부분 즉, 독점적 이익(rent)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인세의 투자왜곡 문제와 재무구조 왜곡 문제를 모두 개선하는 제도이다. CBIT제도는 이자에 대해서도 배당과 동등하게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투자 왜곡 문제보다는 재무구조 왜곡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배당소득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고전적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재무구조 왜곡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ACE의 경우에는 벨기에 등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사례가 있다.

1) 법인세의 과세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콕테원(2005) 참조.

이러한 세계적인 논의나 움직임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콕태원(2005), 안종석·전영준(2011) 등에서 외국의 논의 동향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그 외에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법인세의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그러한 개편방안이 외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세부담은 어떻게 변화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분석함으로써 장기적인 법인세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서론에 이어지는 제Ⅱ장에서는 1980년대 이후 주요국의 법인세제 개편 동향을 살펴보고 정책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1980년대 이후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법인세율의 자원배분 왜곡 효과가 한층 강조되고 이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은 경쟁적 세율 인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내용을 정리·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부채와 자기자본에 대한 차별적 과세, 이중과세 등 현행 과세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근본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제Ⅳ장부터는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해 논의한다. 세율인하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계에서는 법인세제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법인소득으로부터 적절한 세수입을 확보하면서 법인세제의 문제를 개선하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대안 중 일부는 미국, 영국, EU 등의 주요 정책 연구기관과 정책당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 정책 개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제Ⅳ장에서는 그러한 대안들의 내용과 특징,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제Ⅴ장에서는 다른 국가에서의 경험과 평가에 대해 논의한다. 일부 국가에서 ACE제도 등 근본적 개혁안을 시행한 경우도 있으며, EU를 중심으로 ACE와 CBIT를 도입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모의실험을 한 연구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국가의 경험과 개혁안에 대한 평가 내용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과 제Ⅶ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제Ⅵ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과세체계를 평가하고 가능한 개편 대안들을 검토한 후 개편 후 개별 기업의 자료를 활용하여 CBIT나 ACE를 도입하는 경우 기업의 세부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검토한다. 그 다음에 제Ⅶ장에서는 몇 개의 개편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CGE 모형을 활용하여 그러한 개편이 투자, 고용, 경제성장,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비교한다.

II. OECD 회원국의 법인세 과세체계 변화 추이

본장에서는 OECD 회원국의 법인세 과세체계 변화추이를 검토하고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한다.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이 법정 법인세율의 변화이므로 먼저 법정 법인세율의 변화에 대해 검토한다(제1절). 그 다음에는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에 대해 살펴본다(제3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란 개인단계에서 배당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과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배당되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후의 최종적인 세부담이 주요 관심사가 된다. 그리고 법정 법인세율과 감가상각제도 등을 고려한 유효세부담(제3절)과 법인세 수입의 변화(제4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마지막 절에서는 향후 정책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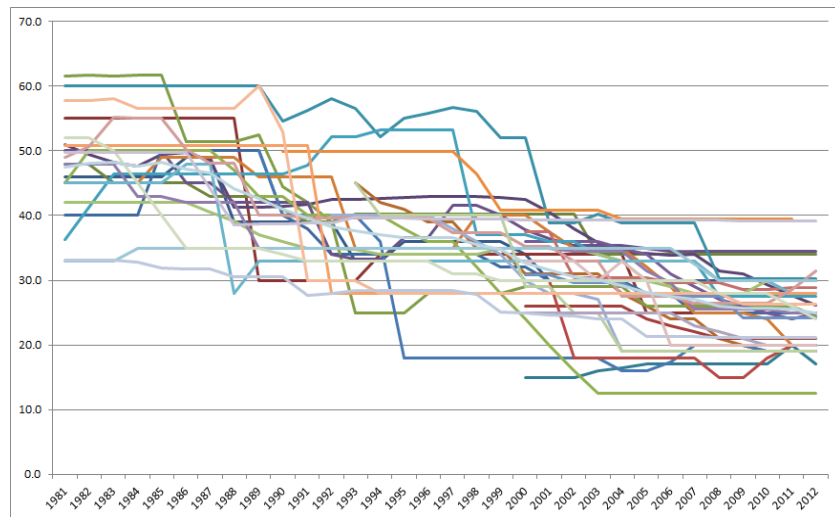
1. 법정세율 변화추이

[그림 II-1]과 <표 II-1>은 OECD 회원국의 법정 법인세율 변화추이를 그림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법정 법인세율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차등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세율만을 정리하였다. 1980년 이후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에서 보면 1980년대 중엽 이후에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추이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4년의 영국 세제개혁, 1986년의 미국 세제개혁이 법인세율 인하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세제개혁은 공급주의 경제학에 기반을 둔 것이며, 세계화 진전에 따른 기업 투자 유치 경쟁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던 미국과 영국의 법인세율

인하는 다른 국가들에 경종이 되었으며, 한 국가의 세율 인하는 다른 국가의 세율 인하를 유도하여 20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세율 인하가 진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OECD 회원국 중 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 미국과 가장 낮은 국가인 아일랜드는 세율을 변화시키지 않았지만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는 세율인하 추세가 지속되었다.

[그림 II-1]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변화추이(지방세 포함)

(단위: %)



자료: OECD Tax Database

이 표와 그림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세율 동조화 또는 수렴화 경향이다. 1981년의 OECD 국가 법인세율을 비교해 보면 핀란드가 61.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독일 60%, 스웨덴 57.8%, 오스트리아 55%의 순이며, 그 외에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의 법인세율이 50% 이상이었다. 한편 가장 낮은 국가는 스페인과 스위스로 33%였고, 이탈리아도 36.3%로 30%대였다. 그 외의 국가들은 40%대였다. 최고와 최저의 격차는 28.5%p였으며, 다른 국가들은 최고와 최저의 범위 사이에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한편 가장 최근의 2012년의 세율을 보면 일본 39.5% (2011년)와 미국(39.1%)이 가장 높고 아일랜드가 12.5%로 가장 낮다. 그 외에 프랑스가 34.4%, 벨기에가 34%로 높은 편이다. 이 중 벨기에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ACE제도를 도입하여 과세표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좁다. OECD 국가 34개국 중 앞에서 언급한 5개 국가를 제외한 29개 국가는 17(칠레)~31.5(포르투갈)%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OECD 국가의 2012년 세율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일부 예외적인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20%, 25%, 30%의 세 가지 세율을 중심으로 동조화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세율을 중심으로 각각 2~4%p 구간 사이에 9~10개의 국가가 포진하고 있다. 먼저 30%의 경우를 보면 27.5~31.5%의 구간에 포르투갈(31.5%), 독일(30.2%), 스페인·호주·멕시코(30%), 룩셈부르크(28.8%), 뉴질랜드·노르웨이(28%), 이탈리아(27.5%)의 9개 국가가 있다. 25%의 경우에는 24~26.3% 구간에 스웨덴(26.3%), 캐나다(26.1%), 오스트리아·이스라엘·덴마크·네덜란드(25%), 핀란드(24.5%), 한국(24.2%), 영국(24%)의 9개 국가가 있다. 그리고 20%의 경우에는 19~21.2% 사이에 스위스(21.2%), 에스토니아(21%), 그리스·아이슬란드·터키·슬로베니아(20%), 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19%)의 10개 국가가 포진해 있다. 이들 세 개의 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세율이 34% 이상인 국가 3개와 17% 이하인 국가 2개뿐이다.

이와 같이 세율이 동조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 데는 국제경쟁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투자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투자에 있어 경쟁대상이 되는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²⁾.

2) 세계화와 그에 따른 국제경쟁이 법인세 과세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안중석·전영준(2011) pp. 55~63 참조.

〈표 II-1〉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지방세 포함)

(단위: %)

	1981	1991	2001	2005	2009	2010	2011	2012
Australia	46.0	39.0	30.0	30.0	30.0	30.0	30.0	30.0
Austria	55.0	30.0	34.0	25.0	25.0	25.0	25.0	25.0
Belgium	48.0	39.0	40.2	34.0	34.0	34.0	34.0	34.0
Canada	50.9	41.8	40.5	34.2	31.0	29.4	27.6	26.1
Chile	-	-	15.0	17.0	17.0	17.0	20.0	17.0
Czech Republic	-	-	31.0	26.0	20.0	19.0	19.0	19.0
Denmark	40.0	38.0	30.0	28.0	25.0	25.0	25.0	25.0
Estonia	-	-	26.0	24.0	21.0	21.0	21.0	21.0
Finland	61.5	42.0	29.0	26.0	26.0	26.0	26.0	24.5
France	50.0	42.0	36.4	35.0	34.4	34.4	34.4	34.4
Germany	60.0	56.3	38.9	38.9	30.2	30.2	30.2	30.2
Greece	45.0	46.0	37.5	32.0	25.0	24.0	20.0	20.0
Hungary	n.a.	40.0	18.0	16.0	20.0	19.0	19.0	19.0
Iceland	n.a.	n.a.	30.0	18.0	15.0	18.0	20.0	20.0
Ireland	45.0	40.0	20.0	12.5	12.5	12.5	12.5	12.5
Israel	-	-	36.0	34.0	26.0	25.0	24.0	25.0
Italy	36.3	47.8	36.0	33.0	27.5	27.5	27.5	27.5
Japan	n.a.	50.0	40.9	39.5	39.5	39.5	39.5	-
Korea	n.a.	n.a.	30.8	27.5	24.2	24.2	24.2	24.2
Luxembourg	n.a.	n.a.	37.5	30.4	28.6	28.6	28.8	28.8
Mexico	42.0	35.0	35.0	30.0	28.0	30.0	30.0	30.0
Netherlands	48.0	35.0	35.0	31.5	25.5	25.5	25.0	25.0
New Zealand	45.0	33.0	33.0	33.0	30.0	30.0	28.0	28.0
Norway	50.8	50.8	28.0	28.0	28.0	28.0	28.0	28.0
Poland	n.a.	n.a.	28.0	19.0	19.0	19.0	19.0	19.0
Portugal	49.0	39.6	35.2	27.5	26.5	26.5	28.5	31.5
Slovak Republic	-	-	29.0	19.0	19.0	19.0	19.0	19.0
Slovenia	-	-	25.0	25.0	21.0	20.0	20.0	20.0
Spain	33.0	35.0	35.0	35.0	30.0	30.0	30.0	30.0
Sweden	57.8	30.0	28.0	28.0	26.3	26.3	26.3	26.3
Switzerland	33.0	27.7	24.7	21.3	21.2	21.2	21.2	21.2
Turkey	n.a.	n.a.	33.0	30.0	20.0	20.0	20.0	20.0
United Kingdom	52.0	33.0	30.0	30.0	28.0	28.0	26.0	24.0
United States	49.7	38.9	39.3	39.3	39.1	39.2	39.2	39.1
OECD 평균	47.5	39.6	31.6	28.2	25.7	25.6	25.5	25.0
표준편차	8.001	7.1196	6.3254	6.8311	6.1998	6.1605	6.0147	5.7336

자료: OECD Tax Database

〈표 II-2〉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분포

(단위: %, 개)

세율	국가	국가 수
34% 이상	일본(39.5) ¹⁾ , 미국(39.1), 프랑스(34.4), 벨기에(34.0) ²⁾	4
27.5~31.5%	포르투갈(31.5), 독일(30.2), 멕시코·스페인·호주(30.0), 룩셈부르크(28.8), 뉴질랜드·노르웨이(28.0), 이탈리아(27.5)	9
24~26.3%	스웨덴(26.3), 캐나다(26.1), 네덜란드·덴마크·오스트리아·이스라엘(25.0), 핀란드(24.5), 한국(24.2), 영국(24.0)	9
19~21.2%	스위스(21.2), 에스토니아(21.0), 그리스·아이슬란드·슬로베니아·터키(20.0) 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체코(19.0)	10
17% 이하	칠레(17.0), 아일랜드(12.5)	2

주: 1) 2011년

2) ACE제도

자료: 앞의 〈표 II-1〉을 재구성

1980년대 이후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바는 1980년대 후반에서부터 2000년대 초까지 세계적으로 급격한 법인세율 인하가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그룹별로 세율의 동조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율 인하추이는 아직도 계속되는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세율이 비슷한 집단 내에서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유치 관점에서 유리하므로 개별 국가들은 소폭이라도 세율을 계속 조정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2012년만 하더라도 캐나다, 칠레, 핀란드, 영국, 미국에서 세율을 소폭 인하한데 비해 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두 개 국가(이스라엘, 포르투갈)뿐이다. OECD 국가의 세율 평균치를 보면 1981년에 47.5%였던 것이 2001년에는 31.6%, 2009년에는 25.7%가 되었으며, 그 후에도 25.6 → 25.5 → 25%로 매년 세율이 인하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2.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현황과 변화 추이

배당에 대한 과세는 개인단계에서 부과하는 개인소득세이지만 법인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법인소득이 배당되면 그것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개인단계에서의 세금이라도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법인소득 중 배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단계와 개인단계에서 두 번 과세가 된다는 이중과세 문제이다. 기업이 자본을 조달할 때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자금을 차입하면 그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는데,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자금을 차입한 기업의 단계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데 비해 배당에 대해서는 기업 단계에서도 세금을 납부한다. 이와 같은 이자와 배당에 대한 과세상의 차이는 기업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즉, 이중과세는 기업으로 하여금 자기자본 투자보다는 차입에 의한 투자를 선호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많은 국가들이 이중과세를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중과세를 전혀 조정하지 않는 과세체계를 고전적 과세체계(Classical system: CL)라고 하는데, <표 II-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 독일 등 상당수의 국가가 이러한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않는 고전적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단계에서 배당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된 고전적 과세체계(Modified classical system: MCL)로 분류하였다. 미국 외에도 폴란드, 포르투갈, 덴마크 등이 MCL을 적용한다.

이중과세를 전혀 조정하지 않는 CL과는 달리 이중과세를 완전히 제거하는 제도로 완전 임putation(Full imputation: FI), 개인단계에서 비과세하는(No shareholder tax: NST) 제도가 있다. FI는 개인단계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 법인단계에서 납부한 세액도 소득으로 포함(imputation)시켜 개인단계에서의 세액을 계산하고 법인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은 개인단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단계에

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므로 최종적인 세부담은 개인단계에서의 세부담과 일치하게 된다. 한편 NST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은 주주에게 배당되어도 주주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하에서는 최종 세부담이 법인단계에서의 세부담과 일치한다. <표 II-3>을 보면 호주와 캐나다,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가 FI를 적용하며, 에스토니아와 슬로바키아에서는 NST를 적용하고 있다. MC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I, NST의 경우에도 이중과세를 완전히 조정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만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퓨테이션을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를 PI(Partial imputation), 배당액의 일부만을 주주단계의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경우를 PIN(Partial inclusion)으로 분류하였다.

〈표 II-3〉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체계(2012년)

(단위: %)

국가	이중과세 조정방법	법인 세율	개인단계 세금				총세부담	법인세 /총세 부담
			최종원 천정수 세율	개인 소득 세율	배당 세액 공제	순개인 소득세		
Australia	FI	30.0		46.5	42.9	23.6	46.5	64.5
Austria	CL	25.0	25.0	25.0		25.0	43.8	57.1
Belgium	CL	34.0		25.0		25.0	50.5	67.3
Canada(2006)	FI	26.1		46.4	34.5	29.5	47.9	54.5
Chile	FI	20.0	-	40.0	25.0	25.0	40.0	50.0
Check Rep.	CL	19.0	15.0	15.0		15.0	31.2	61.0
Denmark	MCL	25.0		42.0		42.0	56.5	44.2
Estonia	NST	21.0	-	0.0		0.0	21.0	100.0
Finland	PIN	24.5		32.0		22.4	41.4	59.2
France	PIN	34.4		54.5		38.1	59.4	58.0
Germany	CL	30.2	26.4	26.4		26.4	48.6	62.1
Greece	CL	20.0	25.0	25.0		25.0	32.5	50.0
Hungary	OTH	19.0		16.0		16.0	32.0	59.4
Iceland	CL	20.0		20.0		20.0	36.0	55.6

〈표 II-3〉의 계속

(단위: %)

국가	이중과세 조정방법	법인 세율	개인단계 세금				총세부담	법인세 /총세 부담
			최종원 천징수 세율	개인 소득 세율	배당 세액 공제	순개인 소득세		
Ireland	CL	12.5		41.0		41.0	48.4	25.8
Israel	MCL	25.0		30.0		30.0	47.5	52.6
Italy	CL/PIN	27.5	20.0	20.0		20.0	42.0	65.5
Korea	PI	24.2		41.8	11.0	35.4	51.0	47.4
Luxembourg	PIN	28.8		39.0		19.5	42.7	67.5
Mexico	FI	30.0		30.0	42.9	0.0	30.0	100.0
Netherlands	CL	25.0		25.0		25.0	43.8	57.1
New Zealand	FI	28.0		33.0	38.9	6.9	33.0	84.8
Norway	OTH	28.0		28.0		28.0	48.2	58.1
Poland	MCL	19.0	19.0	19.0		19.0	34.4	55.2
Portugal	MCL	31.5	25.0	25.0		25.0	48.6	64.8
Slovak Rep.	NST	19.0		0.0		0.0	19.0	100.0
Slovenia	CL	20.0		20.0		20.0	36.0	55.6
Spain	MCL	30.0		27.0		27.0	48.9	61.3
Sweden	CL	26.3		30.0		30.0	48.4	54.3
Switzerland	MCL	21.2		20.0		20.0	36.9	57.3
Turkey	PIN	20.0		35.0		17.5	34.0	58.8
U.K.	PI	24.0		42.5	11.1	36.1	51.4	46.7
U.S.	MCL	39.1		21.3		21.3	52.1	75.1

주: CL: Classical system;

MCL: Modified classical system (dividend income taxed at preferential rates
(e.g. compared to interest income) at the shareholder level;

FI: Full imputation; PI: Partial imputation; PIN: Partial inclusion

NST: No shareholder taxation of dividends

CD: Corporate deduction (corporate level deduction, fully or partly)

OTH: Other types of systems

자료: OECD Tax Database

II. OECD 회원국의 법인세 과세체계 변화 추이 31

이중과세 조정을 마친 후의 개인소득세 부담과 법인세 부담을 합한 총세부담을 보면 2012년 OECD 회원국 평균치가 41.9%로 법인세 부담보다는 상당히 높으며, 최저치는 슬로바키아의 19%이고, 최고치는 프랑스의 59.4%이다. 우리나라는 51.2%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의 경우 이중과세 조정을 하지 않으므로 개인소득세를 합하여 총세부담이 48.4%가 된다. 한편 법인세율이 39.1%로 상당히 높은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단계에서 21.3%의 낮은 배당소득세율을 적용하므로 총세부담은 52.1%가 되어 아일랜드와의 세부담 격차가 3.7%p로 축소된다.

1981년 이후의 세부담 변화를 보면 OECD 국가 평균치가 1981년 75.2%에서 1991년 55.7%, 2001년 48.3%, 2005년 43.2%, 2009년 40.9%로 계속 낮아졌다. 이 기간 동안의 세부담 인하속도를 보면 배당에 대한 세율 인하속도가 법인세율 인하 속도보다 빠르는데, 이는 법인세 인하와 개인 차원에서 배당에 대한 세부담 인하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0년부터의 추세를 보면 하락세가 멈추고 오히려 약간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나 2012년에는 41.9%가 되었다. 2009년 이후의 이러한 변화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일부 유럽 국가들이 개인에 대한 자본소득세를 강화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 국가 중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에서 2009년에 비해 2012년의 배당에 대한 세부담이 높아졌다.

〈표 II-4〉 배당에 대한 총세부담(법인세+개인소득세)

(단위: %)

	1981	1991	2001	2005	2009	2010	2011	2012
Australia	78.4	48.3	48.5	48.5	46.5	46.5	46.5	46.5
Austria	76.4	50.5	50.5	43.8	43.8	43.8	43.8	43.8
Belgium	61.4	54.3	49.1	43.9	43.9	43.9	43.9	50.5
Canada	78.7	66.3	59.1	54.8	46.8	48.2	48.0	47.9
Chile			45.0	40.0	40.0	40.0	40.0	40.0

〈표 II-4〉의 계속

(단위: %)

	1981	1991	2001	2005	2009	2010	2011	2012
Czech Republic	-	-	41.4	37.1	32.0	31.2	31.2	31.2
Denmark	77.1	65.9	60.1	59.0	58.8	56.5	56.5	56.5
Estonia			26.0	24.0	21.0	21.0	21.0	21.0
Finland	-	-	29.0	37.8	40.5	40.5	40.5	41.4
France	70.8	65.1	61.9	55.9	58.1	58.1	58.6	59.4
Germany	61.3	59.8	54.5	52.4	48.6	48.6	48.6	48.6
Greece	-	-	35.0	32.0	32.5	32.5	32.5	32.5
Hungary	-	52.0	46.7	45.4	40.0	39.3	32.0	32.0
Iceland	-	-	37.0	26.2	23.5	32.8	36.0	36.0
Ireland	68.6	61.9	53.6	49.3	48.4	48.4	48.4	48.4
Israel			52.0	50.5	44.5	43.8	43.0	47.5
Italy	92.0	68.4	44.0	41.4	36.6	36.6	36.6	42.0
Japan	-	-	66.7	45.6	45.6	45.6	45.6	
Korea	-	-	53.9	48.7	46.4	47.8	47.8	51.0
Luxembourg	-	-	51.0	44.0	42.5	42.5	42.7	42.7
Mexico	54.2	35.0	35.0	30.0	28.0	30.0	30.0	30.0
Netherlands	85.4	74.0	51.3	48.6	44.1	44.1	43.8	43.8
New Zealand	79.2	33.0	39.0	39.0	38.0	38.0	33.0	33.0
Norway	61.0	42.5	35.9	28.0	48.2	48.2	48.2	48.2
Poland	-	-	38.8	34.4	34.4	34.4	34.4	34.4
Portugal	90.5	54.7	51.4	42.0	41.2	41.2	43.9	48.6
Slovak Republic	-	-	39.7	19.0	19.0	19.0	19.0	19.0
Slovenia			47.5	49.4	36.8	36.0	36.0	36.0
Spain	66.6	64.9	52.7	50.0	42.6	43.3	43.3	48.9
Sweden	93.7	51.0	49.6	49.6	48.4	48.4	48.4	48.4
Switzerland	62.8	57.3	56.0	54.7	36.9	36.9	36.9	36.9
Turkey	-	-	65.0	44.0	34.0	34.0	34.0	34.0
United Kingdom	82.9	46.4	47.5	47.5	46.0	54.0	52.7	51.4
United States	88.7	61.9	66.9	52.0	52.0	52.2	52.1	52.1
평균	75.2	55.7	48.3	43.2	40.9	41.4	41.1	41.9

자료: OECD Tax Database

배당에 대한 총세부담에서 법인단계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에 평균 58.5%였던 것이 1991년에 67.9%로 상승하였다(〈표 II-5〉 참조). 이는 이 시기에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이 같이 인하되었고, 동시에 임퓨테이션과 같은 개인단계에서의 이중과세 조정이 확대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후 2005년까지는 68%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 이후 배당에 대한 세부담에서 법인단계의 세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 시기에 배당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그것이 법인단계보다는 주로 개인단계의 세부담 증가에 기인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표 II-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시기에도 법인세율은 계속 인하되었다.

〈표 II-5〉 배당에 대한 총세부담에서 법인단계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1981	1991	2001	2005	2009	2010	2011	2012
Australia	58.7	80.8	61.9	61.9	64.5	64.5	64.5	64.5
Austria	49.6	67.3	67.3	57.1	57.1	57.1	57.1	57.1
Belgium	78.1	71.9	81.7	77.4	77.4	77.4	77.4	67.3
Canada	64.7	63.1	68.5	62.4	66.0	61.1	57.5	54.5
Chile			33.3	42.5	42.5	42.5	42.5	50.0
Czech Republic	-	-	75.0	70.1	62.5	61.0	61.0	61.0
Denmark	51.9	57.7	49.9	47.5	42.6	44.2	44.2	44.2
Estonia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Finland	-	-	100.0	68.8	64.2	64.2	64.2	59.2
France	70.7	64.5	58.8	62.5	59.3	59.3	58.7	58.0
Germany	68.3	72.0	71.3	74.2	62.1	62.1	62.1	62.1
Greece	-	-	100.0	100.0	76.9	75.9	54.3	50.0
Hungary	-	76.9	38.5	35.2	50.0	48.4	59.4	59.4
Iceland	-	-	81.1	68.7	63.8	54.9	55.6	55.6
Ireland	65.6	65.8	37.3	25.4	25.8	25.8	25.8	25.8
Israel			69.2	67.3	58.4	57.1	55.8	52.6
Italy	43.5	69.8	81.8	79.8	75.2	75.2	75.2	65.5
Japan	-	-	61.3	86.7	86.7	86.7	86.7	

〈표 II-5〉의 계속

(단위: %)

	1981	1991	2001	2005	2009	2010	2011	2012
Korea	-	-	57.2	56.4	52.2	50.6	50.6	47.4
Luxembourg	-	-	73.6	69.2	67.3	67.3	67.5	67.5
Mexico	77.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etherlands	56.2	47.3	68.3	64.8	57.8	57.8	57.1	57.1
New Zealand	60.6	100.0	84.7	84.7	78.9	78.9	84.8	84.8
Norway	37.7	54.1	78.0	100.0	58.1	58.1	58.1	58.1
Poland	-	-	72.2	55.2	55.2	55.2	55.2	55.2
Portugal	46.4	72.4	68.5	65.5	64.3	64.3	65.0	64.8
Slovak Republic	-	-	73.1	100.0	100.0	100.0	100.0	100.0
Slovenia			52.6	50.6	57.1	55.6	55.6	55.6
Spain	49.6	53.9	66.4	70.1	70.4	69.3	69.3	61.3
Sweden	61.7	58.8	56.5	56.5	54.3	54.3	54.3	54.3
Switzerland	52.7	48.4	44.1	44.0	57.3	57.3	57.3	57.3
Turkey	-	-	50.8	68.2	58.8	58.8	58.8	58.8
United Kingdom	62.8	71.1	63.2	63.2	60.9	51.9	49.3	46.7
United States	56.0	62.8	58.7	75.6	75.2	75.2	75.2	75.1
평균	58.5	67.9	67.8	68.0	64.8	63.9	63.6	61.5

자료: OECD Tax Database

3. 한계유효세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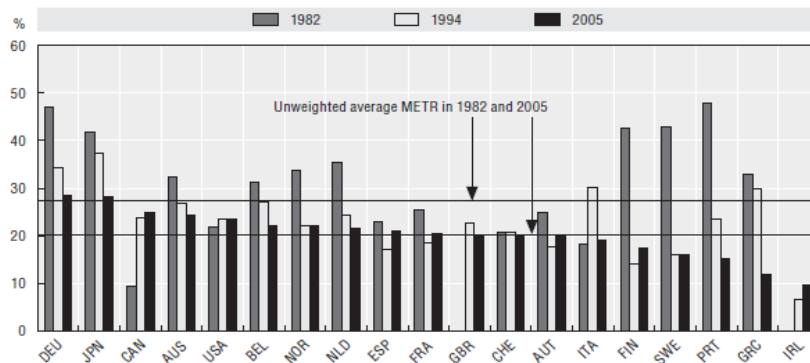
고전 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인의 투자는 투자를 한 단위 증가시킴에 따라 세부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세부담을 나타내는 세율을 한계유효세율이라고 하는데, 법정 법인세율과 감가상각률, 기타 투자세액공제 등 실질적으로 세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과 사회적 할인율, 물가상승률 등 투자의 기회비용을 대변하는 지표들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제도를 포괄하는 일관성 있는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 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한계유효세율의 국제 비교를 하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더욱이 그것을 시계열로 만들어

변화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곤란한 일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영국의 IFS(Institute for Fiscal Studies)에서 일부 OECD 국가들에 대해 1982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계유효세율을 계산하여 비교한 자료가 있어 다음에서는 그 자료를 중심으로 OECD 회원국의 한계유효세율 변화를 살펴본다. [그림 II-2]에서는 국가별로 1982년과 1994년 2005년의 한계세율을 정리하였고, [그림 II-3]에서는 평균치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그림 II-2]를 보면 캐나다와 미국, 이탈리아,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한계유효세율이 인하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60% 수준이던 한계유효세율이 10% 수준으로 낮아졌고, 핀란드, 스웨덴, 그리스,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네덜란드에서도 한계유효세율이 상당히 낮아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계유효세율 평균치가 1982년 28% 수준에서 2005년에는 20%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림 II-2] OECD 주요국의 한계유효세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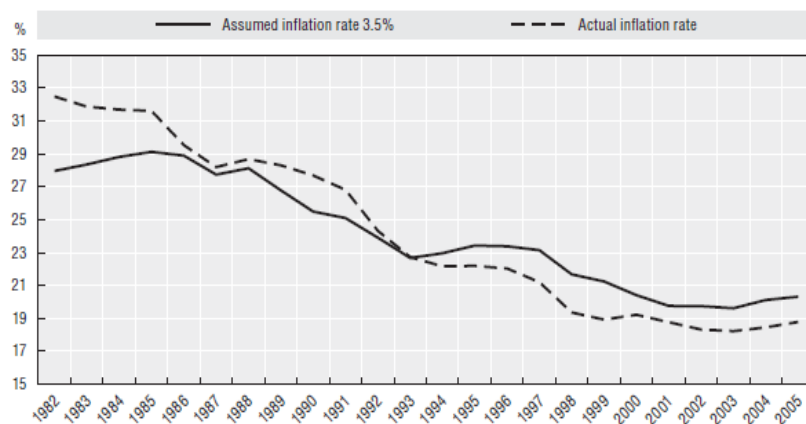
주: 자료 입수가 가능한 OECD 회원국 19개국의 제조업 투자에 대한 분석으로 자기자본으로 기계설비에 투자한 경우를 가정

자료: 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의 분석자료는 OECD(2007) p. 28에서 재인용

[그림 II-3]에서는 한계유효세율 평균치가 연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물가상승률을 일괄적으로 3.5%로 가정한 경우와 실제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경우로 구분하여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하였는데,

두 경우 모두 1982년부터 2005년의 기간에 일관되게 한계 세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감소의 폭을 보면 후자가 1982년 33% 수준에서 2005년 19%로 감소하여 28%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감소한 전자에 비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I-3] 한계유효세율의 평균치 변화



자료: 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의 분석자료는 OECD(2007) p. 29에서 재인용

그림에서 물가상승률을 3.5%로 고정시킨 경우에 비해 실제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경우에 한계유효세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 기간 동안에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상승률의 하락은 감가상각의 현재가치를 증가시켜주므로 한계유효세율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두 가지의 물가상승률이 일치할 때에는 한계유효세율도 일치하는 데 비해 실제 물가상승률이 3.5%보다 높은 시기에는 실제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경우의 한계유효세율이 높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하락함에 따라 고정된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명목세율 인하에 따른 한계유효세율의 하락 폭은 더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유사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한계유효세율을 계산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계유효세율이 하락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김학수(2009)는 앞서 검토한 유럽의 한계유효세율 추정방법과 유

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상장등록법인의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하였는데, 기업별 한계유효세율은 전 기업 평균치가 1991년 13.8%에서 1995년 16.3%로 상승하였다가 2000년 12.2%, 2005년 7.2%로 낮아졌다. 2007년에는 8.2%로 2005년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다.

4. 법인세 수입 변화 추이

[표 II-6]에서는 OECD 회원국의 세수입에서 법인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이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분리·보고되지 않은 칠레와 멕시코를 제외한 32개국에 대한 자료이다. 법인세율이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시작한 1985년에는 법인세 수입이 총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치가 7.9%였던 것이 2000년 9.7%, 2007년 10.6%로 증가하였다. 법정 법인세율과 한계유효세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표 II-7]에 정리된 법인세 수입의 GDP 대비 비율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1982년에는 이 비율의 평균치가 2.6%였는데, 2000년에는 3.5%, 2007년에는 3.8%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경제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법인 수입이 증가하여 법인세가 증가하였을 수 있다. 둘째, 세율 인하로 인해 조세회피 동기가 축소되고 신고된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세수입이 증가하였을 수 있다. 셋째, 다른 세목, 특히 개인소득세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하였을 경우 다른 세목의 세원이 법인세쪽으로 이동하여 신고된 법인세 수입이 증가하였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가능성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였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주는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추측컨대 세 가지가 모두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을 것이며, 어느 하나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효율성 제고 효과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세수입의 GDP 대비 비율 증가를 설명하기 어렵고, 이 시기에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세율도 인하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대적 세부담 완화 효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6〉 총세수입에서 법인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1965	1975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Australia	16.3	12.4	9.4	14.1	14.8	20.2	19.4	23.1	21.7	18.7
Austria	5.4	4.4	3.5	3.6	3.3	4.6	5.2	5.8	5.8	4.0
Belgium	6.2	6.9	4.9	4.8	5.4	7.2	7.4	8.0	7.7	5.9
Canada	14.9	13.6	8.2	7.0	8.2	12.2	10.5	10.6	10.5	10.7
Czech Republic					12.2	9.9	12.0	13.5	11.6	10.6
Denmark	4.5	3.2	4.8	3.7	4.8	6.6	7.7	7.7	6.8	5.1
Estonia					6.7	2.9	4.7	5.2	5.1	5.2
Finland	8.1	4.7	3.4	4.5	5.0	12.5	7.6	9.0	8.1	4.7
France	5.3	5.2	4.5	5.3	4.9	6.9	5.5	6.8	6.7	3.5
Germany	7.8	4.4	6.1	4.8	2.8	4.8	5.1	6.1	5.2	3.6
Greece	1.8	3.4	2.7	5.5	6.3	12.2	10.3	7.9	7.9	8.1
Hungary					4.5	5.7	5.7	7.0	6.6	5.7
Iceland	1.8	2.6	3.1	2.8	3.0	3.3	4.9	6.1	5.2	5.2
Ireland	9.1	4.8	3.2	5.0	8.5	11.8	11.2	10.9	9.7	8.8
Israel					8.5	10.6	11.2	12.5	10.3	8.8
Italy	6.9	6.3	9.3	10.0	8.7	6.9	6.8	8.8	8.6	7.4
Japan	22.2	20.6	21.0	22.4	15.9	13.8	15.5	16.8	13.7	9.6
Korea		8.9	11.4	12.8	11.6	14.1	15.9	15.1	15.9	14.4
Luxembourg	11.0	15.6	17.7	15.8	17.7	17.8	15.4	14.8	14.3	14.7
Netherlands	8.1	7.7	7.0	7.5	7.5	10.1	9.8	8.4	8.1	5.3
New Zealand	20.7	11.8	8.3	6.5	11.9	12.4	16.8	14.2	13.1	11.0
Norway	3.8	2.9	17.2	9.0	9.2	20.9	27.0	25.7	28.9	21.7
Poland					7.7	7.4	7.5	7.9	7.9	7.2
Portugal				8.0	7.8	12.1	8.6	11.0	11.3	9.4
Slovak Republic					15.0	7.7	8.7	10.1	10.6	8.6
Slovenia					1.3	3.1	7.2	8.6	6.8	4.9
Spain	9.2	6.9	5.1	8.8	5.4	8.9	10.8	12.5	8.5	7.2
Sweden	6.1	4.3	3.5	3.1	5.8	7.6	7.5	7.8	6.4	6.4
Switzerland	7.7	8.5	6.8	7.6	6.6	9.0	8.9	10.7	11.2	10.7
Turkey	4.8	5.1	9.5	6.7	6.7	7.3	7.1	6.8	7.3	7.7
United Kingdom	4.4	6.2	12.6	9.9	8.1	9.7	9.3	9.4	10.0	8.1
United States	16.4	11.4	7.5	8.9	10.3	8.7	11.6	10.8	7.5	6.9
OECD 평균	8.8	7.6	7.9	7.9	8.0	9.7	10.1	10.6	10.0	8.4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1, 2011.

〈표 II-7〉 법인세 수입의 GDP 대비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1965	1975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Australia	3.3	3.1	2.6	3.9	4.1	6.1	5.8	6.8	5.9	4.8
Austria	1.8	1.6	1.4	1.4	1.4	2.0	2.2	2.4	2.5	1.7
Belgium	1.9	2.7	2.2	2.0	2.4	3.2	3.3	3.5	3.4	2.5
Canada	3.8	4.3	2.7	2.5	2.9	4.4	3.5	3.5	3.4	3.4
Czech Republic					4.6	3.5	4.5	5.0	4.2	3.7
Denmark	1.4	1.2	2.2	1.7	2.3	3.3	3.9	3.8	3.3	2.4
Estonia					2.4	0.9	1.4	1.6	1.6	1.9
Finland	2.5	1.7	1.4	2.0	2.3	5.9	3.3	3.9	3.5	2.0
France	1.8	1.8	1.9	2.2	2.1	3.1	2.4	3.0	2.9	1.5
Germany	2.5	1.5	2.2	1.7	1.0	1.8	1.8	2.2	1.9	1.3
Greece	0.3	0.7	0.7	1.4	1.8	4.1	3.3	2.5	2.5	2.4
Hungary					1.9	2.2	2.1	2.8	2.6	2.3
Iceland	0.5	0.8	0.9	0.9	0.9	1.2	2.0	2.5	1.9	1.8
Ireland	2.3	1.4	1.1	1.6	2.7	3.7	3.4	3.4	2.8	2.4
Israel					3.2	3.9	4.0	4.5	3.5	2.8
Italy	1.8	1.6	3.1	3.8	3.5	2.9	2.8	3.8	3.7	3.2
Japan	4.0	4.3	5.7	6.5	4.3	3.7	4.3	4.8	3.9	2.6
Korea		1.3	1.8	2.5	2.3	3.2	3.8	4.0	4.2	3.7
Luxembourg	3.1	5.1	7.0	5.6	6.6	7.0	5.8	5.3	5.1	5.6
Netherlands	2.6	3.1	3.0	3.2	3.1	4.0	3.8	3.2	3.2	2.0
New Zealand	4.9	3.3	2.6	2.4	4.3	4.1	6.2	4.9	4.4	3.5
Norway	1.1	1.1	7.3	3.7	3.8	8.9	11.7	11.2	12.4	9.3
Poland					2.8	2.4	2.5	2.8	2.7	2.3
Portugal				2.1	2.3	3.7	2.7	3.6	3.7	2.9
Slovak Republic					6.0	2.6	2.7	3.0	3.1	2.5
Slovenia					0.5	1.2	2.8	3.2	2.5	1.8
Spain	1.4	1.3	1.4	2.9	1.7	3.1	3.9	4.7	2.8	2.2
Sweden	2.0	1.8	1.7	1.6	2.8	3.9	3.7	3.7	3.0	3.0
Switzerland	1.3	2.1	1.7	2.0	1.8	2.7	2.6	3.1	3.3	3.2
Turkey	0.5	0.6	1.1	1.0	1.1	1.8	1.7	1.6	1.8	1.9
United Kingdom	1.3	2.2	4.7	3.5	2.8	3.5	3.3	3.4	3.6	2.8
United States	4.0	2.9	1.9	2.4	2.9	2.6	3.2	3.0	2.0	1.7
OECD 평균	2.2	2.2	2.6	2.6	2.8	3.5	3.6	3.8	3.5	2.8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11*, 2011.

2007년까지는 법인세율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수입은 다른 세목에 비해, 그리고 GDP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지만 2007년 이후에는 그러한 추세가 반전되었다. 2008년에는 법인세 수입이 총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로 전년도인 10.6%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으며, 2009년에는 8.4%로 더 낮아졌다. 법인세 수입의 GDP 대비 비율도 2007년 3.8%에서 2008년 3.5%, 2009년 2.8%로 낮아졌다. 이전에 비해 2007년 이후에는 법인세율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세율 인하 속도가 늦추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입의 상대적 비중이 하락한 것은 이 시기의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가 급속하게 하락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법인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법인세 수입이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 아직은 자료가 많지 축적되지 않아 2007년 이후의 법인세 수입 감소세가 장기적인 추세인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거의 20여년 동안 세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 없이 일관되게 법인세율을 인하하였던 세계 각국의 법인세 정책 방향에 대해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요약 및 시사점

이상에서 검토한 OECD 국가의 법인세제 변화추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먼저 법정 법인세율이 1980년대 초에 비해 크게 인하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1985년 전후에서부터 2005년 전후까지 2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세율이 인하되었으며, 그 이후 인하추세가 완화되었다. 2005년 이후에도 법인세율의 평균치가 조금씩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전 20년간에 나타난 전반적인 세율 인하 추세와는 달리 고세율을 유지하던 일부 국가가 다른 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배당에 대한 세부담도 법인세율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면서 변화되었다. 1985년 이후 2005년까지 세부담이 크게 인하되었으며, 법인세율 인하 효

과와 개인소득세율 인하 효과, 그리고 이중과세 조정이 결합되어 배당에 대한 세부담 인하폭은 법인세율 인하 폭보다 더 컸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은 세부담이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배당에 대한 총세부담의 완화 내용을 보면 법인단계에서보다는 개인단계에서의 세부담 완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유효세율도 1982년부터 2005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수입의 변화를 보면 세율이 인하되는 가운데도 법인세 수입이 총세수입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법인세 수입이 총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8%(OECD 평균) 수준에서 2005년 이후 10% 수준이 되었으며, 법인세 수입의 GDP 대비 비중은 1985년 2.6%에서 2007년 3.8%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는 법인세 수입의 총세수입 및 GDP 대비 비중이 하락세를 보여주었다.

지난 1980년대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법인세율이 계속 인하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1980년대 후반에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시작되면서 법인세의 왜곡효과와 세율 인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race to the bottom”이라는 말이 논문에서 많이 언급되었고, 궁극적으로 법인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인세가 폐지될 것 같은 조짐은 보이지 않으며, 최근에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보여주었던 세율 인하 경쟁이 주춤하는 양상도 보인다. 세율 인하 경쟁이 주춤하게 되는 이유는 지난 20년간의 경쟁을 통해 나타난 세율체계의 수렴 현상, 세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와 법인세 부담 감소를 다른 세목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세율 인하 경쟁 이후 2000년대에는 세계 각국의 세율이 주요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추세를 보인다. 대체로 경제력이 크고 세계 경제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다른 국가와 경쟁이 비교적 적은 국가들은 30% 내외, 그 외 세계 경제에 많이 의존하는 소규모 개방국가들은 25% 수준으로, 그보다 경제력이 낮은 국가들은 20%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OECD 국가의 법정세율의 표준

편차는 1980년 8.0201에서 2012년 5.7336으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세율이 경쟁국과 유사한 상태로 수렴된 이후에는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려는 동기가 약화된다. 모든 국가가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면 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경쟁의 필요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수입의 관점에서 볼 때도 법인세가 포기할 수 없는 수준의 비중(평균 10% 내외)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법인세를 더이상 인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20년간은 법인세율은 인하되어도 법인세 수입은 총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나 GDP 대비 비중으로 보나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은 법인세율과 법인의 배당에 대한 세부담은 속도가 완화되긴 하였지만 계속 인하된 것에 비해 법인세 수입의 총세수입 및 GDP 대비 비중은 하락세를 보여주었다.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법인세 수입 감소를 가속시켰을 가능성은 크지만 어쨌든 법인세 수입의 감소는 법인세율 인하 시 세수입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유발한다.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그것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보충해야 한다면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율을 더 인하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출범하면서 경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득세의 단계별 세율을 각각 2%p씩 인하하고 법인세는 낮은 세율을 3%p, 높은 세율을 5%p 인하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점진적인 세율 인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높은 세율을 2012년에 각각 2%p씩 인하하는 계획을 남겨놓고 있었다. 그러나 논란 끝에 2012년으로 예정된 세율 인하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보완조치로 법인세의 경우 중간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³⁾.

법인세율 인하에 초점을 맞춰 예정된 세율 인하를 하지 않게 된 이유를

3) 우리나라의 2008년 이후 법인세율 인하 동향과 원인에 대한 논의는 안종석·전영준(2011) '제Ⅳ장 미래환경변화와 개별세목의 개편' 중 pp. 157~158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세수입 측면에서의 우려이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재정이 악화되었으며, 정부는 지속적인 재정개선 노력을 통해 2013년에 균형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재정 적자로 인해 부채가 누적되어 국가 부채가 GDP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를 하면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법인세율 인하의 연기에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부자 감세 주장이다. 법인세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이며, 자본소득은 주로 부자들에게 귀속되므로 재정이 적자인 상태에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서 적자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나 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그러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넓게 확산되어 있고 그것이 법인세율의 인하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법인세의 투자 증대 효과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세율 인하 주장의 가장 중요한 논리 중의 하나가 법인세가 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는 시장에서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용을 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이며, 경제가 극심한 불황상태에 있거나 미래가 불확실하여 투자유인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는 세 부담 변화에 따른 한계적인 수익률 변화에 대해 투자가 눈에 띄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세법개정을 통해 2009년부터 인화된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도 전에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투자심리가 매우 낮아졌다. 그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율 인하가 투자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니 세율 인하 시기를 연기하여 재정수지 악화를 최소화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가 1980년대부터 유지해온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 과세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법인세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및 재무구조 왜곡효과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Ⅲ.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

이 장에서는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여기서 현행 과세체계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전통적인 법인세 과세체계로서 당기 순이익에 일정률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체계를 말한다. 앞서 제Ⅱ장에서는 지난 20여년간 법인세로 인한 경제의 효율성 저하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법인세율 인하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완화·정체되는 경향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1980년대 이전에 비해 법인세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경제상황이 유사한 국가들끼리 세율이 동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 세율 인하 정책이 추진되기 이전에 비해 법인세의 비효율성은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가 가진 기본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과세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제1절에서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제2절에서 논의한다.

1. 법인세 과세체계의 문제점

가. 투자에 대한 과세⁴⁾

법인세를 부자에 대한 세부담 증대 수단으로 인식하거나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법인세를 저축에 대한 과세 즉, 저축에서 발생하

4) 안종석(2011)의 관련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보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 및 기업활동을 하는 세계화된 경제에서는 법인세를 저축보다는 투자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폐쇄된 경제에서는 국내에서 축적된 자본이 국내 생산활동에 투자되므로 국내의 자본 축적과 투자는 사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므로 투자에 대한 과세와 저축에 대한 과세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경제학자들에게는 법률적으로 어떤 주체에 과세하든지 불문하고 그것이 저축 및 투자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그러나 세계화된 경제에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내국인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그것이 국내에 투자되었든 해외에 투자되었든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저축을 하는 사람은 국내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해외의 투자를 통해서 얻는 수익률도 고려하여 투자 대상지를 결정한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해외투자 수익률(r^*)은 국제 자본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저축자 입장에서 보면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을 고려한다면 해외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이후의 수익률 $r^*(1-tp)$ 가 저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율(tp)은 저축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한편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에 의하면 내국인의 투자는 외국인의 투자는 국내에 투자되어 발생한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인세(tc)를 부과한다. 그러므로 국내 투자에서 발생하는 한계 수익률을 $f'(k)$ 라고 할 때 내·외국인 투자를 가리지 않고 법인세(tc)를 납부한 후의 세후수익률은 $f'(k)(1-tc)$ 가 된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는 국제 자본시장에서 한 단위 투자에 대해 r^* 의 세전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수익률은 자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기 이전의 수익률이 된다. 그러므로 이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투자에 대해 국내(원천지)에서의 세금을 납부하고 거주지에서의 세금은 납부하기 이전의 수익률($f'(k)(1-tc)$)이 r^* 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며, r^* 보다 많으면 국내에 투자를 할 것이다⁵⁾. 그러므로 법

인세는 투자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국내 투자 규모의 결정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역할은 없다. 그래서 개방경제하에서 법인세는 투자에 대한 세금이고 개인소득세는 저축에 대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원천지에서 납부한 세금을 거주지 세액에서 완전히 공제해 준다면 개방경제하에서도 원천지 법인세가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한 이후에 거주지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원천지 납부세액을 합하면 원천지 세금이 없는 경우에 거주지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실제 법인세 과세체계를 보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원천지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거주지 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지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에 대한 과세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외국납부세액이 완전하게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외국 납부세액이 완전히 공제되려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국내 거주자에 대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환급을 해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환급을 허용하는 경우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국내에서 다른 납세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며, 다른 국가의 조세정책이 국내 수입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천지 납부세액이 거주지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원천지 법인세가 투자에 영향을 준다. 둘째,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국외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 과세를 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한 국가 중에서도 미국과 우리나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외 직접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 셋째, 국제투자의 경우에는 국

5) OECD(2007)은 국내 경제만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분석한 '전통적 견해(traditional view)'와 이를 기업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동태적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견해(new view)'에 대응하여 국제투자를 고려한 세계화 사회에서의 법인세를 분석하는 이와 같은 견해를 '새롭고 새로운 견해(new new view)'라고 불렀다.

내투자와 비교해 볼 때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 경우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투자에 영향을 준다. 앞서 예를 든 경우에 원천지세금을 납부한 후의 수익 $f'(k)(1-t_c)$ 중 일부만 거주지 정부에 신고하고 나머지는 숨길 수 있다면 숨긴 소득에 대한 최종적인 세부담은 원천지세율(t_c)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인세가 투자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은 국내 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세가 국내 법인부문에 대한 세부담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인세는 국내 법인부문의 투자를 비법인부문이나 국외로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인해 법인세는 국내 법인부문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고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법인세가 국내투자와 국제자본의 흐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지는 실증분석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법인세가 국내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 자본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실증적 연구가 있었으나 도출된 결론은 연구마다 상당히 달라서 이론적 연구와는 달리 실증 연구 분야에서는 합의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법인세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 연구들도 그만큼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는 법인세가 국제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실증분석에서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고 아직도 실증분석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법인세 부담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실제 법인세 부담은 법정 법인세율과 감가상각률, 세액공제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달라진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법정 법인세율보다 투자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세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한계유효세율이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런데 한계유효세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인세제도의 다양한 요소들과 이자율, 물가상승률 등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종합한 하나의 지표

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수많은 가정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추정하는 이틀마다 추정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추정결과들은 각각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타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 비교적 쉽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법인의 세전이익으로 나눠서 평균세율을 추정하고 그것을 법인세 부담을 대변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추정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지표인 한계유효세율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으며, 경제 상황에 따라 즉, 적자기업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추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어떤 지표를 보고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이론적으로는 한계유효세율이 가장 적절하겠지만 실제로 경제학자들도 추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한계유효세율을 기업이 추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지는 의문이다. 그보다는 수년간의 경험치를 평균하여 지표로 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도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법인세 외에 투자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형에 포함시켜 법인세의 효과만을 추출해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거시지표를 사용한 시계열 모형에서는 경기변동 등은 비교적 잘 반영하는 데 비해 기업의 특성, 업종의 구성 변화 등 미시적 요인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미시자료를 사용한 횡단면 분석에서는 경기변동 등 거시적 요인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법인세율 인하를 실시한 이후 세율 인하가 투자를 증대시켰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이 논의는 법인세율 변화의 효과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법인세의 효과가 경기변동 요인을 압도할 정도로 컸는지에 대한 논의였다고 할 수 있다.

오래 전에 수행한 연구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수행한 연구들이 법인세의 효과를 명확하게 추출해 내는 경향이 있으며, 다양한 국가나 업종, 긴 시간을 포괄하는 연구보다는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에 대한 연구들이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시간

이 지나면서 추정기법이 발달하고 더 많은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질적인 집단에 대한 연구가 투자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80년대 이후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그 이전의 시기를 포괄하는 연구에 비해 법인세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기업활동의 세계화로 인해 조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더 증폭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자기자본에 대한 이중적 과세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자는 비용으로 공제되는 반면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개인단계에서는 이자와 배당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과세하므로 이자보다 배당이 중과세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투자자가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자금 대여의 형식을 취하면 개인단계에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이득을 얻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배당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배당세액공제를 허용하거나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단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이중과세를 전혀 조정하지 않는 고전적 과세체계를 적용하며,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부분적인 조정만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중과세가 완전히 조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도 배당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과세할 때 낮은 수준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않으며, 종합소득과세의 경우에는 법인세 낮은 세율을 기준으로 배당세액공제를 하므로 이중과세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표 III-1〉에서는 이중과세를 조정한 이후의 배당에 대한 총세부담과 이자에 대한 실효세부담을 정리하였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자에 대한 세부담이 배당에 대한 세부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국가 전체의 평균치를 보면 배당에 대한 세율은 39.8%인 데 비해 이자에 대한 세율은 27%로 13%p 정도 낮다.

〈표 III-1〉 OECD 회원국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체계(2011년)

(단위: %)

국가	이중과세조정방법	법인세율	배당세율 (개인+법인)	이자세율
Australia	FI	30.0	46.5	47
Austria	CL	25.0	43.8	25
Belgium	CL	34.0	43.9	15
Canada	FI	27.6	48.0	46
Chile	FI	17.0	40.0	40
Check Rep.	CL	19.0	31.2	15
Denmark	MCL	25.0	56.5	52
Estonia	NST	21.0	21.0	0
Finland	PIN	26.0	40.5	28
France	PIN	34.4	58.6	46
Germany	CL	30.2	48.6	25
Greece	CL	20.0	32.5	10
Hungary	OTH	19.0	32.0	16
Iceland	CL	20.0	36.0	20
Ireland	CL	12.5	48.4	27
Israel	MCL	24.0	43.0	20
Italy	CL/PIN	27.5	36.6	27
Korea	PI	24.2	47.8	39
Luxembourg	PIN	28.8	42.7	10
Mexico	FI	30.0	30.0	0
Netherlands	CL	25.0	43.8	20
New Zealand	FI	28.0	33.0	33
Norway	OTH	28.0	48.2	40
Poland	MCL	19.0	34.4	19
Portugal	MCL	28.5	43.9	22
Slovak Rep.	NST	19.0	19.0	19
Slovenia	CL	20.0	36.0	20
Spain	MCL	30.0	43.3	21
Sweden	CL	26.3	48.4	30
Switzerland	MCL	21.2	36.9	42
Turkey	PIN	20.0	34.0	15
U.K.	PI	26.0	52.7	50
U.S.	MCL	39.2	52.1	42
평균		25.0	39.8	27

주: CL: Classical system;

MCL: Modified classical system (dividend income taxed at preferential rates (e.g. compared to interest income) at the shareholder level;

FI: Full imputation; PI: Partial imputation; PIN: Partial inclusion;

NST: No shareholder taxation of dividends;

CD: Corporate deduction (corporate level deduction, fully or partly);

OTH: Other types of systems

자료: OECD Tax Database;

이자 세율은 OECD(2011), p. 17

개별 국가들을 보면 배당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을 전액 배당소득세에서 공제하는 FI(Full imputation)의 경우, 그리고 개인단계에서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NST(No shareholder taxation)의 경우에 배당과 이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같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세 부담이 더 크다. 멕시코와 에스토니아는 각각 FI와 NST여서 배당에 대한 세 부담이 법인세율과 같은데 이자에 대해서는 세율이 0%이어서 배당의 세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당이 이자에 비해 세 부담이 두 배 이상인 경우도 상당수 있다. 평균 세율을 보면 이자에 대한 세 부담은 법인세율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스위스의 경우 유일하게 이자에 대한 세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과세체계의 복잡성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세제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이다. 세제가 얼마나 복잡하나에 대해 하나의 지표로 일관성 있게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여기서는 세제가 복잡하게 되는 요인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법인세제의 복잡성을 설명한다.

법인세가 특별히 복잡한 것은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주의 회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매년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해에 실제로 발생한 현금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주의 관점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감가상각 등 자산의 가치 평가에 대한 규정이다. 건축물이나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감가상각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그 상각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법인세 목적상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각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하는데,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설과 장비에 대해 실제 상각률 즉, 경제적 상각률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동일한 설비라고 하더라도 실제 상각률은 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법정 상각률을 정하게 되는데, 법정 상각률과 경제적 상각률이 다른 경우 감가상각제도가 기

업의 세부담을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기업회계에서 적용하는 상각률이 세법상 허용되는 상각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해 이를 조정해야 한다.

기업이 기업의 자체 목적상 발생주의 회계를 통해 사업활동을 기록하고 평가하므로 그 결과 나타난 수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근거로 과세한다면 법인세가 특별히 복잡하다는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기업이 자의적으로 수익의 규모나 비용의 규모를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 공정한 과세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득이 감가상각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세무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과세체계가 복잡하면 일차적으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과다한 납세협력비용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과세 규정이 복잡하면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여 조세분쟁이 증가하게 되며, 정책 입안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허점이 발생하여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조세회피는 조세회피를 하는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 간의 공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2.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

이상에서 검토한 법인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법인세를 폐지하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의 문제점 외에도 법인은 사업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중간적인 개체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과 소비의 궁극적인 주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 법인세 폐지론의 설득력을 강화하는 논리가 된다. 법인이 사업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은 종업원 급여와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주주에 대한 배당 등으로 개인에게 분배되며,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분배되지 않았던 부분은 법인이 해산할 때 분배된다.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들은

중도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투입한 자본을 회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법인의 소득 중 자기자본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인해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비해 배당소득이 과중하게 과세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조세의 비효율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조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효율성과 형평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개인에게 배분되기 이전 단계에서 과세하는 법인세는 이러한 평가에서 어려움을 야기한다. 형식적으로 법인이 직접 납부한다는 관점에서 법인세를 직접세라고 분류하지만 법인이 만들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 조정, 근로자 임금의 조정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소비자나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효과의 관점에서는 간접적인 과세의 성격이 있으며, 소득분배의 관점에서 법인세의 귀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법인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법인세 폐지론이 실제 정책에 있어 큰 힘을 받지는 못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다가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두 가지 근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법인세 폐지론에 대응한 법인세 과세 불가피론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논거 중 하나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법인이 인격을 부여받은 실체이고 경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공공재를 사용하는 등 국가 재정의 혜택을 받으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주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법률상의 형식을 강조한 것으로서 경제적인 실체를 중시하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법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또 다른 주장은 세무행정상의 필요성이다. 과세당국이 법률에 정해진 바와 같이 정확하게 세금을 징수하려면 과세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신고납부제도하에서 과세에 필요한 정보는 납세자를 통해 얻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때 수백만 또는 수천만에 이르는 개인 납세자보다는 숫자가 훨씬 적은 사업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세금과 관계없이 기업 자체의 목적으로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보관·발표해야 하는 법인은 과세당국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로라고 할 수 있다. 개

인소득세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소위 유리알 지갑이라고 하여 조세회피가 어렵고 납세 순응도가 높은데, 이는 중간에 기업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세당국이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기 위해서도 법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무행정이 잘 발달하지 않은 저개발국의 경우 사업장을 통한 정보 확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순전히 개인소득세를 잘 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인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법인세는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세와 같은 성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개인단계에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단계에서 납부한 세금은 개인단계의 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FI(Full imputation)제도가 이와 같은 개념에 입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이중과세방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FI 과세체계도 원천징수적인 성격의 법인세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둘째는, 세수입 확보의 관점에서 법인단계의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가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FI나 NST(No shareholder tax)와 같이 완전히 이중과세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이중과세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법인세를 세수입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적으로 볼 때 법인세는 총세수입(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의 10%를 차지하며 우리나라는 15% 수준으로 다른 국가보다 법인세의 비중이 높다. 이와 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를 폐지하고 개인소득이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그만큼 증가시키려면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은 중간적인 개체로서 법인에 대한 세금은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중 누구에게 귀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반면 개인소득세와 소비과세는 개별 유권자가 자신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를 폐지하고 그만큼 개인소득세나 소비과세를 인상하는 데 대한 정치적 반발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법인세의 세수입을 다른 세목으로 대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한 가

지 고려하여야 할 점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업의 투자된 자본에 대한 세금을 폐지함에 따른 세수입 감소 문제이다.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결과는 새로운 투자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미 자본을 투입하여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투자된 자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투자된 자본은 법인세가 있건 없건 사업 활동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매우 긴 시간을 놓고 볼 때는 투자된 자본이 회수된 후 재투자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인세가 이미 투자된 자본에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는 그러한 효과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 수입 중의 대부분은 이미 투자된 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법인세의 폐지가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법인세를 폐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세수입 전부를 개인소득세 등 다른 세목으로부터 징수한다면 그 세목의 비효율성이 커져서 결과적으로 법인세 폐지에 따른 효율성 개선 효과를 압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를 폐지하고 다른 세목을 통해 그만큼의 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해 보면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와 재무구조를 왜곡시킨다는 문제가 있지만 법인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면서 투자 및 재무구조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 목적을 위해 세계 각국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추진한 것은 경쟁적인 세율 인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보다 근본적으로 법인세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법인세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든다면, 하나는 법인세를 폐지하지 않는 한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법인세의 비효율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세를 통한 재정세입 확보의 필요성이다.

법인세의 투자 및 재무구조 왜곡 효과는 법인세가 생산요소 중 자본에

만 부과되는 세금이고, 자본 중에서도 차입한 것을 제외한 자기자본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비법인에는 적용되지 않고 지리적으로는 국내 투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세율을 인하하면 다른 부문이나 과세가 되지 않는 다른 요소와의 세부담 격차가 줄어들게 되므로 법인세의 왜곡 효과가 줄어들긴 하지만 국가 간 세율 격차가 존재하는 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좀 더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를 통한 세입 확보의 필요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세 수입이 국가 재정세입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법인세 수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도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세수입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2008년부터 발생한 세계 경제위기 이후 유럽은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08년 이후 유럽 각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그 중에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대, 특정 소비과세 세율 인상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세를 인상을 통해 법인세 수입 증대를 도모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데, 이는 법인세의 효율성 저해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예상되는 법인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⁶⁾.

그러나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재정수입 확대가 유럽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를 비효율적인 세목이라고 정책수단에서 제외하기보다는 법인세제를 개혁하여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6) 경제위기에 대응한 주요국의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한국조세연구원(2007) 참조.

III.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 57

더 나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인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개혁방안은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라기보다는 법인세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법인세 과세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IV. 근본적 개혁 대안 논의

이 장에서는 현행 법인세제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 법인세제는 기업의 투자와 재무구조를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하여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으로의 구조적 개편 가운데 가장 먼저 제도화되어 운영되는 것이 이원적 소득세제(DIT)라고 할 수 있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모든 자본소득을 근로소득과 구분하여 동등한 수준의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입 초기에는 비교적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안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형되어 배당과 이자의 세부담 격차가 상당히 큰 경우가 많으며, 이자·배당 간 세부담 격차가 적은 경우에는 이들 소득에 대한 세율과 법인세율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안중석·전병목(2007)은 이원적 소득세제의 특징과 도입·운용 현황, 이원적 소득세제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소득세제 평가,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의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현행 법인세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의 조화를 추구한 이원적 소득세제와는 달리 법인세 과세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1절에서는 근본적 개혁안의 기본이 되는 현금흐름 과세에 대해 검토하고, 제2절에서는 현금흐름 과세와 같은 성격의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유럽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자본비용 공제제도(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ACE)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유지하면서 이자·배당의 차별적 과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 포괄적 사업소득세제(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 CBIT)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제5절에서는 제2절~제4절에서 검토한 세 가지 대안을 종합하여 비교·평가한다. 본 보고서는 법인세 과세

체계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자본소득과세체계에 대한 포괄적 개혁방안인 이원적 소득세제보다는 제2절~제4절에서 검토한 현금흐름 과세제도와 ACE, CBIT가 주요 관심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제6절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외국에서 도입한 경우의 성과나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다.

1. 현금흐름 과세(Cash Flow Tax)

가. 현금흐름 과세제도의 특징⁷⁾

현행 법인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상당부분은 발생주의 과세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발생주의 과세로 인하여 과세체계가 복잡하게 되고,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조세회피 유인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현금흐름 과세를 생각할 수 있다. 현금흐름 과세는 현금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매출액에 대한 세금에서 매입액에 대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현금흐름 과세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현금흐름 과세는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실질거래만을 대상으로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실질기반(R-base) 현금흐름 과세가 그 중 하나이고, 실질거래와 금융거래를 포함하여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금융거래 포함((R+F)-base) 현금흐름 과세가 두 번째이며, 마지막으로 주식거래를 기반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주식거래 기반(S-base) 현금흐름 과세제도가 있다.

R-base 현금흐름 과세는 재화와 용역의 실질거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재화와 용역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총수입에서 재화

7) 현금흐름 과세제도의 특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콕태원(2005) pp. 122~125, OECD(2007) pp. 94~108 참조.

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R\text{-base} = \text{실질 재화와 용역의 총매출} - \text{실질 재화와 용역의 총매입}$$

금융거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지급이자의 비용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배당뿐만 아니라 지급이자도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의 재원조달 방법 선택에 대해 중립적이다. 재원이 자기자금으로 조달되었던 차입을 통해서 조달되었던 그 자금이 투자를 위해 실질적으로 지출되면 지출한 시점에 투자액이 비용으로 공제되므로 그 투자액의 기회비용 즉, 정상수익 한도 내의 수익에 대해서는 자금의 원천과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배당과 유보에 대해서도 과세상 차이가 없으며, 신주 발행과 사내유보 자금의 활용에 대해서도 중립적이다.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투자의 기회비용(자본비용)을 의미하는 정상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정상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뒤에서 설명하는 자본비용 공제제도(ACE)와 같은 특징으로서, 이 경우 조세가 한계적 투자(marginal investment)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상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에 조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뒤에서 ACE를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검토한다.

(R+F)-base는 앞서 설명한 R-base에 금융거래에 따른 현금흐름을 더한 것을 말한다. 즉, 실질 재화와 용역의 총매출액에 차입금, 이자수입, 대여금의 원금상환액과 같은 금융거래 수입을 더한 금액이 총수입이 되고 실질 재화와 용역의 총매입액에 지급이자, 차입금 상환액, 대여금과 같은 금융거래상의 지출을 더한 금액이 총지출이 된다. 단, 주식거래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R+F)\text{-base} = (\text{실질 재화와 용역의 총매출} + \text{차입금} + \text{이자수입} + \text{대여금의 원금상환액}) - (\text{실질 재화와 용역의 총매입} + \text{지급이}$$

자+차입금 상환액+대여금)

기업이 일정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여 전액을 실물에 투자하는 경우 차입금과 투자액이 각각 수입과 지출에 포함되므로 서로 상쇄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지출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므로 차입금을 통한 투자의 수익에 대해서는 정상수익률(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자기자본 투자의 경우 자본의 유입은 주식거래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실물에 대한 투자액은 비용으로 공제되므로 앞서 R-base의 경우에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수익률의 한도 내에서 수익이 비과세된다.

S-base는 법인과 주주 간의 자금거래를 기반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법인의 수익은 법인 내에 유보되어 재투자되는 부분과 세금을 제외하고는 주주에게 배당되거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재매입하는 데 사용되므로 배당액과 법인의 주식 구매액이 수입액이 된다. 그 수입액에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매각한 금액을 차감하면 S-base 과세표준이 된다.

$$S\text{-base} = (\text{지급배당} + \text{주식 구매액}) - \text{신주발행액}$$

기업의 실물 및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수익 중 재투자되지 않은 부분 가운데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주주에게 배당되거나 주식을 재매입하는 데 사용되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므로 양자간에는 $R+F=S+T$ ($T=\text{법인세}$)의 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S-base는 개념적으로 (R+F)-base에서 세금을 차감한 금액 ($=R+F-T$)과 일치한다.

현금흐름 과세의 특징을 보면 가장 먼저 자기자본과 차입금을 동등하게 취급하므로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자금의 원천을 불문하고 실제로 투입된 자금은 비용에 산입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금의 원천을 불문하고 정상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한계적 투자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 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징은 앞서 언급한 법인세 과세체계의 중요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현금흐름 과세에 관심을 기울이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정상수익을 초과하는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므로 투자 입지의 선정 등과 같이 한계세율보다는 평균세율에 대해 반응하는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문제는 남는다⁸⁾.

세 번째로, 조세체계의 단순성, 조세회피 축소 등의 관점에서 현금흐름 과세는 큰 장점이 있다. 현금흐름 과세는 현금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과세제도보다 쉽고 단순하며, 재원조달방법에 대해 중립적이어서 재원조달 결정을 단순화할 수 있고, 감가상각·물가상승과 관련되어서 발생하는 복잡한 과세문제가 없어진다. 그렇다고 하여 조세회피 유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R-base의 경우에 실질적인 실물거래를 금융거래로 위장함으로써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실물투자에 소요된 비용이 즉시 상각되므로 세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과도한 구매를 하고 바로 퇴파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절감할 수도 있다⁹⁾.

세수입 관점에서 볼 때 정상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으므로 현행 법인세에 비해 세원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수입 감소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있다. Gordon et al.(2004a, b)에 의하면 현행 법인세제하에서도 고속감가상각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어 실효법인세율이 낮는데, 이러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흐름 과세제도하에서도 세수입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또한 Avi-Yohna(2004)는 미국의 경우 정상수익률이 0.5~3% 수준으로 매우 낮아 세수입 감소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평가하였다.

8) 이에 대해서는 뒤의 ACE에 대한 논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9) Shome and Schutte(1995) 참조.

나. 현금흐름 과세제도의 도입 사례¹⁰⁾

실제로 현금흐름 과세제도가 적용된 사례를 보면 영국과 노르웨이의 석유산업에 대한 과세, 이탈리아의 사업활동에 대한 지방세, 에스토니아의 현금흐름세를 들 수 있다.

먼저 영국의 경우를 보면 북해조세제도(North Sea Fiscal Regime)는 석유수입세(the Petroleum Revenue Tax), 석유업에 대한 법인세(the ring fence corporation tax), 보조 부과금(the supplementary charge)으로 구성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현금흐름 과세라고 할 수 있다. 석유수입세는 영국의 대륙붕에서 석유 및 가스를 생산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에 대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R-base 현금흐름 방식으로 과세하며 세율은 50%이다. 유전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이 전액 공제되지만 이자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1993년 3월 1일 이후 개발협약을 체결한 유전에 대해서는 이 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석유업에 대한 법인세는 일반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와 같은 것이지만 영국과 영국 대륙붕에서 석유 및 가스를 추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입과 비용의 계산을 그 사업 범위 내로 국한하는 제도이다. 영국과 영국의 대륙붕에서 석유 및 가스를 추출하여 발생한 이익이 다른 사업에서의 손실이나 과도한 이자지불로 인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이 과세제도의 목적이 있다. 30%의 세율(2006년 기준)이 적용, 2002년 이후 모든 자본적 지출의 공제가 허용된다. 보조부과금은 석유 및 가스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10%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부과금인데 금융비용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석유수입세는 법인세와 보조부과금 과세 시 과표에서 공제된다. 이는 1993년 이후 개발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총세율이 40%이고 그 이전에는 70%였음을 의미한다.

노르웨이는 석유산업에 대해 전형적인 현금흐름 과세체계를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관대한 감가상각제도, 이자비용 공제제도를 통해 정상수익에

10) 자세한 내용은 OECD(2007), Lehis et al.(2008), Devereux and Sørensen (2006) 참조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석유업에 대해 정상적인 법인세율 28%를 적용하며, 이에 추가하여 50%의 특별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최고세율은 78%가 된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탐사비, 연구개발비, 운영비 등 일부 비용은 즉시상각이 허용되며, 설비투자는 6년간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한다. 이자비용은 공제가 허용되지만 석유부문 상각대상 자산의 50% 이내의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만 공제가 허용되고, 정상수익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투자 첫해에 투자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 특별세 적용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이탈리아의 사업활동에 대한 지방세(IRAP)는 R-base의 현금흐름 과세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금융거래와 특정 아이템의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로부터 발생한 수입에서 그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세율은 4.5%가 기준세율이고 각 지방이 1% 내에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2000년부터 지급배당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이것은 S-base 현금흐름 과세와 유사하다. 그 이유는 신주발행 비용을 공제한 순배당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2011년의 세율은 (12/79)(약 26.6%)인데, 순배당이 아니라 총배분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21%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배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상의 적용사례를 종합해 보면 에스토니아에서는 전반적인 법인세제를 현금흐름 과세로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아주 좁은 범위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현금흐름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영국과 노르웨이의 석유산업에 대한 과세는 현금흐름 과세가 정상수익을 제외한 지대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자국 내의 석유자원 개발을 통해 벌어들이는 지대에 대한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현금흐름 과세를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자본비용 공제제도 (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ACE)

가. 자본비용 공제제도(ACE)의 특징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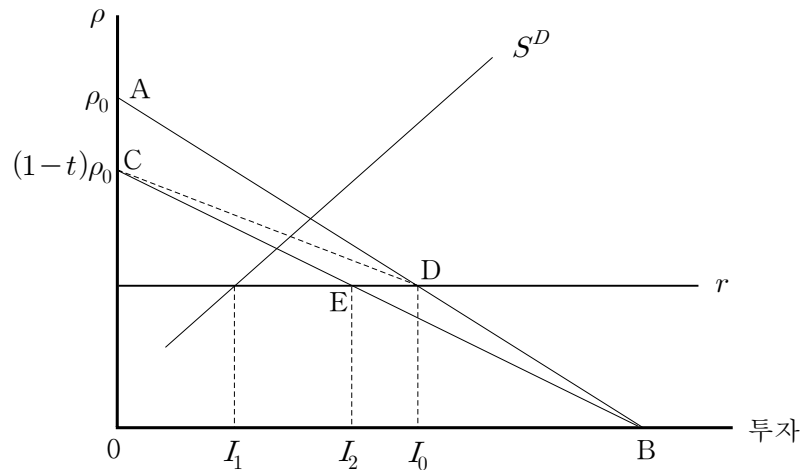
1) 연속적 투자의 경우 투자에 미치는 영향

영국의 IFS는 2011년에 발간한 보고서 *Tax by Design*에서 기업과세 개편방안으로 ACE(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제도를 제안하였는데, 이 제도는 법인소득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수익을 차감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자기자본을 E ,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ρ ,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율(기회비용)을 r 이라고 하면 현행 법인세제는 당기순이익, 즉 ρE 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ACE는 기회비용을 차감한 경제적 이윤, 즉 $(\rho - r)E$ 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과세체계와 ACE체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으로 비교해 보면 [그림 IV-1]과 같다. 이 그림은 자본 수입국의 투자를 보여주는데, 선 AB가 국내 투자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투자가 증가하면서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가정에 근거를 둔 것이다. S^D 는 국내 투자 즉, 국내자본의 공급(저축)을 나타내는데, 수익률이 상승하면 저축이 증가하므로 우상향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 r 은 국제시장에서의 자본 공급을 나타내는데, 우리나라가 국제 자본시장에서 가격에 순응하는 소규모 개방경제이므로 국내시장에서의 투자수익률이 r 보다 높으면 국내 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국외에서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국제시장의 자본공급 곡선은 수평축에 평행하도록 그렸다.

11) 안종석·전영준(2011) '제IV장 미래환경변화와 개별세목의 과세체계개편' pp. 159~164를 수정·보완하였다.

[그림 IV-1] 당기순이익 과세와 ACE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자료: 안종석·전영준(2011), p. 16

세금이 없는 폐쇄경제에서는 국내 저축과 국내 자본수요가 만나는 선에서 투자규모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국제 시장에서 그보다 낮은 수준의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고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면 국내 투자는 폐쇄된 경제에서보다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림 IV-1]에서 세금이 없는 경우 국내 투자 규모는 I_0 가 되며, 그 중 I_1 만큼은 국내 자본의 투자가 되고 나머지 $(I_0 - I_1)$ 는 국내 투자를 위한 해외자본의 수입이 된다.

만약 정부가 국내 발생 수익에 대해 t 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면 국내 투자의 세후수익률 곡선은 AB가 아니라 CB가 되고, 국내 투자는 세후수익률 곡선과 자본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E)에서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세금 부과로 인해 국내 투자가 I_2 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국내 투자의 감소분은 외국인투자의 감소분과 일치하고 국내 자본공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방경제에서 국내 발생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는 국내 저축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국내 투자에 대한 과세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전수익률 ρ 가 아니라, ρ 에서 정상수익률을

차감한 경제적 이익률이 되고, 차감하는 정상수익률이 r 이라면 투자된 자본 한 단위당 과세대상 수익은 $(p-r)$ 이 된다. 이 수익에 이전과 같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면 국내 투자의 세후수익률 곡선은 CB가 아니라 CDB가 되며 국내 투자규모는 세금을 부과하기 이전과 동일하게 I_0 가 된다. 그러므로 현행 제도와 같이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ACE제도를 적용하여 정상수익을 제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속적인 투자(continuous investment)의 경우 투자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ACE제도의 특징은 법인세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인세 정책에 대해서는 독점적 이익에 대한 과세임을 강조하여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공존한다. 현행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정상수익과 독점적 이익이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두 가지 주장이 모두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며, 동시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독점적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담을 완화하면 독점적 이익에 대한 과세가 미진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독점적 이익에 대한 과세는 개인단계에서 소득세를 통해서 흡수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이익률보다는 소득의 규모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독점적 이익에 대한 과세와는 성격이 달라진다. 그런데 ACE는 정상수익과 독점적 이익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독점적 이익에 대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자는 주장과 정상수익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2) 불연속 투자의 경우 투자에 미치는 영향

앞서 검토한 ACE의 장점은 불연속적인 투자결정(discrete investment

decision)을 고려할 때 상당히 달라진다. 투자를 한 단위씩 증가시키거나 는 연속적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세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한계세율이 투자를 더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하는 기준 지표가 되지만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기업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한 번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한계세율 보다는 총세부담이 중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총세부담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평균세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림 IV-1]을 통해서 설명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¹²⁾.

현행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ACE제도로 변경하면 정상수익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불연속적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수익률이 정상수익률과 같거나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ACE제도하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독점적 이익이 많은 기업은 ACE제도하에서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법인세제를 ACE제도로 변경하면서 동등한 수준의 세수입을 확보하려면 수익률이 낮은 기업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하는 세금을 수익률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모두 징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CE제도는 독점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

불연속적 투자와 독점적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의 부정적 효과는 특히 국제투자의 경우에 크게 나타난다. 국내 기업의 투자 증대와 달리 국제투자는 기업의 이전이 중요한 이슈이므로 불연속적인 투자결정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독점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인 경우가 많다. 그 독점적인 이익이 투자대상국의 자원 및 원자재 공급, 인력공급, 시장여건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천지 국가에서 과세를 강화하여 독점적 이익 중 많은 부분을 국내에서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제2절에서 논의한 현금흐름 과세에서 영국과 노르웨이의 석유산업에 대한 현금흐름 과세제도가 그러한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다국적기업 자체가 독점적 이윤을 창출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

12) 평균세율이 불연속적 투자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Devereux and Griffith (2003) 참조.

는 경우에는 독점적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가 국내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국제투자이론에서는 자본 자체에 초점을 맞춰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자본이 어느 지역에 투자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그러나 Dasai and Hines(2004)는 기업의 자본을 누가 통제하는지가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업은 그 기업을 통제하는 집단에 따라 생산성과 수익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동일한 노동과 자본을 결합하더라도 경영기법, 전략, 물류시스템, 상표권, 저작권, 투표권 등 무형자산에 따라 생산성과 수익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순한 자본의 유출입을 넘어서 독점적 이윤을 창출하는 다국적기업의 유입이 국가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U에 대한 ACE제도 도입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제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을 고려할 때 EU 국가들이 ACE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 국가만 도입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제6절)에서 외국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3) 재무구조 및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ACE제도의 또다른 중요한 특징은 이자와 배당에 대한 과세상의 차이를 없앤다는 점이다. 아주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법인세 제도의 문제 중의 하나는 차입한 자금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데 비해 주주에게 배당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점인데, ACE는 배당의 경우에도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자와 배당 간의 과세상 차이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실제로 현행 과세체계를 ACE로 전환하는 경우 세수입 감소가 우려된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연속적 투자만 있는 순수한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독점적 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기대수입이 0이 된다. 이 경우에는 ACE제도를 적용하면 법인세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

나 실제로는 독점적 이윤이 발생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으며, 그 기업들로부터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세수 감소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CE제도하에서는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적으므로 세율을 현행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다른 측면에서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ACE제도로 변경한 이후 이전의 법인세제하에서와 같은 수준의 법인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정치적인 저항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기업인들에게 고세율 국가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경우 ACE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폐지하고 법인세 명목세율을 인하하였다. 2006년에 ACE제도를 도입한 벨기에의 경우 법인세율이 34%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법인세율이 38%대인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이다. 벨기에가 소규모 개방국가라는 점과 인근 국가의 세율을 고려해 볼 때 명목세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자본비용 공제제도(ACE)의 도입 사례¹³⁾

최근에 오스트리아와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브라질에서 ACE제도를 적용하였던 적이 있으며, 벨기에는 2006년에 ACE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른 국가들에서 일시적으로 ACE제도를 도입하였다가 전통적인 법인세체계로 전환한 것에 비해 벨기에에서는 2006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아직도 시행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부분적 ACE제도를 운영하였다.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발행한 신주에 대해서만 ACE제도를 적용하였으며,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규모를 산정하였다. 정상소득으로 간주되는 소득(imputed return)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 아

13) OECD(2007), Klemm(2006), Devereux and Sørensen(2006) 등 참조.

나라 정상세율(34%)보다 낮은 25%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정상수익률은 정부채 이자율에 0.8%p를 더하여 산출하였다. 2005년 이후 법인세율을 전체적으로 25%로 인하하면서 정상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제도를 폐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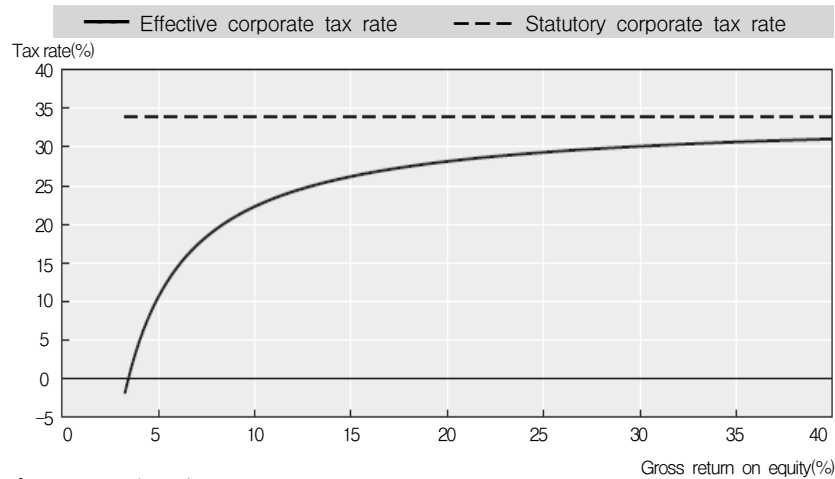
이탈리아에서도 1997년부터 2003년 사이에 부분적인 ACE제도를 운영하였다. 신주의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규모를 산정하였는데, 2000년에는 장부가격의 120%, 2001년에는 140%를 자기자본으로 보고 정상소득을 산출하였다. 그 외 연도에는 장부가격의 100%만 자기자본으로 인정하였다. 정상수익률은 2000년까지 7%, 그 이후에는 6%였으며, 정상수익에 대해서는 법정세율 37%보다 낮은 19%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2004년에 법정 법인세율을 33%로 인하하면서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크로아티아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ACE제도를 운영하였다.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평가하고 5%의 이자율과 제조업 물가상승률을 합하여 정상수익률을 산출하였다. 정상수익은 전액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며, 초과수익에 대한 법인세율은 35%였다. 2001년에 법정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면서 ACE제도를 폐지하였다.

브라질은 1996년에 ACE제도를 도입하였다. 장부가격으로 자기자본을 평가하고 장기채 수익률을 정상수익률로 하였으며, 배당된 이익에 대해서만 정상수익을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였으며, 유보된 이익에 대해서는 ACE를 적용하지 않았다.

벨기에에서는 2006년에 ACE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아직도 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장부가치를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산정하며, 장기국채 이자율의 10년간 평균치를 정상수익률로 보는데, 2006년에 정상수익률이 3.442%였으며, 2007년에는 3.481%, 2008년에는 4.301%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보다 0.5%p 높은 수익률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322,500유로 이상인 경우에 법인세를 부과하며 법인세율은 24.98%에서 33.99%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체제로 되어 있다. 기본세율은 최고세율이 33%인데, 여기에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부가금이 있어서 총세율이 33.99%가 된다¹⁴⁾.

[그림 IV-2] 벨기에의 법정 법인세율과 평균유효세율



자료: OECD(2007)

이상의 경험을 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ACE제도를 도입한 국가들 중에는 벨기에와 같이 자본비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본적인 ACE제도를 도입한 국가도 있지만 더 많은 국가들은 자본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약간 변형된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자본비용의 비과세에 따른 세수입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법인세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적인 현상은 브라질과 벨기에를 제외하고 오스트리아와 크로아티아, 이탈리아에서는 한때 ACE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오래 되지 않아 그 제도를 폐지하였다는 점이다. ACE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을 보면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CE제도는 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CE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명목세율을 높게 책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높은 명목세율은 정치적인 반감을 야기할 수 있

14) CFE(2012)

으며, 평균세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국제적인 투자유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 벨기에는 법인세제를 ACE제도로 변경하면서 법정 법인세율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2012년 현재 명목세율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자기 자본 수익률이 10% 수준이면 평균세율이 20%를 상회한다.

3. 포괄적 사업소득세제

(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 CBIT)

미국 재무성은 1992년에 이자와 배당에 대해 동등하게 과세하는 CBIT 제도를 제안하였다(The US Treasury Department: 1992). CBIT는 이자와 배당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자본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같은 수준의 세율로 한 번 과세하고 주주단계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즉, 모든 자본소득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한 원천단계에서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단계에서는 수취한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 재무성이 제안한 CBIT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로 통합한 안이지만 CBIT가 꼭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합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은 모든 자본소득을 통합하여 동등하게 과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북유럽의 이원적 소득세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던 1990년대 초에 미국의 재무성은 CBIT를 통해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제투자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CBIT는 신주발행과 차입을 동등하게 취급하며, 따라서 기업의 재무구조 선택에 대해 중립적이다. 그러나 국제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자 거주지국의 과세제도에 따라 달라진다. 거주지에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차별적으로 과세한다면 CBIT가 주식 발행과 차입에 대해 중립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해외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면 많은 국가들이 해외직접투

자에 대해서는 거주지 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자소득 등 수동적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 과세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원천지에서 이자와 배당에 대해 같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 본 이자와 배당에 대한 총세부담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1〉 주요국의 해외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국가	과세원칙	해외 자회사 배당 과세	수동적 투자 소득 과세
호주	거주지주의	-적극적 사업소득 면제 · 지분소유기준:10%	-거주지 소득세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캐나다	거주지주의	-적극적 사업소득 면제 · 조약체결 국가 · 지분소유기준: 캐나다 납세자 1인 1%, 캐나다인 전체 10%	-거주지 소득세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프랑스	원천지주의	-비과세	-거주지 소득세 과세 -외국납부세액 소득 공제
독일	거주지주의	-95% 면제 · 지분소유기준:10%	-거주지 소득세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일본	거주지주의	-95% 면제 · 지분소유기준:25%	-거주지 소득세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네덜란드	거주지주의	-적극적 사업소득 면제 · 지분소유기준:5%	-거주지 소득세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스페인	거주지주의	-적극적 사업소득 면제 · 지분소유기준:5% · 원천지 세금 납부 · 조세피난처 제외	-거주지 소득세 과세 -외국납부세액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스위스	원천지주의	-적극적 사업소득 95% 면제 · 지분소유기준:10% 또는 100만스위스프랑	-비과세 -세율 계산 시에는 과표에 포함
영국	거주지주의	-100% 면제 · 소규모 기업은 조약체결국에만 적용	-거주지 소득세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	거주지주의	-거주지 소득세 과세, 외국납 부세액공제	-거주지 소득세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자료: 안종석·전영준(2011), p. 167

CBIT는 현행 법인세제하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지급이자에 대해서도 다른 자본소득과 동등하게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현행 제도하에서 보다 과세표준이 확대된다. 따라서 세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CBIT를 도입하면서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

CBIT하에서는 정상소득에 대해서도 독점적 이윤과 동등하게 과세되므로 세금이 자본비용을 인상하고 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CBIT를 적용하면서 투자에 대한 즉시상각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된 금액에서 발생한 정상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ICBIT(Immediate expensing and CBIT)라고 한다. ICBIT는 경제적 효과가 현금흐름 과세와 유사하다. CBIT는 아직 실제로 도입된 사례가 없다.

4. 근본적 개혁안의 비교

다음에서는 근본적 개혁방안으로 제시된 세 가지 방안을 종합하여 효율성과 세수입, 과세체계의 복잡성 관점에서 비교·평가해 본다. 제1절에서 검토한 이원적 소득세제는 본절의 종합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주로 개인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자본소득과세를 통합하는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춘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본 보고서의 주요 검토대상 중 하나인 CBIT는 기업과세 체계 개편을 통해 자본소득과세를 통합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효율성은 법인세가 유발하는 왜곡을 축소·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인세의 경우 가장 중요한 왜곡효과로 법인의 재원조달에 대한 왜곡과 투자 왜곡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재원조달방식과 관련해서는 현금흐름 과세나 ACE, CBIT 모두 법인단계에서 지급이자와 배당에 대해 동등하게 취급하므로 법인단계에서 자금 차입과 자기자본 조달에 대한 중립성이 성립된다. 그러므로 개인단계에서도 법인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자와 배

당에 대해 동등하게 과세하면 주식발행과 자금 차입에 대해 완전한 중립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주식양도차익을 고려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개인단계에서 배당이나 이자에 비해 저율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법인단계에서 중립성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단계를 종합하면 주식발행이 자금 차입에 비해 유리하게 된다. 신주발행과 유보이익의 사용 간에도 법인단계에서는 중립성이 보장되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개인단계에서 저율로 과세하는 경우 유보이익을 활용하는 것이 신주발행에 비해 유리하다. 국제투자의 경우에는 거주지 과세제도에 따라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과세를 종합한 총세부담의 중립성 여부가 달라진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직접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에 대해서는 거주지 과세를 면제하는 반면 이자 등 수동적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 과세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직접투자가 자금 대여에 비해 유리해진다.

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투자의 기회비용을 의미하는 정상소득에 대한 과세와 정상소득을 초과하는 지대에 대한 과세로 구분해 보면 현금흐름 과세와 ACE는 정상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CBIT는 정상소득과 경제적 지대에 대해 동등하게 과세한다. 그러므로 기존 기업의 투자 증대의 경우에는 현금흐름 과세와 ACE 하에서는 법인세가 투자 증대에 따른 자본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들 제도를 현행 제도와 비교해 보면 현행 제도에 비해 현금흐름 과세제도나 ACE제도를 도입하면 자기자본에 대한 세금이 축소되므로 주식발행을 통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CBIT는 투자를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차입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되므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신규 기업의 입지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기회비용에 대한 한계세율보다는 총투자에 대한 평균세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다국적기업의 입지 선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수익률이 정상수익률 이내인 기업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독점적 이익을 유발하는 요인을 갖고 있는 기업

의 경우에는 현금흐름 과세나 ACE제도하에서 CBIT의 경우보다 평균 세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금흐름 과세나 ACE하에서는 정상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경제적 지대가 있는 기업이 모든 세부담을 지는 반면 CBIT하에서는 정상수익률보다 수익률이 낮은 기업도 같이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세수입 관점에서 보면 현금흐름 과세와 ACE는 정상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경제적 지대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CBIT는 정상수익에 대해서도 경제적 지대와 동등하게 과세하므로 CBIT의 과세표준이 현금흐름 과세와 ACE보다 넓다. 특히 CBIT는 현행 법인세제하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지급이자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이 현행보다 상당히 넓어진다. 그러나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 시 이자와 배당에 대해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따라 총세수입이 달라질 것이다. 미국의 재무성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개인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 경우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증가하지만 개인소득세가 감소하여 총세수입은 제도 개편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배당의 경우에는 이중과세 조정으로 인하여 총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

현금흐름 과세와 ACE는 현행 제도보다 과세표준을 축소하는 제도인데, 정상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현재 제공되고 있으나 새로운 제도하에서 없어질 조세지원제도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 세수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세액공제 등 자본비용에 대한 세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자본비용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현금흐름 과세제도와 ACE제도 하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초과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초과수익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도 세부담이 달라질 것이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벨기에의 경우 자기자본 수익률이 정상수익률보다 낮은 기업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수익률이 10% 정도인 기업은 법인세 평균세율이 20%를 상회하고, 수익률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세율이 30% 수준이 된다.

현행 법인세과세체계의 복잡성 중 상당부분은 발생주의 과세에 따른 과세시점의 구분, 자산가치의 평가, 감가상각 등에서 비롯된다. 현금흐름

과세는 발생주의 회계 대신 현금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회계가 매우 단순하고 과세시점의 구분, 자산가치의 평가 등 발생주의 회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가 대부분 없어지거나 대폭 축소된다. 투자비용은 즉시 상각되므로 감가상각제도가 필요 없고, 이자와 배당에 대해 세무회계상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과세행정을 단순화하는 중요한 장점이 된다. 이러한 장점은 특히 소규모 기업의 납세협력 비용과 관련 행정비용을 축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기업회계를 하는 대기업의 경우 발생주의 회계에 근거한 과세가 그다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ACE와 CBIT는 기본적으로 현행 법인세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ACE는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수익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고 CBIT는 지급이자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현행 과세체계와 비교하여 납세협력비용이나 행정비용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는다. 다만 CBIT의 경우 이자와 배당을 구분하지 않고 과세하므로 이전에 필수적이었던 지급이자와 다른 자본소득의 구분 회계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관점에서 과세체계 단순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CE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정상수익의 범위 내에 있다고 가정하면 감가상각물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이 사라지고 감가상각에 대해 중립적인 제도가 되므로 감가상각제도를 대폭 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 문헌조사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제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지 않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도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고안하고 개편안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모의실험하는 등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현금흐름 과세나 ACE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도입 성과에 대한 연구결과들도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정리한다.

가. 에스토니아의 현금흐름 과세에 대한 평가 (Devereux and Sørensen(2006))

Devereux and Sørensen(2006)은 에스토니아의 현금흐름 과세와 크로아티아의 ACE제도를 검토하고 그 제도들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였다. 그 중 에스토니아의 현금흐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에스토니아는 2000년에 순배당에 대한 과세인 S-base 현금흐름 과세와 유사한 배당과세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에 대해 Funke(2002)는 토빈의 q 이론에 따른 기업투자 모형을 적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2000년의 에스토니아 법인세 개혁은 장기적으로 에스토니아 기업의 투자를 6.1%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이 세제개혁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실제 세수입 변동을 보면 2000년과 2001년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적용하였던 관대한 규정들로 인해 세수입이 매우 낮았으나 3년차인 2002년부터는 상당한 세수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04년의 3년간은 법인세 수입이 GDP의 1.6% 규모였다. 이는 EU 국가 평균치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2002년 독일의 법인세 수입이 GDP의 1%였음에 비취볼 때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의 배당과세는 EU 국가들로부터 법인세라기보다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EU 지침에 의하면 회원국 간 투자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EU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Lehis et al.(2008)에 의하면 ECJ(European Court of Justice)의 모-자 기업 간 배당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판례인 Burda Case에 비취볼 때 에스토니아의 법인세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라기보다는 법인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여 에스토니아는 아직 배당에 대한 과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나. 크로아티아의 ACE에 대한 비판 (Devereux and Sørensen(2006))

크로아티아의 ACE제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중 첫 번째는 자본집약적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자본비용에 대해서도 초과수익과 동등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기존의 법인세제와 비교해 볼 때 자본비용을 공제하는 ACE제도는 자본집약적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비판은 대규모 공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역시 자본이 많이 투입된 대규모 공기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자본비용으로 공제하므로 기존 법인세제에 비해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 번째 비판은 다른 국가가 조세조약을 체결할 때 ACE제도하의 법인세를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번째 비판은 기업의 자기 자본 규모를 매달 측정하여 정상수익을 계산하므로 제도가 복잡하다는 것인데, 이는 이 국가에서 법인세를 매달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비판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면 대부분 타당한 논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판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긴 하나 자본비용을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간주한다면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ACE제도는 단순히 자본을 많이 투입한 기업보다는 투입한 자본에 비해 수익을 많이 얻은 기업에 대해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이다. 조세조약과 관련된 세 번째 비판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납세협력비용과 관련된 네 번째 비판은 제도 개편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세수입에 대한 비판은 타당한 근거가 있으나 세수입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는 기업의 수익률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이와 같이 ACE제도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크로아티아는 1994년에 도입한 ACE제도를 2001년에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면서 폐지하였다.

다. 브라질의 ACE에 대한 평가(Klemm 2006)

브라질은 지급된 배당에 대해서만 ACE를 적용하고 사내유보에 대해서는 ACE를 적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법인세제를 적용하여 자본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초과수익과 동등하게 과세한다. 즉, ACE를 부분적으로만 시행하는데, 이 경우 기업이 신주발행을 통해 배당을 증대시키는 경우 세부담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Klemm(2006)은 배당액이 정상수익보다 적은 기업을 L-type, 많은 기업을 H-type으로 구분하여 한계 및 평균 유효세율을 계산하였는데, 그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 IV-2>와 같다. ACE를 도입하기 전에는 차입이 자기자본 조달방식에 비해 평균유효세율과 한계유효세율이 매우 낮으며, L-type 기업의 경우에는 한계세율이 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배당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ACE 도입 후 배당이 적은 L-type의 세율 변화를 보면 신주발행과 차입은 동등한 혜택(비과세)을 받아 세부담이 매우 낮아지는 반면 ACE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내유보에 대한 한계세율은 ACE 도입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H-type의 경우에는 사내유보와 신주발행이 세부담 측면에서 차이가 없으며 전형적인 AC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원조달에 따른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브라질의 ACE제도는 배당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ACE제도의 도입이 배당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결과적으로 배당률을 제고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다. 실제로 브라질 기업의 배당률 변화를 보면 고 배당 기업을 의미하는 H-type 기업의 비중이 1995년에 2.5%였는데, 점차 증가하여 ACE제도 도입 후 5년이 지난 2000년에는 15.1%가 되었다. 이는 ACE 도입이 배당률을 증가시켰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배당에 대한 ACE 도입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기업의 재원조달 구조를 자기자본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브라질의 경우 ACE 도입 이후 부채비율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자기자본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CE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브라질의 ACE제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제에 기인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브라질의 ACE제도는 배당된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며, 유보된 소득에는 전통적인 법인세제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자금을 많이 차입하고 동시에 배당률을 올리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증가하여 유보된 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들고, 배당된 소득에 대해서는 ACE제도가 적용되므로 역시 세부담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브라질에서 ACE를 도입한 이후 차입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인 판단된다.

〈표 IV-2〉 브라질의 ACE 도입에 따른 유효세율의 변화

(단위: %)

개인소득세 포함여부	연도	기업형태	한계유효세율(EMTR)			평균유효세율(EATR)		
			유보	신주	차입	유보	신주	차입
무시	1995		45.1	45.1	-5.0	48.9	48.9	60.4
	1996	No ACE	37.6	37.6	-4.9	32.8	32.8	23.3
		L	37.6	-4.9	-4.9	12.7	-1.0	-1.0
		H	0.0	0.0	0.0	24.0	24.0	24.0
포함	1995		26.8	37.8	-5.0	66.7	64.1	71.3
	1996	No ACE	22.0	22.0	-4.9	27.4	27.4	22.5
		L	22.0	-4.9	-4.9	16.0	10.1	10.1
		H	-2.4	-2.4	-2.4	22.9	22.9	22.9

주: 한계유효세율은 한계수익률이 정상수익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으며, 경제적 감가상각률 12.25%, 이자율(정상수익률) 10%, 물가상승률 4%로 가정하고 평균유효세율은 재무제표상 수익률 30%로 가정

자료: Klemm(2006), p. 13

Klemm(2006)은 또한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ACE제도가 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자료 분석을 하였는데, 고정효과 모형에서 제도 개혁 이후를 1로 놓은 가변수에 대한 추정계수는 0.026이고 표준편차가 0.012으로 유의수준 5%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6년의 ACE 도입이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 유럽의 ACE, CBIT 도입에 대한 모의 실험 (Keuschnigg and Dietz (2007) 외)

유럽에서는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ACE나 CBIT를 도입한 경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모의실험 연구가 여러 건 진행되었다. Keuschnigg and Dietz(2007)는 스위스에서 ACE를 도입하는 경우에 대해 CGE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고, Radulescu and Stimmerlmyr(2007)와 Finke and Heckemeyer(2010)에서는 독일에서 ACE를 도입하는 경우와 CBIT를 도입하는 경우의 효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그리고 de Mooij and Devereux (2011)는 유럽에서 ACE나 CBIT를 도입하면서 역내 국가 간 정책 공조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Keuschnigg and Dietz(2007)을 보면, 이 논문은 동태적 CGE 모형을 통해 스위스에서 자본소득과세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ACE를 도입하는 데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표 IV-3〉 참조). 이 모형의 특징을 보면 가계 부문에서는 노동의 공급과 저축의 구성을 내생변수로 하는 중첩 세대구조를 모형화하였으며, 기업은 비법인과 내국인 소유 법인,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자회사로 구분하고 부채비용, 배당률, 투자행태를 내생변수로 하였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ACE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VAT 세율을 1.5%p 인상하여 보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모의실험을 하였는데, 실험결과 ACE의 도입은 스위스 기업의 자본비용을 1.5%p 인하하고 투자를 7.8% 증가시키며, 고용과 GDP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자본과 차입에 대한 과세의 중립성 제고로 인하여 부채비용은 3.8%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소비는 1.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adulescu and Stimmerlmyr(2007)는 IfoMod라는 독일 CGE 모형을 적용하여 Keuschnigg and Dietz(2006)과 유사한 실험을 수행하였다(〈표 IV-3〉 참조). 이 모형에는 두 개의 국가가 있으며, 대표적 개인이 무한정한 기간을 살면서 법인부문이나 비법인부문에서 일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기업의 투자 행태뿐만 아니라 재원조달 행태도 내생변수로서 모형에 포함되었으며, ACE에 따른 세수감소는 VAT 세율을 조정하여 보충하는 것으로

로 가정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ACE의 도입은 세수감소 효과가 상당히 커서 VAT 세율을 5.1% 인상하여야만 세수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자본비용은 평균 6.3% 인하되며 그에 따라 투자는 20% 이상 증가하고 GDP는 장기적으로 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3〉 ACE와 CBIT 도입의 경제적 효과 모의실험 결과
- Keuschnigg and Dietz(2007), Radulescu and Stimmerlmyr(2007)

		Keuschnigg and Dietz (2007)	Radulescu and Stimmerlmyr (2007)	Radulescu and Stimmerlmyr (2007)
		스위스 ACE	독일 ACE	독일 CBIT
법인세율	Level	23.2	38.3	38.3
VAT 세율	△	1.5	5.1	-4.3
자본비용	△	-1.5	n.a.	n.a.
	%△	n.a.	-6.3	9.7
부채비율	△	-3.8	n.a.	n.a.
고용	%△	0.4	1.7	-1.4
자본스톡	%△	7.8	20.5	-10.2
GDP	%△	2.6	9.1	-5.3
민간소비	%△	1.4	4.6	-4.7
후생수준(% 대 GDP)	△	n.a.	0.08	-0.7

자료: de Mooij and Devereux(2011), p. 97에서 재인용

같은 모형을 사용하여 CBIT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세수입이 증대되어 부가가치세율을 4.3% 인하할 수 있다. 이때 자본비용은 거의 10% 상승하고 그에 따라 투자도 그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GDP 감소율도 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후생수준은 GDP의 0.7%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de Mooij and Devereux(2011)는 ACE나 CBIT의 도입에 따른 세수입 변화를 법인세율 변동을 통해서 상쇄하는 경우 즉, 세수중립적으로 제도

를 개편하는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법인세의 왜곡효과를 축소하며 법정 법인세율의 변화폭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ACE와 CBIT를 결합하는 정책조합도 고려하였다. ACE와 CBIT를 결합하는 정책조합은 자기자본에서 발생한 정상수익에 대해 부분적인 공제만 허용하고 이자에 대해서도 과세하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모형은 유럽의 27개국과 미국, 일본을 포함하는 CORTAX 모형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각국에 대표적인 국내 기업과 다국적기업의 본부, 그리고 모형에 포함된 개별 국가들에 본부를 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 28개를 합하여 총 30개의 기업이 있다. 생산요소로는 노동과 자본, 고정요소의 세 가지가 존재하며 노동은 국제이동이 없고 자본은 국제이동이 자유로우므로 수익률이 국제시장에서 결정된다. 고정요소는 각 기업 특유의 요소로서 각 기업의 독점적 이익을 산출하는 요소가 된다. 한계투자는 자본비용에 의해 결정되며, 투자자금의 구성(차입과 사내유보)은 차입금과 자기자본에 대한 세제상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신주발행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de Mooij and Devereux(2011)는 유럽의 23개국에 대해 각 국가가 독립적으로 ACE, CBIT 또는 양자를 결합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는데,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표 IV-4>와 같다. 개별 국가가 독립적으로 ACE를 도입하는 경우 세수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법인세율을 17% 인상하여야 하며, 이때 자본비용은 0.3% 하락한다. 부채비용은 3.3% 감소하고, 투자와 GDP는 각각 3.9%, 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투자와 GDP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후생수준은 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CE는 법인세의 국내기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에 대한 왜곡효과를 축소하는 한편 명목세율을 인상하여 다국적기업을 다른 지역에 투자하거나 이익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유인이 되는데, 전자는 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 후자는 후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CBIT는 ACE와 달리 독립적 제도 도입 시 명목세율을 평균 11% 인하는 효과가 있으나 자본비용은 0.1%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

비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내국인의 국내투자 감소보다 다국적기업의 국내 투자 증가가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차입금에 대한 세부담 증가로 인하여 부채비율은 6.5%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GDP는 1.1% 상승하고, 후생수준도 0.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목법인세율을 변화 없이 유지하면서 세수중립성도 유지하도록 ACE와 CBIT를 결합하려면 CBIT 2/3, ACE 1/3의 비율로 결합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결합하는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보면 자본비용이 0.1% 하락하고 투자는 0.7%, GDP는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생수준은 0.2% 상승하고 부채비율은 5.8% 하락한다.

〈표 IV-4〉 각국이 독립적으로 ACE와 CBIT를 도입하는 경우의 효과 분석¹⁾
- de Mooij and Devereux(2011)

	ACE	CBIT	ACE와 CBIT 결합
법인세율 (%△)	17	-11.0	0.0
부채비율 (%△)	-3.3	-6.5	-5.8
자본비용 (%△)	-0.3	0.1	-0.1
임금 (%)	0.6	1.0	0.3
투자 (%)	3.9	0.4	0.7
고용 (%)	0.2	0.3	0.0
GDP (%)	0.8	1.1	0.3
후생수준 (%△ 대 GDP)	-0.2	0.7	0.2

주: 1) 유럽 23개국 단순평균

자료: de Mooij and Devereux(2011), p. 110

유럽 국가들이 동시에 ACE 또는 CBIT를 도입하는 경우의 모의실험 결과는 〈표 IV-5〉에 정리하였다. 동시에 ACE를 도입하는 경우 자본비용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와 같이 0.3% 하락하지만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축소되어 투자와 고용, GDP,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보다 양호하다. 단독으로 제도를

도입할 때와 비교해서 ACE의 경우 투자 증가율이 3.8%에서 4.8%로 상승하고 고용 증가율은 0.2%에서 0.5%로 상승한다. 그리고 GDP 증가율은 0.8%에서 1.8%로, 후생수준 증가율은 -0.2%에서 0.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CBIT는 독립적으로 도입하는 경우에 명목세율 인하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행태 변화가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모든 유럽 국가가 보조를 맞춰 동시에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고 자본비용의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만 남게 된다. 결과적으로 단독으로 도입하는 경우에 비해 투자 증가율은 0.4%에서 -1.0%로 하락하고, 고용 0.3%에서 -0.3%, GDP 증가율은 1.1%에서 -0.6%, 후생수준 증가율은 0.7%에서 0.0%로 하락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IV-5〉 유럽국가들이 동시에 ACE, CBIT를 도입하는 경우의 효과 분석¹⁾
- de Mooij and Devereux(2011)

	ACE	CBIT
법인세율 (%△)	17.0	-11.0
부채비율 (%△)	-3.3	-6.5
자본비용 (%△)	-0.3	0.1
임금 (%)	1.2	0.0
투자 (%)	4.8	-1.0
고용 (%)	0.5	-0.3
GDP (%)	1.8	-0.6
유럽지역의 후생 (%△ 대 GDP)	0.4	0.0
미국의 후생 (%△ 대 GDP)	0.12	-0.10
일본의 후생 (%△ 대 GDP)	0.02	-0.02

주: 1) 유럽 23개국 단순평균

자료: de Mooij and Devereux(2011), p. 114

Finke and Heckemeyer(2010)는 독일 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ACE, CBIT를 도입하는 경우에 세부담이 기업의 특성별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석하였다(〈표 IV-6〉 참조). ACE를 도입하는 경우 약 절반 정도

의 기업은 세부담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40% 정도의 기업은 세부담이 2.17~7.51p% 줄어 들고, 20% 정도의 기업은 10p% 이상 세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IT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절반 정도의 기업은 세부담에 영향이 거의 없으며, 40% 정도의 기업은 세부담 증가율이 10p% 이내이고 상위 1%의 기업은 세부담 증가율이 49.4p%에 달한다. 이 표에 나타난 기업의 백분을 분포는 각 경우에 대해 기업별 세부담 변화 정도를 계산한 이후 세부담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기업부터 가장 많이 증가하는 기업의 순서로 정렬하여 백분위를 구분한 것이다.

〈표 IV-6〉 독일에서 ACE, CBIT를 도입하는 경우의 세부담 변화 분석
- Finke and Heckemeyer(2010)

(단위: %p)

백분위 구분	명목세율 유지 시 세부담 변화		세수중립성 유지 시 세부담 변화	
	ACE	CBIT	ACE	CBIT
1%	-18.64	0.00	-15.95	-10.18
5%	-10.72	0.00	-9.46	-4.23
10%	-7.51	0.00	-5.80	-3.99
25%	-2.17	0.00	-0.63	-2.92
50%	-0.67	0.66	0.16	-0.53
75%	0.00	3.05	1.10	0.41
90%	0.00	8.57	2.06	4.36
95%	0.00	13.81	2.51	7.91
99%	0.00	49.40	4.58	30.93

자료: Finke and Heckemeyer(2010), pp. 8~12

세수중립적으로 법인세율을 변화시킨다면 ACE의 경우 법인세율을 15%에서 17.8%로 인상해야 하고, CBIT의 경우에는 11.28%로 인하해야 한다. 세수중립적인 법인세율 조정을 함께 고려하면 ACE를 도입하는 경우에 50% 정도의 기업은 세부담이 증가하고 50% 정도의 기업은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의 기업은 세부담이 15.95p% 감소하는

반면 다른 쪽 1%의 기업은 세부담이 4.5p% 증가한다. 중간 50% 정도의 기업은 1% 또는 그보다 적은 수준의 세부담 변화만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CBIT의 경우에는 1%의 기업은 세부담이 10.18p% 감소하고 다른 쪽 1%의 기업 세부담은 30.93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에 있는 상당수의 기업은 거의 세부담이 변하지 않는다.

마. 요약 및 시사점

이상에서 검토한 연구들이 다양한 사례에 대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한 것들이어서 간단하게 요약·정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연구결과 전체를 요약하기보다는 향후 정책수립에 대해 시사점을 주는 특징적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를 정리한다.

첫째, 실증적 연구나 모의실험 결과는 대체로 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현금흐름 과세제도와 ACE제도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투자를 증대시키는 한편 과세표준이 축소되므로 세수입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반면 CBIT는 과세표준이 확대되므로 세율을 변동시키지 않을 경우 자본비용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투자가 감소된다. 차입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재무구조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세수입은 증가한다.

둘째, 대체로 이론적으로 예측한 결과가 나타나지만 각 사례별로 보면 도입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진다. 브라질의 ACE제도는 배당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사내에 유보된 소득에는 전통적인 법인세제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ACE제도가 배당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고 기업들로 하여금 수익을 재투자하는 대신 자금을 차입하여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은 배당하는 방향으로 행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에서는 ACE 도입 이후 기업의 자본조달에서 차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였다.

셋째, 한계세율보다 평균세율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투자를 고

려할 경우 ACE가 투자를 감소시키고 반대로 CBIT가 투자를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ACE를 도입하고 세수입 중립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수익률이 높은 기업의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률이 높은 다국적기업의 국내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이 효과가 한계세율 인하에 따른 국내 기업의 투자 증대 효과를 압도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투자가 감소될 수 있다. 반대로 CBIT의 경우 세수중립적인 제도 도입 시 수익률이 높은 기업의 평균세율이 인하될 수 있으며, 그 효과가 한계세율 변화의 효과를 압도하여 투자가 증가될 수 있다. de Mooij and Devereux(2011)는 국제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유럽의 개별 국가가 독립적으로 ACE와 CBIT를 도입하는 경우와 유럽 국가들이 동시에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개별적으로 ACE를 도입하는 경우 투자가 감소하고 모든 국가가 동시에 ACE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CBIT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도입하면 투자가 증가하고 모든 국가가 동시에 도입하면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우리나라에서 ACE, CBIT 도입 시 세부담 변화 분석

유럽에서는 법인세제를 현금흐름 과세나 ACE, CBIT로 개편하는 경우의 세율 변화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진행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거의 없다. 국내 문헌에서는 단순히 외국에서의 논의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는 형편인데, 본 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는 경우에 세부담이 어떻게 변화되고 세수중립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려면 세율체계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는지, 그때 개별 기업의 세부담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이 장에서의 세율변화 분석을 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장에서 동태적 CGE 모형을 활용하여 제도 개편이 투자 등 각종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 장의 제1절에서는 자료와 분석방법을 설명하고 제2절에서는 현행 법인세제를 ACE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의 세부담 변화를, 제3절에서는 CBIT로 변경하는 경우의 세부담 변화를 분석한다. 본 보고서가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자본소득세제를 개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는 본 장과 다음 장의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현금흐름 과세는 경제적 효과가 ACE와 같으므로 별도로 분석하지 않는다.

1.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장에서는 개별 기업의 자료를 사용하여 조세체계를 ACE나 CBIT로 개편하는 경우에 세부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분석하였다. ACE는 법인의 세전 수익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수익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하고, CBIT는 법인의 세전수익에 이자비용을 더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분석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가 필요하다. 이 자료는 NICE신용평가정보의 데이터베이스인 KISVALUE를 활용하였다. KISVALUE에는 2011년 기준 총 31,392개 기업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2007년부터 2011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이 5년의 기간 동안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이자비용, 연평균자기자본 등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수록된 기업만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기업은 총 7,098개 기업이다. 그리고 ACE를 분석할 때는 자본잠식이 일어나 자기자본이 0보다 적게 된 기업을 제외하여 7,089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을 보면 현행 제도를 적용한 경우의 실효세율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현행 법인세율체계를 적용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으로 나눠서 실효세율을 계산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실효세율은 한계세율이 아닌 평균세율을 말한다. 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은 기업의 수익률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도별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에 포함된 기업의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으로 나눠서 계산한 평균세율을 보면 2007년 25.6%, 2008년 22.7%, 2009년 21.3%, 2010년 18.6%, 2011년 24.7%로 연도별 변화가 크며, 그 변화는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다 설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기업의 연도별 수익률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별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평균치를 산출하여 그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 법인세율 체계는 2010년과 2011년에 적용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2%를 적용하였으며, 지방소득세(이전의 주민세 법인세할)를 포함하여 세부담을 계산하였다.

ACE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았으며, 그 과세표준에 ACE에 대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으로 나눠서 평균실효세율을 산출하였다. 법인세제를 ACE로 개편하는 경우의 시나리오는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제1안은 법인

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정상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에 현행 법인세제와 동일한 2단계 세율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제2안은 현행 세율체계 중 낮은 세율제도를 없애고 ACE 과세표준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ACE제도의 경우 법인의 세전 수익 중 정상수익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였기 때문에 낮은 세율 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게 된다. 제3안은 ACE 도입으로 인한 세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전 수익 중 정상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정상수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ACE제도를 도입하였던 국가들을 보면 상당수의 국가가 정상수입에 대해 비과세하는 저율로 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제4안은 제도 개편 후에도 세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3안의 세율을 비례적으로 조정한 방안이다.

CBIT의 경우에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기업의 이자비용을 더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 이자비용에는 사채이자도 포함된다. CBIT에 대해서는 두 개의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는데, 제1안은 산출된 과세표준에 현행 법인세율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고, 제2안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수중립적으로 세율을 비례적으로 조정한 경우이다.

본 장에서 산출한 제도 변화 시의 세율 변화가 다음 장에서 분석하는 제도 개편의 효과분석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다음 장의 CGE 분석에서 사용되는 산업분류에 맞춰 산업별 실효세율을 계산하였다. 산업분류는 KISVALUE에 나타난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업의 업종 분류를 <표 V-1>에 나타난 바와 같이 CGE 분석 모형에서 사용하는 28개 업종으로 재분류하였다. 표본에 포함된 기업은 28개 업종 중 'S28 공공행정 및 국방'과 'S28 기타'를 제외한 26개 업종에 분포되어 있으며, 도소매업, 화학제품, 일반기계, 전기기계, 건설업, 수송장비 제조업 등의 업종에 비교적 많은 업체들이 있다. 금융업의 경우 당초 표본에는 상당히 많은 기업이 있었으나 자료가 미비한 업체를 제외하다 보니 소수의 업체만 남게 되었다. 한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업종에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기업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하여 자료를 보고한 경우도 있고, 두 개 이상의 업종에 동일한 자료를

보고한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세전수익 등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중복된 상태로 그대로 두었다.

〈표 V-1〉 산업분류 매칭 표

CGE 모형(제Ⅵ장)		표준산업분류(KISVALUE)	
S01	농림수산물	A00000	농업, 임업, 어업
S02	광산물	B00000	광업
S03	음식료품	C10000	식료품제조업
		C11000	음료제조업
		C12000	담배제조업
S04	섬유 및 가죽제품	C13000	섬유제품(의복제외)
		C14000	의복 및 액세서리
		C15000	가죽, 가방, 신발
S05	목재 및 종이제품	C16000	목재, 나무제품(가구 제외)
		C17000	펄프, 종이, 종이제품
		C32000	가구제조업
S06	인쇄 및 복제	C1800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S07	석유 및 석탄제품	C19000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
S08	화학제품	C20000	화학물질, 화학제품(의약품제외)
		C21000	의료용품, 의약품
		C22000	고무, 플라스틱
S09	비금속 광물제품	C2300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S10	제1차 금속제품	C24000	1차 금속제품제조업
S11	금속제품	C25000	금속가공제품(기계 제외)
S12	일반기계	C29000	기타 기계 및 장비
S13	전기 및 전자기기	C2600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등
		C28000	전기장비 제조업
S14	정밀기기	C2700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S15	수송장비	C300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C31000	기타 운송장비

〈표 V-1〉의 계속

CGE 모형(제Ⅵ장)		표준산업분류(KISVALUE)	
S16	기타제조업	C32000	기타 제품 제조업
S17	전기, 가스 및 수도	D0000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00000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등
S18	건설업	F00000	건설업
S19	도소매	G00000	도매 및 소매업
S20	음식점 및 숙박	I00000	숙박 및 음식점업
S21	운수	H00000	운수업
S22	통신 및 방송	J00000	출판, 영상, 통신 및 방송
S23	금융 및 보험	K00000	금융 및 보험업
S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L00000	부동산 및 임대업
		M00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0000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S25	공공행정 및 국방	O00000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S26	교육 및 보건	P00000	교육서비스업
		Q00000	보건 및 사회복지
		R00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S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S00000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S28	기타	T00000	가구내 고용활동 및 기타
		U00000	국제 및 외국기관

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균치를 정리하면 〈표 V-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총세전수익은 87조 3,250억원이고 채무제표 상의 법인세 비용은 18조 1,320억원으로 평균세율은 22.3%가 된다. 이자비용은 16조 5,306억원, 자기자본은 719조 9,240억원이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열에는 자기자본 수익률을 정리하였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수익률은 평균 11.3%이다. 평균수익률은 기업별 수익률을 계산하여 평균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수익 합계를 모든 기업의 자기자본 합계로 나눈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평균세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표 V-2〉 세전수익과 법인세 비용, 이자비용과 자기자본

(단위: 백만원, %)

업종분류	업체수	세전 수익	법인세 비용	이자 비용	자기 자본	자기자본 수익률	평균 세율
S01 농림수산물	30	3,897	977	590	27,521	14.2	25.1
S02 광업	31	3,534	1,324	815	48,650	7.3	37.5
S03 음식료품	246	22,133	5,040	3,169	164,469	13.5	22.8
S04 섬유및가죽제품	261	5,499	1,558	3,723	42,342	13.0	28.3
S05 목재및종이제품	101	7,636	1,743	725	47,868	16.0	22.8
S06 인쇄및복제	29	2,119	676	1,103	19,946	10.6	31.9
S07 석유및석탄제품	25	43,367	5,864	8,135	271,941	15.9	13.5
S08 화학제품	714	16,752	4,164	2,793	198,242	8.5	24.9
S09 비금속광물제품	182	11,795	2,865	2,786	101,707	11.6	24.3
S10 1차금속제품	378	9,538	2,322	6,183	94,753	10.1	24.3
S11 금속제품	208	3,586	776	894	27,442	13.1	21.6
S12 일반기계	594	3,975	1,030	1,287	32,653	12.2	25.9
S13 전기및전자기기	594	5,421	1,575	1,601	53,866	10.1	29.1
S14 정밀기기	107	6,969	1,936	1,774	56,842	12.3	27.8
S15 수송장비	503	9,045	1,803	1,111	40,310	22.4	19.9
S16 기타제조업	37	53,857	15,461	6,607	396,021	13.6	28.7
S17 전기, 가스 및 수도	290	54,783	8,908	7,785	578,013	9.5	16.3
S18 건설업	559	5,509	1,340	730	47,812	11.5	24.3
S19 도소매	928	6,177	1,389	1,116	41,923	14.7	22.5
S20 음식점및숙박	58	16,856	1,158	2,890	198,935	8.5	6.9
S21 운수	341	6,256	1,507	988	42,568	14.7	24.1
S22 통신및방송	384	9,613	2,649	2,717	69,871	13.8	27.6
S23 금융및보험	4	50,782	8,715	3,673	593,854	8.6	17.2
S2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338	11,621	2,833	2,995	95,368	12.2	24.4
S26 교육및보건	116	44,171	8,937	3,435	331,494	13.3	20.2
S27 사회및기타서비스	40	5,452	1,437	643	17,043	32.0	26.4
전체(합계, 단위: 십억원)	7,098	87,325	18,132	16,536	719,924	11.3	22.3

업종별로 자기자본 수익률을 보면 광업과 화학제품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이 10% 이하로 낮은 편이며, 그 외 기업은 대체로 10~15% 수준이다. 제조업 중에서는 수송장비 제조업이 22.4%로 상당히 높으며, 석유·석탄제품 제조업도 15.9%로 높은 편이다. 그 외에 도소매업, 운수업의 수익률도 각각 14.7%로 15%에 유각하는 수준이다. 세부담은 음식·숙박업이 6.9%로 유일하게 10% 미만이며, 그 다음이 석유·석탄제품 제조업 13.5%, 기타 제조업 16.3%, 금융·보험업 17.2%, 수송장비 제조업이 19.9%이고 다른 업종은 모두 20%를 넘는다. 상당수의 업종에서 세율이 법정 최고세율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전수익에 적자기업의 손실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산업별 자기자본 수익률과 평균세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상관계수가 -0.014로 낮고 통계적 유의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ACE를 적용한 경우의 세부담 변화

〈표 V-3〉과 〈표 V-4〉에서는 ACE를 적용한 경우의 업종별 세부담 변화를 정리하였다. ACE에서는 세전수익에서 정상수익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정상수익은 자기자본에 정상수익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본고에서는 정상수익률로 2010년의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4.31%)을 적용하였다. 제일 먼저 산출된 과세표준에 현행 세율체계를 그대로 적용한 경우(ACE 1안)에 기업별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의 업종별 합계를 업종별 세전수익으로 나워서 실효세율을 계산하였다. 세전수익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한 것은 현행 제도를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전체 평균을 보면 현행 제도를 적용한 경우 실효세율이 20.7%가 되었는데, ACE 1안의 실효세율은 15.1%로 현행 제도를 적용한 경우의 72.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CE 1안을 적용하는 경우 정상수익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인해 세수입이 27.2% 감소함을 의미한다.

〈표 V-3〉 현행 제도와 ACE를 적용했을 때의 실효세율

(단위: %)

업종분류	현행제도	ACE 1안	ACE 2안	ACE 3안	ACE 4안
S01 농림수산물 합계	20.0	14.6	15.0	17.2	20.2
S02 광업 합계	20.2	13.1	13.5	14.8	17.3
S03 음식료품 합계	19.7	15.2	15.3	17.0	20.0
S04 섬유 및 가죽제품 합계	20.5	15.3	15.6	17.8	20.9
S05 목재 및 종이제품 합계	19.3	14.5	14.7	16.9	19.8
S06 인쇄 및 복제 합계	22.0	17.5	18.3	20.3	23.9
S07 석유 및 석탄제품 합계	19.5	14.3	14.4	16.7	19.6
S08 화학제품 합계	21.8	15.7	15.8	18.5	21.7
S09 비금속광물제품 합계	19.9	13.6	13.8	16.1	19.0
S10 1차 금속제품 합계	20.8	14.0	14.1	17.0	19.9
S11 금속제품 합계	19.9	14.5	15.0	17.1	20.1
S12 일반기계 합계	21.0	15.5	16.0	18.1	21.2
S13 전기 및 전자기기 합계	24.1	18.6	18.9	21.2	24.9
S14 정밀기기 합계	20.7	14.6	14.8	17.5	20.5
S15 수송장비 합계	20.3	17.2	17.4	18.7	22.0
S16 기타 제조업 합계	19.4	13.5	13.5	15.7	18.5
S17 전기, 가스 및 수도 합계	21.1	14.7	14.8	17.6	20.7
S18 건설업 합계	19.8	13.9	14.2	16.7	19.7
S19 도소매 합계	19.7	15.0	15.3	17.2	20.2
S20 음식점 및 숙박 합계	19.6	10.1	10.2	14.4	16.9
S21 운수 합계	21.5	16.5	16.8	19.0	22.3
S22 통신 및 방송 합계	20.8	15.3	15.5	17.7	20.8
S23 금융 및 보험 합계	19.3	9.6	9.6	14.1	16.5
S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계	19.8	14.2	14.3	16.7	19.6
S26 교육 및 보건 합계	19.5	14.2	14.2	16.6	19.5
S27 사회 및 기타 서비스 계	19.2	16.9	17.2	18.2	21.4
전체	20.7	15.1	15.2	17.6	20.7

주: 1. 현행 제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분 24.2%(2011년 기준)

2. ACE 1안: 현행 세율체계 적용

3. ACE 2안: 낮은 세율을 폐지하고 24.2%의 단일세율 적용

4. ACE 3안: 정상수익 11%, 초과수익 24.2%

5. ACE 4안: ACE 3안을 기준으로 세율조정(낮은 세율 12.923%, 높은 세율 28.431%)

〈표 V-4〉 ACE 적용에 따른 실효세율 변화

(단위: %p)

실효세율	ACE 1안	ACE 2안	ACE 3안	ACE 4안
S01 농림수산물 합계	-5.5	-5.1	-2.8	0.2
S02 광업 합계	-7.1	-6.7	-5.5	-2.9
S03 음식료품 합계	-4.5	-4.4	-2.6	0.4
S04 섬유 및 가죽제품 합계	-5.2	-4.9	-2.6	0.5
S05 목재 및 종이제품 합계	-4.8	-4.6	-2.5	0.5
S06 인쇄 및 복제 합계	-4.5	-3.7	-1.7	1.9
S07 석유 및 석탄제품 합계	-5.1	-5.1	-2.8	0.2
S08 화학제품 합계	-6.1	-6.0	-3.3	-0.1
S09 비금속광물제품 합계	-6.3	-6.2	-3.8	-1.0
S10 1차 금속제품 합계	-6.9	-6.7	-3.8	-0.9
S11 금속제품 합계	-5.4	-5.0	-2.8	0.1
S12 일반기계 합계	-5.5	-5.1	-3.0	0.2
S13 전기 및 전자기기 합계	-5.5	-5.2	-2.8	0.9
S14 정밀기기 합계	-6.1	-5.9	-3.3	-0.2
S15 수송장비 합계	-3.1	-2.9	-1.6	1.7
S16 기타 제조업 합계	-5.9	-5.9	-3.6	-0.9
S17 전기, 가스 및 수도 합계	-6.3	-6.3	-3.5	-0.4
S18 건설업 합계	-6.0	-5.7	-3.1	-0.2
S19 도소매 합계	-4.7	-4.4	-2.5	0.5
S20 음식점 및 숙박 합계	-9.5	-9.5	-5.2	-2.7
S21 운수 합계	-5.0	-4.7	-2.6	0.7
S22 통신 및 방송 합계	-5.5	-5.3	-3.1	0.0
S23 금융 및 보험 합계	-9.8	-9.7	-5.3	-2.8
S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계	-5.7	-5.5	-3.2	-0.2
S26 교육 및 보건 합계	-5.4	-5.3	-2.9	0.0
S27 사회 및 기타 서비스 계	-2.3	-2.0	-0.9	2.3
전체	-5.6	-5.5	-3.1	0.0

- 주: 1. 현행 제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분 24.2%(2011년 기준)
 2. ACE 1안: 현행 세율체계 적용
 3. ACE 2안: 낮은 세율을 폐지하고 24.2%의 단일세율 적용
 4. ACE 3안: 정상수익 11%, 초과수익 24.2%
 5. ACE 4안: ACE 3안을 기준으로 세율조정(낮은 세율 12.923%, 높은 세율 28.431%)

〈표 V-4〉에 나타난 ACE 도입에 따른 세율 변화를 보면 ACE 1안을 도입한 경우 모든 업종에서 실효세율이 인하되며, 그 정도는 평균적으로 5.6%p가 된다. 실효세율이 가장 적게 인하되는 업종은 사회 및 기타 서비스로 2.3%p이고, 가장 많이 인상되는 업종은 금융·보험업으로 9.8%p가 된다. 금융·보험업 외에 광업,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제품, 정밀기기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전설업, 음식·숙박업의 세부담이 비교적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업종은 대체로 수익률이 낮은 업종이다. 한편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과 수송장비 제조업의 경우에 세부담이 가장 적게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두 업종은 수익률이 다른 업종보다 상당히 높은 업종이다. 업종별 자기자본 수익률과 ACE 1안에 따른 세부담의 상관계수는 0.4226으로 나타났다. 앞서 실제 평균세율이 수익률과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ACE는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더 많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CE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세수입 감소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낮은 세율 제도를 폐지하고 초과수익 전체에 대해 24.2%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ACE 2안)의 세율 변화를 검토하였다. 이 경우 전체 기업의 평균실효세율은 15.2%로 낮은 세율이 있는 경우의 15.1%와 0.1%p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세수입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방안으로 ACE 3안에서는 과세에서 제외하였던 정상수익에 대해 11%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정상수익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4.2%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였다. 이 방안은 ACE 2안에 정상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가한 것이다. 이 경우 평균실효세율이 17.6%로 ACE 2안에 비해 2.4%p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업종 간 세율변화 폭의 격차가 상당히 축소되어 일부 예외인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율 인하 폭이 2~5%p 수준이다. 세부담이 예외적으로 많이 인하된 업종은 광업,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으로 5%p 이상 인하되었고, 예외적으로 적게 인하된 업종은 인쇄·복제업, 수송장비 제조업,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으로 세율이 2%p 미만 인하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는 현행 제도를 적용한 경우에 비해 전체적으로 세수입이 14.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ACE제도를 도입하면서 세율을 조정하여 세수입의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방안(ACE 4안)을 검토하였다. 세수 감소가 가장 적은 ACE 3안을 기준으로 세율을 조정할 경우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을 모두 17.5% 인상하면 세수중립성이 달성된다. 낮은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12.931%가 되고 높은 세율은 28.431%가 된다. 이 경우 총세수입에 변동이 없으므로 일부 업종에서는 세부담이 감소하고 다른 업종에서는 세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광업과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은 현행 제도를 적용한 경우에 비해서 실효세부담이 2.7~2.9%p 감소되는 반면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은 2.3%p, 인쇄·복제업은 1.9%p, 수송장비 제조업은 1.7%p 증가된다. 그 외 업종은 -1~0.7%p로 세부담의 변화 폭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3. CBIT를 적용한 경우의 세부담 변화

〈표 V-5〉에서는 CBIT를 적용하는 경우의 세부담 변화를 검토하였다. 세전수익에 이자비용을 더하여 과세표준으로 하고 현행 세율체계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CBIT 1안이고, 세수중립성을 위해 세율을 조정한 것이 CBIT 2안이다.

먼저 CBIT 1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실효세율이 24%로 현행 제도를 적용한 경우에 비해 15.8% 높으며, 이는 세수입이 15.8% 증가됨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행 세제하에서 지급이자 비용의 공제가 법인세 부담을 15.8%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업종별 변화를 보면 섬유·가죽제품 제조업과 1차금속제품 제조업에서 각각 10%p 이상씩 세부담이 증가하며, 인쇄·복제업의 경우 7.4%p 증가한다. 그 외 업종에서는 세부담 변화 폭이 5%p 이내이며, 대부분은 2~4%p 이내이다.

〈표 V-5〉 CBIT를 적용한 경우의 실효세율과 세율 변동

(단위: %, %p)

업종분류	현행 제도	실효세율		세율변동	
		CBIT 1안	CBIT 2안	CBIT 1안	CBIT 2안
S01 농림수산물 합계	20.0	22.6	19.5	2.6	-0.5
S02 광업 합계	20.2	24.4	21.1	4.2	0.9
S03 음식료품 합계	19.7	22.3	19.3	2.7	-0.4
S04 섬유 및 가죽제품 합계	20.5	32.9	28.4	12.5	8.0
S05 목재 및 종이제품 합계	19.3	21.1	18.2	1.8	-1.1
S06 인쇄 및 복제 합계	22.0	29.4	25.4	7.4	3.4
S07 석유 및 석탄제품 합계	19.5	23.0	19.9	3.6	0.4
S08 화학제품 합계	21.8	24.7	21.4	2.9	-0.4
S09 비금속광물제품 합계	19.9	24.0	20.7	4.1	0.8
S10 1차 금속제품 합계	20.8	32.4	28.0	11.6	7.2
S11 금속제품 합계	19.9	24.2	20.9	4.2	0.9
S12 일반기계 합계	21.0	26.2	22.6	5.1	1.6
S13 전기 및 전자기기 합계	24.1	27.0	23.4	3.0	-0.7
S14 정밀기기 합계	20.7	25.3	21.8	4.5	1.1
S15 수송장비 합계	20.3	22.2	19.2	1.9	-1.1
S16 기타 제조업 합계	19.4	21.7	18.8	2.3	-0.6
S17 전기, 가스 및 수도 합계	21.1	22.5	19.4	1.4	-1.7
S18 건설업 합계	19.8	22.1	19.1	2.2	-0.8
S19 도소매 합계	19.7	23.0	19.8	3.3	0.1
S20 음식점 및 숙박 합계	19.6	22.9	19.8	3.3	0.1
S21 운수 합계	21.5	24.3	21.0	2.7	-0.6
S22 통신 및 방송 합계	20.8	25.4	21.9	4.6	1.1
S23 금융 및 보험 합계	19.3	20.7	17.9	1.4	-1.4
S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계	19.8	24.4	21.1	4.6	1.2
S26 교육 및 보건 합계	19.5	20.9	18.0	1.3	-1.5
S27 사회 및 기타 서비스 계	19.2	21.4	18.5	2.2	-0.7
전체	20.7	24.0	20.7	3.3	0.0

주: 1. 현행 제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분 24.2%(2011년 기준)

2. CBIT 1안: 현행 세율체계 적용

3. CBIT 2안: 세수중립성을 위해 세율 조정(낮은 세율 9.5%, 높은 세율 20.9%)

V. 우리나라에서 ACE, CBIT 도입 시 세부담 변화 분석 103

세수중립적으로 세율을 조정한 CBIT 2안에서는 낮은 세율이 11%에서 9.5%로 인하되고 높은 세율은 24.2%에서 20.9%로 인하된다. 이 경우 26개 업종 중 13개 업종에서 세부담이 증가하고 나머지 13개 업종에서는 세부담이 감소한다. 증가하는 쪽을 보면 섬유·가죽제품 제조업과 1차금속제품 제조업에서 각각 8%p, 7.2%p 증가하고 다른 업종에서는 증가폭이 1.1%p 이내이다. 감소하는 쪽을 보면 실효세율이 0.4~1.7%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CBIT 도입시 세부담 변화는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인한 것이므로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에서 세부담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서 세부담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VI. ACE, CBIT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CGE 분석

1. 법인세의 귀착과 일반균형 분석의 필요성¹⁵⁾

법인세를 단순히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법인의 행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법인부문에 귀착되며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는 법인의 자본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라는 관점에서는, 실제 자본을 투자한 개인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가될 것이다.

법인세 개편 중 법인세 인하의 과급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 인하는 자본의 세후수익률인 세후자본가격을 하락시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가격 역시 하락하게 되어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어 노동수요는 감소하는 반면에 자본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른 생산요소의 대체에 의해 자본시장에서 자본의 균형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법인세 부담이 자본가에게 귀착되는데 이를 요소 대체효과(factor substitution effect)라고 한다.

한편 법인부문(corporate sector)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세후이윤을 증가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물 가격을 더 낮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법인부문의 생산물 가격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며 법인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불러올 것이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법인부문의 균형산출량은 증가하고 비법인부문의 균형산출량은 감소하여 경제 전반의 자원이 비법인부문(non-corporate sector)으로부터 법인부문으로 이동하게 되어 자본과 노동 역시 법인부문으로부터 비법인부문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

15) 본 절의 내용은 김명규·김성태(2010)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다. 이 경우 법인부문이 비법인부문보다 자본집약적인 경우 자본시장에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노동시장에서는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자본의 노동에 대한 상대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인세 인하에 의하여 부문별 산출량의 변화에 의한 자본가격의 상승으로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자본의 소유자에게 귀착되는 것을 산출효과(output effect)라고 한다.

궁극적인 법인세의 부담은 법인과 비법인부문의 요소집약도, 상품수요의 가격탄력성, 요소 간 대체탄력성, 자본의 공급탄력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자본의 공급탄력성이 비탄력적인(주로 단기) 경우에는 주주에게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귀착되지만, 완전 탄력적인(주로 장기) 경우에는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귀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에는 법인세 인하의 귀착에 대하여 살펴보자. 결론적으로 법인세 인하 혜택의 귀착은 경제의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Atkinson and Stiglitz(1980)는 Jones(1965)의 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 귀착의 일반균형분석을 더욱 정치화시켜 법인세 귀착은 부문별 생산요소의 집약도, 노동과 자본의 대체탄력성 및 비용에서의 점유율, 최종생산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밝히면서 법인세 부과의 효과를 산출효과와 생산요소 간 대체효과로 구분한 Mieskowski(1967)의 분석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법인세 인하의 귀착분석의 약점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일반균형모형은 수학적으로 비교정태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어 세율이 극미하게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시에 단 하나의 세율 변화의 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었다는 것이다.

최근 법인세 귀착에 대한 학계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기에는 자본이 이동성이 작으므로 법인세가 거의 자본에 귀착되는 반면, 장기에는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우므로 법인세 부담이 노동 등 여타 부문으로 전가된다. Fuchs, Krueger, and Poterba(1997)가 40개 대학교 경제학자들에 대해 법인세 귀착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자본은 법인세 전체 부담의 40%만 직접 부담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Slemrod(1995b)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국 National Tax Association 회원의 50% 이상이 법인세의 부담이 비자본 생산요소에 전가된다고 생각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자본의 부담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 정도가 국가마다 불완전하고 저축의 이자율 탄력성에 대한 추정치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Auerbach and Slemrod (1997)는 자본시장의 개방을 고려하지 않은 Harberger(1962)의 법인세 귀착에 대한 결론은 거의 사문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인세의 귀착 및 전가에 대한 문헌조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결국 법인세 부담이 어떻게 누구에게 귀착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과 실증분석 연구들이 구한 결론은 이론적으로는 어떠한 결과도 가능하며 특정 경제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특히 중요한 요인들로 파악된 것들로는 산업별 노동과 자본 간 생산의 대체탄력성, 요소집약도, 노동자의 자본소유 규모, 소비자의 시점 간 소비의 대체탄력성 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세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소득분배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Harberger(2008)가 제안하였듯이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특정 경제의 환경을 가장 잘 반영한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Dynamic CGE모형 및 자료

가. Dynamic CGE모형의 개요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은 CGE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또는 응용일반균형모형(Applie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으로 불리는데, 이는 일반균형이론을 응용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CGE모형은 일반균형모형으로서 현실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를 모형 안에서 모두 반영한다. 경제 내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 시장을 동시에 균형에 이르게 하는 균형가격벡터를 도출하는 절차가 분석의 핵심이 되는 분석모형이다.

정부의 정책이나 외생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나타난다.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발생한다고 하여도, 현실 경제에 있어서는 그 파급효과가 해당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조세정책은 산업별 생산, 가계의 소비와 저축, 노동공급, 수출입 변화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사중손실(dead weight loss)이 발생하게 된다. CGE모형은 이와 같은 세계개편에 따른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CGE모형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갖는다. 복잡한 경제현상을 모형으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데 비확률적(non-stochastic)모형이라는 점에서 비판도 있다. Kydland and Prescott(1982)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RBC(Real Business Cycle)모형을 개발하였다. CGE모형은 일반적으로 구조와 계산과정이 복잡하여 적용이 힘들고 사전적으로 정의된 많은 모수값들을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사전적으로 추정된 모수(parameter)에 의해서 추정된 파급 효과가 결정되므로 이는 CGE모형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의 대체탄력성에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국외 문헌의 탄력성 값을 인용해 분석하였기 때문에 국내 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나. Dynamic CGE 분석 모형 개요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은 [그림 VI-1]에 정리되어 있다.

기업은 자본 및 노동과 국내 또는 국외의 중간재화를 사용하여 최종재화(Y_i)를 생산한다. 생산된 최종재화는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또는 국외로 수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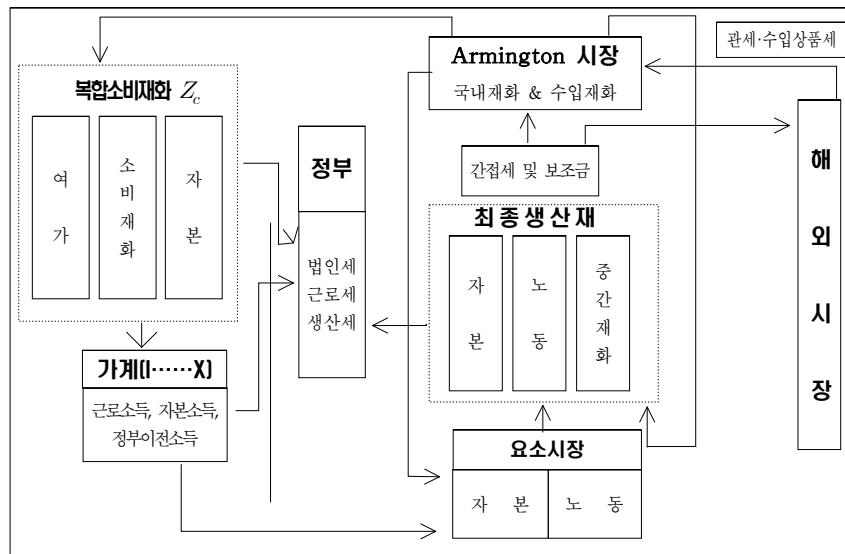
소비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국외에서 수입된 재화가 함께 시장에서 소비된다. 또한, 수입재화의 경우 동일한 품질이라고 하더라도 생산비용이 다르고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재화와 가격차이가 발생한

다. 국내재화와 수입재화가 불완전한 대체관계가 형성되므로 이러한 복합 재화를 아밍톤(Armington)복합재화라고 한다¹⁶⁾. 아밍톤 시장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최종소비자인 가계, 정부, 투자자, 기업에 의해서 모두 소비된다.

정부는 생산단계에서의 최종생산재에 대하여 과세한다. 또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법인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인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거두어 재원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정부소비지출과 저축, 그리고 가계이전지출 등으로 지출한다.

가계는 10분위 소득계층으로 구성된다. 가계 주체는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시제 간(intertemporal) 효용을 극대화한다. 또한, 가계는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소유한 주체로서 요소시장의 공급자가 된다.

[그림 VI-1] 모형에서의 재화 및 생산요소 흐름과 조세체계도



16) 국내재화와 수입재화의 복합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은 Armington 방식과 Heckscher-Ohlin 방식이 있는데, Heckscher-Ohlin 방식은 국내재화와 수입재화가 완전대체가 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비되는 두 재화는 동일한 가격으로 형성된다.

본 연구의 CGE모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구축된다.

첫째, 모형의 규모와 분석대상, 분석기간을 설정한다. 생산재의 수와 소비재의 수,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수, 소득계층의 수를 설정한다.

둘째, 생산요소 및 중간재의 복합관계를 통해 최종생산함수와 효용함수를 결정한다.

셋째, 사회회계행렬(SAM: Social Account Matrix)을 구축한다. SAM은 특정 경제의 주어진 기간에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거래를 보여주는 표이다. SAM은 정상이윤 조건(zero profit condition)과 시장청산조건(market clearance condition), 소득균형 조건(income balance)을 모두 만족시킨다.

넷째, 생산함수와 효용함수의 함수형태가 SAM과 일치하도록 모수 값을 조정한다. 또한 모형이 SAM자료를 재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¹⁷⁾.

다섯째, 모의실험을 통해 정책변화에 따른 파급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소득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용한 분석모형은 김성태·조경엽(2007)이 구축한 CGE모형을 수정·보완한 것이다¹⁸⁾. 부록에 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수록하였다.

1) 분석기간 및 대상

본 연구는 다양한 법인세 개편이 자본축적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세의 정책효과는 정태적 효과와 함께 실행시점 이후에도 파급효과가 지속되는 동태적인 효과도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설정한다. 단, 각 경제주체는 미래에 나타나게 될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완전예측이 가능하며 시제 간 자신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행동원리를

17) 정책 모의실험의 파급효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균형(benchmark)을 추정하는 과정이다.

18) 본 논문의 분석모형은 김성태·조경엽(2007)을 따르고 있다.

따른다고 가정한다. 조세 및 재정정책은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파급효과는 경제 전 분야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산업을 다부문(multi-sector)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소득분배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계를 다소득계층(multi-income group)으로 구성하였다¹⁹⁾.

본 모형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산업, 소비재화, 그리고 소득계층은 <표 VI-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산업은 총 28개 산업으로 분류된다. 소득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10분위 계층으로 구성된다. 소비재화는 「가계동향조사」에 나타나 있는 10개 소비재로 분류된다.

〈표 VI-1〉 분석대상 산업, 소비재화, 소득계층 분류

산업분류				소득계층		소비재화	
S01	농림수산물	S15	수송장비	W01	0~10%	C01	식료품
S02	광산물	S16	기타제조업제품	W02	10~20%	C02	주거비
S03	음식료품	S17	전력, 가스 및 수도	W03	20~30%	C03	광열수도
S04	섬유 및 가죽제품	S18	건설	W04	30~40%	C04	가구집기 가사용품
S05	목재 및 종이제품	S19	도소매	W05	40~50%	C05	피복 및 신발
S06	인쇄 및 복제	S20	음식점 및 숙박	W06	50~60%	C06	보건 의료
S07	석유 및 석탄제품	S21	운수	W07	60~70%	C07	교육
S08	화학제품	S22	통신 및 방송	W08	70~80%	C08	교양 오락
S09	비금속광물제품	S23	금융 및 보험	W09	80~90%	C09	교통 통신
S10	제1차 금속제품	S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W10	90~100%	C10	기타 소비지출
S11	금속제품	S25	공공행정 및 국방				
S12	일반기계	S26	교육 및 보건				
S13	전기 및 전자기기	S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S14	정밀기기	S28	기타				

19) 본 모형은 산업별 파급 효과를 측정하고, 소득계층별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형의 유용성이 있다.

다. 자료

1) 사회회계행렬(SAM)

사회회계행렬(SAM: Social Accounting Matrix)은 특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경제적 거래를 요약한 통계로 정의된다. 계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모형의 규모와 생산함수 형태를 연구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입력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모형에 입력된 데이터는 [그림 VI-2]와 같이 사회회계행렬(SAM)로 요약할 수 있다. SAM은 특정 기간에 한 국가의 경제적 거래를 요약한 테이블로서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형태로 구성된다. 정사각형 SAM에서 행(가로)을 따라 나타난 수치는 해당 부문의 수입을 의미하며, 열(세로)을 따라 나타난 수치는 지출을 의미한다²⁰⁾.

경제 전체로 볼 때 소득과 지출이 같다는 거시순환 원칙에 따라서 행(소득)과 열(지출)의 합은 항상 일치한다. SAM 테이블은 일반균형모형이 요구하는 세 가지 균형조건(정상이윤, 시장청산, 소득균형)을 충족시킨다.

입력 데이터의 차원(dimension)에 대하여 살펴보자. [그림 VI-2]의 SAM 테이블 내에 표시한 수치는 입력 데이터의 차원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국내재화는 총 28개 산업의 제품으로 구성된다. 28개 제품은 각 산업의 중간재화로, 가계의 소비재화로, 정부의 소비재화와 투자재화로 판매되거나 수출된다. 그리고 28개의 재화는 10개의 소비재화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고 이는 다시 10개의 소득계층으로 판매된다. 따라서 소비재화로 표시된 세부 테이블의 차원은 (28×10×10)이 된다.

20) 직사각형 테이블은 전통적인 SAM 테이블과 구분하기 위해 MCM (micro-consistency matrix)라 한다. 전통적인 정사각형 SAM 테이블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공급 또는 수입은 양(+)의 수로 나타나고 수요와 지출은 음(-)의 수로 나타난다. 따라서 행과 열의 합은 항상 영(zero)이 된다.

모형의 입력 자료는 201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이전 5년(2006~2010년) 기간 동안의 『산업연관표』, 『가계동향조사』, 『국세통계연보』, 『기업경영분석』, 『한국통계연감』, 『지방세정연감』, 기타 기존 연구결과 등 다양한 자료로부터 수집되었다. 그리고 『가계동향조사』의 미시자료로부터 소득계층별 소득, 소비 비중을 구하였다. 전국 근로자와 비근로자를 모두 포함한 평균 가구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위에서 구한 미시데이터를 『산업연관표』, 『국세통계연보』, 『한국통계연감』, 『지방세정연감』으로부터 구한 거시 데이터에 적용함으로써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림 VI-2] 사회회계행렬(SAM) 구성도

	국내재화	수입재화	소비재화	최종소비			부가가치	세금	수출	수입	합계
				가계	정부	투자					
국내재화	(1) 28×28		(7) 28×10×10		(12) 28×1	(15) 28×1			(20) 28×1		
수입재화	(2) 28×28		(8) 28×10×10		(13) 28×1	(16) 28×1					
소비재화				(9) 10×10							
최종 소비					(14) 10×1		(18) 10×2				
						(17) 1×1		(19) 1×6			
				(10) 1×10						(21) 1×1	
부가가치	(3) 2×28			(11) 2×10							
세금	(4) 4×28	(5) 2×28									
수출									(22) 1×1		
수입		(6) 1×28									
합계											

2) 아밍톤 재화 및 소비복합재화

아밍톤 복합재화는 국내재화와 수입재화의 불완전 대체관계로 형성된다. 아밍톤 복합재화는 산업의 중간재화, 가계의 소비재화, 정부의 지출, 투자재로 분배된다. 아밍톤 복합재화는 크게 국내재화와 수입재화로 구분

된다([그림 VI-2] 참조). 이는 다시 산업에서 사용되는 중간재화와 가계, 정부 및 투자의 최종 소비재로 구분된다. [그림 VI-2]의 SAM 테이블의 (1)과 (2)로 표시된 (28×28) 행렬은 산업에서 사용하는 아밍톤 중간재화를 나타낸다. 소득계층별 소비복합재화는 총민간소비지출 중 재화별 아밍톤 복잡재화²¹⁾로 (28×10×10) 행렬로 구성된다. 이는 [그림 VI-2]의 (7)과 (8)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각 10분위 소득계층은 28개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10개 소비재화에 대한 지출을 의미한다.

라. 모수(parameter)

보정(calibration)은 함수형태로 표현된 모형 경제와 현실 경제가 일치하도록 필요한 모수 값을 조정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본 모형에서는 김성태·이상돈·조경엽·임병인(2011), 손양훈·신동천(1997), 조경엽(2006), 김성태·이인실·안중범·이상돈(2003), Bernstein et al.(1999), Goulder and Schneider(1999) 등 가급적 기존의 국내외 문헌에서 사용된 모수 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산기법인 MPSGE는 기준연도의 실질 데이터와 주어진 대체탄력성을 가지고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가중치 모수(share parameter)를 추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값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지 않고 탄력성 값만을 제시한다.

우선 수출재화와 국내소비재화 간의 고정전환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은 3.0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는 손양훈·신동천(1997)이 사용한 부문별 불변전환탄력성 값 2~4의 평균값이다. 자본·노동 복합재화와 중간재화의 대체탄력성은 Fullerton and Rogers(1993)와 김성태·이인실·안중범·이상돈(2003)과 마찬가지로 0으로 가정하였다. 수입재화와 국내재화의 불완전 대체를 나타내는 아밍톤 대체탄력성은 불변전환탄력성과 마찬가지로 손양훈·신동천(1997)이 사용한 부문별 아밍톤 대체탄력성 값 2~4의 값을 사용하였다. 가계부문의 시제 간 대체탄력성

21) 총민간소비재화는 [그림 VI-4]의 (7)과 (8)에 해당한다.

($1/\theta$)은 Goulder and Schneider(1999), Bernstein et al.(1999)과 같이 0.5로 가정하였다²²⁾.

복합소비재와 여가의 대체탄력성은 Rasmussen and Rutherford(2001)에 제시한 0.8을 사용하였다. 그 밖에 소비의 복합재화 간 대체탄력성은 생산부문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이 밖에 외생변수로 결정되는 균형이자율은 잠재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0.06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 이자율은 $(\frac{1}{\beta}-1)$ 과 동일하기 때문에 β 값은 0.943이 된다.

〈표 VI-2〉 주요 파라미터 값 및 출처

분류	출처	값
수출재화와 국내소비재화 간의 불변전환 탄력성	손양훈·신동천(1997)	3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	김성태·이상돈·조경엽·임병인(2011)	산업별 탄력성
자본노동 복합재화와 중간재화와의 대체탄력성	김성태·이인실·안종범·이상돈(2003)	0
수입재화와 국내재화의 아밍톤 대체탄력성	손양훈·신동천(1997)	3
가계부문의 시점 간 대체탄력성($1/\theta$)	Goulder and Schneider(1999), Bernstein et al.(1999)	0.5
복합소비재와 여가의 대체탄력성	Rasmussen and Rutherford(2001)	0.8
균형이자율		0.06
자본에 대한 연간 감가상각률		0.04

22) 분석결과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생적으로 추정해야 하는 모수 값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28개 산업의 생산의 대체탄력성은 노동과 자본 간 대체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모수 값으로 김성태·이상돈·조경엽·임병인(2011) 실증분석 연구 결과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표 VI-3>과 같다.

<표 VI-3> 28개 산업별 생산의 대체탄력성(σ)

산업	생산의 대체탄력성	산업	생산의 대체탄력성
1	0.389	15	0.555
2	0.428	16	0.441
3	0.442	17	0.479
4	0.583	18	0.608
5	0.585	19	0.766
6	0.318	20	0.377
7	0.946	21	0.734
8	0.411	22	0.670
9	0.610	23	0.579
10	0.845	24	0.608
11	0.515	25	0.450
12	0.387	26	0.520
13	0.459	27	0.311
14	0.351	28	0.552

주: $\sigma = -\frac{d \log L/K}{d \log w/r} = -\frac{\Delta(L/K)/(L/K)}{\Delta(w/r)/(w/r)} = -\frac{(L/K) \% \text{변화율}}{(w/r) \% \text{변화율}}$

자료: 김성태·이상돈·조경엽·임병인(2011)

3. 법인세 개편방안

가. 모의실험 방법

본 장에서는 법인세 개편방안을 설정하고,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

한 모의실험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분석모형은 김명규·김성태 (2010)의 법인세 인하 파급효과 모형을 토대로 한다. 법인세가 개편되는 경우 각각의 방안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거시경제적인 측면과 후생 및 소득분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분석하게 되며, 분석 기간은 2010년 기준 자료 시점부터 2030년까지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법인세 개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지표는 거시경제 관련 지표와 사회후생의 변화를 측정하는 효율성 지표 및 소득분배의 변화를 측정하는 형평성 지표로 구분된다. 첫째, 거시경제 지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자와 거시경제의 자본스톡이 될 것이다. 그 외에 GDP, 소비, 정부지출, 무역수지, 노동수요, 물가, 실질임금의 변화도 지표에 포함된다.

둘째, 우리 사회의 경제적 파이를 나타내는 사회후생의 변화를 측정하는 효율성 지표로는 후생의 동등변화(Equivalent Variation: EV)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후생의 동등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V_w = (U_w^N - U_w^0)P_{u_w}^0$$

여기서 U_w^N 는 세제개편 후의 소득계층별 효용수준을 나타내며, U_w^0 와 $P_{u_w}^0$ 는 기준균형에서의 효용수준과 효용의 가격을 나타낸다. 따라서 후생의 동등변화는 법인세 개편 이전의 후생수준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액을 의미한다.

한편 형평성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는 지니계수, 십분위 배분율, 로렌즈 곡선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니계수와 십분위 배분율로 평가하게 될 것이며,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G = \frac{\Delta}{2\mu}$$

$$\Delta = \frac{1}{n(n-1)} \sum_{i=1}^n \sum_{j=1}^n |y_i - y_j|$$

여기서 G 는 지니계수를 의미하며, μ 는 평균소득, Δ 는 전체 인구의 평균적인 소득격차를 나타낸다. y_i 는 i 번째 사람의 소득, n 은 전체 인구를 나타낸다. 지니계수는 계수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을 나타낸다.

본 모의실험은 중·장기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법인세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모의실험 구성

법인세 개편방안에 대한 모의실험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균형은 기간별 예산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지만, 분석기간 전체의 예산균형이 충족된다. 둘째, 국제수지는 수입과 수출이 매기 동일하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완전자본시장을 가정하여, 자본의 이동으로 무역수지의 균형이 달성된다고 가정한다. 국제수지의 균형달성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방법도 있지만 자본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 개편으로 인한 파급 효과를 6가지 모의실험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앞서 설정한 가정하에 2010년을 법인세 개편 기준연도로 설정하여 2030년까지 분석하게 될 것이다.

법인세 개편에 관한 모의실험은 <표 VI-4>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다. 이 안들은 앞서 제V장에서 제시된 안들과 동일하다.

현행 제도는 2010년 법정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가정하는데 과표 2억원까지는 11%의 세율을, 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4.2%의 세율을 적용한다. 단지 실제 법인세비용과 미시자료를 이용한 법인세 납부액을 일치시키기 위한 실효세율을 1차로 조정하였다. 그 결과 산업 평균세율은 2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4〉 법인세 개편 모의실험

개요	방안	과세 표준	세율 구조
CBIT (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 법인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므로 현행 세제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자비용을 법인 세 과세대상에 포함시 키자는 것임.	CBIT1	과세표준에 이자비용 포함: (세전수익+이자비용)이 과세표준이 됨	현행 세율 적용
	CBIT2	과세표준에 이자비용 포함: (세전수익+이자비용)이 과세표준이 됨	세수중립적 세제개편 ⇒ 세율을 비례적으로 인하
ACE (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현행 법인세제 하에서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 비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듯이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해 서도 과세대상에서 제 외하자는 것	ACE1	(세전수익-자본비용)이 과세표준이 됨. 단 자본비용=자기자본 × 무위험자산 수익률	현행 세율 적용
	ACE2	(세전수익-자본비용)이 과세표준이 됨. 단 자본비용=자기자본 × 무위험자산 수익률	ACE 과세표준이 0보 다 큰 기업에 대해 현 행 법인세의 높은 세 율을 단일세율로 적용
	ACE3	세전수익 중 자본비용 이 과세표준이 됨. 단 자본비용=자기자본 × 무위험자산 수익률	차등세율 적용: · 세전수익 중 자본비 용에 해당하는 수익 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11%) 적용 · 자본비용을 초과하 는 부분(세전수익- 자본비용)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24.2%) 적 용
	ACE4	(세전수익-자본비용)이 과세표준이 됨. 단 자본비용=자기자본 × 무위험자산 수익률	세수중립적 세제개편 ⇒ ACE3을 기준으로 세율을 비례적으로 인상

주: 현행 세율은 2010년 세율체계를 말하며, 과표 2억원까지 11%, 2억원 초과 시 24.2%임.

1) CBIT(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

CBIT의 기본 아이디어는 포괄적 소득세(Comprehensive Income Tax)와 같이 법인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므로 현행 세제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자비용을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과세표준에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세전수익+이자비용)이 과세표준이 된다. CBIT 방안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제1 CBIT 방안은 CBIT 과세표준(세전수익+이자비용)에 현행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CBIT 과세표준이 0보다 큰 기업에 현행 법정세율과 조정률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세수는 증대하게 될 것이다.

제2 CBIT 방안은 세수중립적(revenue neutral)인 세제개편 방안이다. 세수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율이 조정될 것이다.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이 비례적으로 조정될 것이다.

2) ACE(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ACE의 기본 아이디어는 현행 법인세제하에서 타인자본에 대한 이자비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듯이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즉, 자본비용(=자기자본×무위험자산 수익률(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과표에서 제외하거나 저율로 과세하게 될 것이다. ACE는 네 가지 방안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제1 ACE 방안(ACE1)은 ACE 과세표준(세전수익-자본비용)에 현행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즉, ACE 과세표준(세전수익-자본비용)이 0보다 큰 기업에 대해 법정세율(11%, 24.2%)을 적용한다. 당연히 ACE1 방안은 유효세율을 인하시키게 될 것이다.

제2 ACE 방안(ACE2)은 ACE 과세표준(세전수익-자본비용)에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즉, ACE 과세표준(세전수익-자본비용)이 0보다 큰 기업에 대해 현행 법인세의 높은 세율을 비례세율로 적용하므로

ACE1안보다는 유효세율이 약간 높게 될 것이다.

제3 ACE 방안(ACE3)은 ACE 과세표준(세전수익-자본비용)에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즉, 세전수익 중 자본비용에 해당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11%)을 적용하고,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세전수익-자본비용)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24.2%)을 적용한다. ACE3안은 ACE1이나 ACE2보다 높은 유효세율을 갖게 될 것이다.

제4 ACE 방안(ACE4)은 세수 중립적 방안으로 개편 후 세수가 현행 세수와 같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ACE 3안(차등세율)을 기준으로 세수중립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산업평균 법인세 유효세율은 현행 유효세율과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다.

3) 연구 모형과 적합하게 세율 scale 조정

앞서 실증분석을 통한 법인세율로 본 모형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가 크게 증가하여, 2010년 총법인세 징수규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율 수준을 조절하였다.

- 2010년 법인세징수액 37.2조원 / 현행세율 기준 97.7조원

최종단계에서 미시자료를 이용한 법인세 유효세율과 CGE모형의 법인세 유효세율을 조정하였다. 앞서 제 V장에서 도출한 미시자료를 이용한 법인세 유효세율($\tau_{i, MIC}$) 공식은 다음과 같다.

$$\tau_{i, MIC} = \frac{(\text{산업 } i \text{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지방세 포함)비용 합계})}{(\text{산업 } i \text{ 기업(적자기업 포함)의 세전수익 합계})}$$

반면에 CGE 모형에서 산업 i 의 법인세 유효세율($\tau_{i, CGE}$) 공식은 다음과 같다.

$$\tau_{i, CGE} = \frac{(\text{산업 } i \text{ 법인세 합계})}{(\text{산업 } i \text{ 투입 자본 합계})}$$

최종 단계에서 조정률을 적용하여 CGE모형에서 구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다음 <표 VI-5>와 같다.

<표 VI-5> 법인세 실효세율

(단위: %)

산업	BAU (기준균형)	CBIT1	CBIT2	ACE1	ACE2	ACE3	ACE4
S01	8.26	9.42	8.03	5.88	6.05	7.01	8.34
S02	8.35	10.27	8.75	5.25	5.45	5.96	7.08
S03	8.11	9.30	7.94	6.15	6.19	6.95	8.26
S04	8.46	14.35	12.16	6.17	6.31	7.29	8.67
S05	7.96	8.75	7.47	5.86	5.96	6.87	8.18
S06	9.16	12.61	10.71	7.16	7.48	8.39	10.01
S07	8.02	9.63	8.21	5.78	5.80	6.81	8.09
S08	9.06	10.41	8.86	6.37	6.42	7.57	9.01
S09	8.22	10.08	8.59	5.48	5.54	6.55	7.79
S10	8.62	14.08	11.94	5.62	5.69	6.92	8.23
S11	8.22	10.15	8.65	5.86	6.05	6.97	8.29
S12	8.72	11.09	9.44	6.30	6.48	7.40	8.81
S13	10.10	11.49	9.77	7.61	7.75	8.81	10.51
S14	8.57	10.65	9.07	5.88	5.98	7.13	8.48
S15	8.38	9.23	7.88	7.02	7.10	7.69	9.15
S16	7.98	9.03	7.71	5.41	5.42	6.38	7.58
S17	8.74	9.38	8.00	5.95	5.97	7.21	8.57
S18	8.18	9.18	7.83	5.58	5.71	6.81	8.10
S19	8.12	9.60	8.18	6.08	6.20	7.02	8.35
S20	8.09	9.56	8.15	4.00	4.03	5.82	6.90
S21	8.95	10.19	8.68	6.72	6.84	7.80	9.29
S22	8.62	10.72	9.13	6.20	6.27	7.24	8.62
S23	7.96	8.59	7.33	3.79	3.80	5.66	6.72
S24	8.18	10.26	8.74	5.72	5.78	6.79	8.08
S2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S26	8.03	8.64	7.37	5.70	5.72	6.76	8.03
S27	7.89	8.87	7.57	6.90	7.03	7.48	8.90
S2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전체	8.56	10.05	8.56	6.09	6.15	7.20	8.56

자료: 저자추계

4. 법인세 개편방안 모의실험 결과

법인세 개편의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및 세수효과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가. 법인세 개편이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

1) 법인세 개편이 투자 및 자본축적에 미치는 파급효과

법인세 개편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요한 이유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켜 총수요를 진작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반대 방향으로 투자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법인세 개편이 투자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법인세의 세율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가 인하되면 세후자본수익률이 증가되어 기업은 투자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여섯 가지 법인세제 개편방안이 투자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한 [그림 VI-3]과 <표 VI-6>은 투자의 기준균형 대비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예로서 CBIT1 방안과 같이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의 경우 2010년 투자는 기준균형 대비 1.91% 감소하고 2015년 투자는 기준균형 대비 1.81%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법인세 개편방안이 투자에 미치는 파급효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첫째, CBIT는 투자를 감소시키는 반면, ACE 대안들은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ACE 방안 중에서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가장 크게 인하하는 ACE1 방안에 의한 투자증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ACE2 방안의 투자증가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나 투자증가 효과는 법인세 실효세율의 인하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CBIT 방안 중 세수중립적인 방안인 CBIT2와 ACE 방안 중 세수

중립적인 방안인 ACE4의 경우 산업평균 유효세율은 현행 산업평균 법인세 유효세율과 같아 전반적으로 투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역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CBIT2는 미미하나마 투자를 감소시키는 반면, ACE4는 미미하나마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6〉 법인세 개편이 투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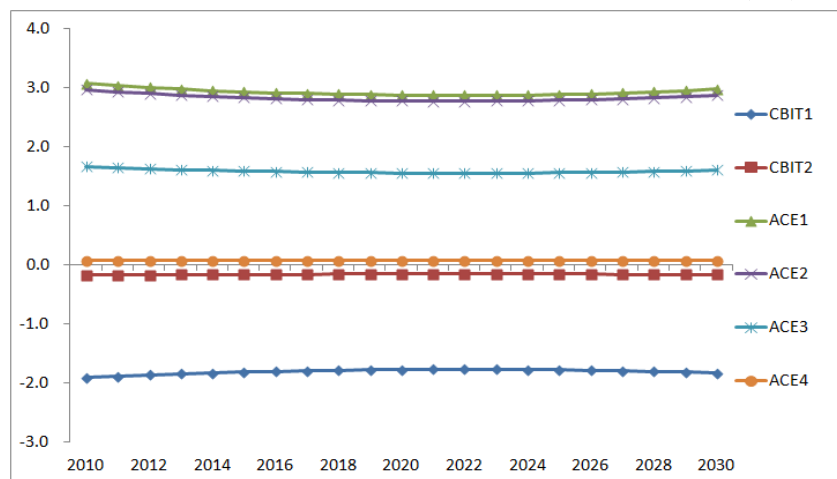
(단위 : %)

	CBIT1	CBIT2	ACE1	ACE2	ACE3	ACE4
2010	-1.91	-0.17	3.07	2.96	1.66	0.07
2015	-1.81	-0.16	2.93	2.83	1.59	0.07
2020	-1.77	-0.16	2.87	2.78	1.55	0.07
2025	-1.78	-0.16	2.88	2.79	1.56	0.07
2030	-1.83	-0.17	2.97	2.87	1.61	0.07

자료: 저자 추계

[그림 VI-3] 법인세 개편이 투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단위: %)



자료: 저자 추계

법인세 개편이 자본스톡에 미치는 파급경로를 법인세 인하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법인세가 인하되면 자본의 노동에 대한 상대가격이 하락하여 요소대체효과(factor substitution effect)에 의하여 자본시장에서 자본의 공급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 자연히 투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법인세 인하의 산출효과(output effect) 역시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므로 투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경제 내 투자가 증가하게 되어 자본스톡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법인세 개편이 자본스톡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VI-7>과 [그림 VI-4]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다. 첫째, 경제의 자본축적은 투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법인세 개편에 의한 자본스톡의 변화는 법인세 개편에 의한 투자의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인 CBIT1과 CBIT2 방안은 자본축적을 감소시키는 반면,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인 ACE1, ACE2, ACE3, ACE4 방안은 자본축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CE 방안 중에서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가장 크게 인하하는 ACE1 방안에 의한 자본스톡 증가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ACE2 방안의 자본스톡 증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CBIT 방안 중 세수중립적인 방안인 CBIT2와 ACE 방안 중 세수중립적인 방안인 ACE4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본스톡에 미치는 파급효과 역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CBIT2는 미미하나마 자본스톡을 감소시키는 반면, ACE4는 미미하나마 자본스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7> 법인세 개편이 자본스톡에 미치는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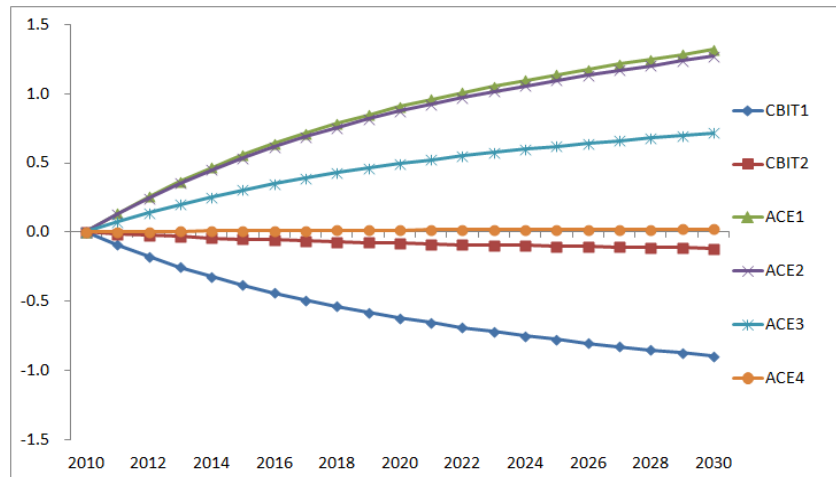
(단위: %)

	CBIT1	CBIT2	ACE1	ACE2	ACE3	ACE4
2010	0.00	0.00	0.00	0.00	0.00	0.00
2015	-0.38	-0.05	0.56	0.54	0.30	0.01
2020	-0.62	-0.08	0.91	0.87	0.49	0.01
2025	-0.78	-0.10	1.14	1.10	0.62	0.02
2030	-0.90	-0.12	1.32	1.27	0.72	0.02

자료: 저자 추계

[그림 VI-4] 법인세 개편이 자본스톡에 미치는 파급효과

(단위: %)



자료: 저자 추계

2) 법인세 개편이 GDP에 미치는 파급효과

가) 법인세 개편이 GDP에 미치는 파급효과

법인세 개편이 GDP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GDP가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무역수지($X-M$)의 합계이므로 법인세 개편이 GDP의 개별 요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하여야 될 것이다.

$$GDP = C + I + G + (X - M)$$

이론적으로 법인세 인하는 소비를 증가시키고, 투자를 증가시키는 반면 법인세 수입의 감소로 인해 정부지출은 감소될 것이다. 한편 법인세 인하여 무역수지는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보면 법인세 인하여 GDP는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 가지 법인세제 개편방안이 GDP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

과 전반적으로 법인세 유효세율이 인상되는 CBIT 방안의 경우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법인세 유효세율이 인하되는 ACE 방안의 경우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개편이 GDP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 개편방안 중 유효세율을 가장 크게 낮추는 ACE1이 장기적으로 GDP를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ACE2가 GDP를 크게 증가시키고 ACE3과 ACE4가 그 뒤를 잇고 있다. ACE1의 경우 2010년 GDP는 기준균형 대비 0.34% 증가시키다가 점차 GDP 증가폭이 증가하여 2030년 GDP는 기준균형 대비 0.9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BIT의 경우 법인세 유효세율을 인상시켜 장기적으로 GD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인세 유효세율을 가장 크게 인상시키는 CBIT1이 GDP를 가장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인세 인하의 경우 GDP 증대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8〉 법인세 개편이 GDP에 미치는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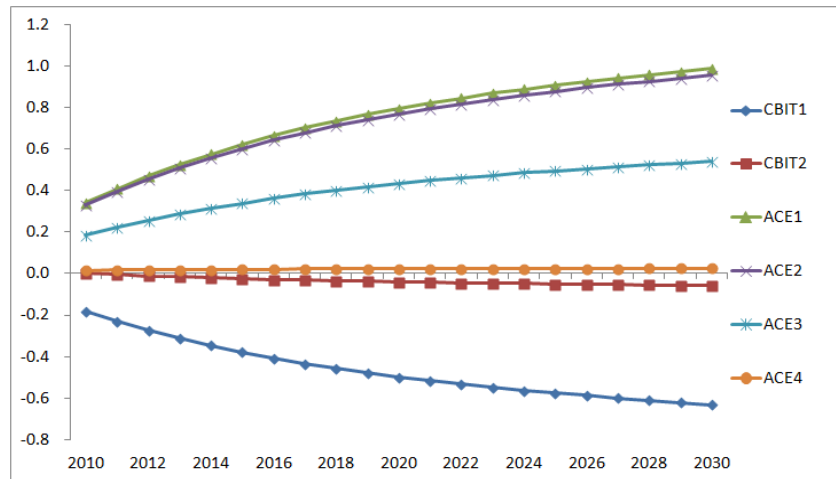
(단위: %)

	CBIT1	CBIT2	ACE1	ACE2	ACE3	ACE4
2010	-0.18	0.00	0.34	0.33	0.18	0.02
2015	-0.38	-0.03	0.62	0.60	0.34	0.02
2020	-0.50	-0.04	0.79	0.77	0.43	0.02
2025	-0.58	-0.05	0.91	0.88	0.49	0.02
2030	-0.63	-0.06	0.99	0.96	0.54	0.03

자료: 저자 추계

[그림 VI-5] 법인세 개편이 GDP에 미치는 파급효과

(단위: %)



자료: 저자 추계

나) 법인세 개편이 소비에 미치는 파급효과

법인세 개편이 소비에 미치는 파급 경로를 법인세 인하의 경우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론적으로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을 감소시켜 생산재 가격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생산재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을 가져와 생산자물가를 하락시키며, 뒤이어 소비자물가를 하락시키게 될 것이다. 소비자물가의 하락과 함께 실질소득의 증가는 가계의 소비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법인세 개편이 소비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결과 첫째, 법인세 유효세율을 인하시킬수록 소비자 가격을 하락시켜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ACE1이 소비를 가장 크게 증가시키고, 뒤를 이어 ACE2, ACE3이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BIT 방안은 모두 법인세 유효세율을 인상시켜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소비의 감소 규모는 유효세율의 인상폭이 클수록 더 커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법인세 개편에 의한 소비의 변화는 초기부터 발생하여 그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9〉 법인세 개편이 소비에 미치는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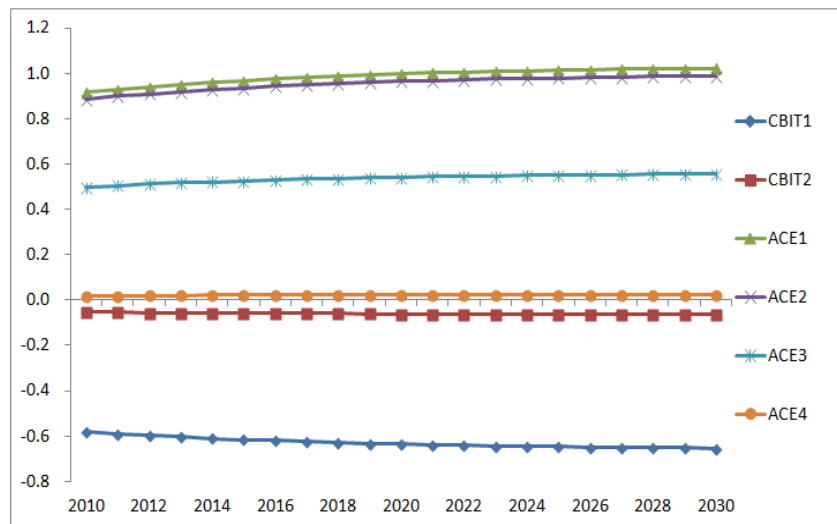
(단위: %)

	CBIT1	CBIT2	ACE1	ACE2	ACE3	ACE4
2010	-0.58	-0.05	0.92	0.89	0.50	0.02
2015	-0.62	-0.06	0.97	0.93	0.53	0.02
2020	-0.64	-0.06	1.00	0.96	0.54	0.02
2025	-0.65	-0.06	1.01	0.98	0.55	0.02
2030	-0.65	-0.06	1.02	0.99	0.56	0.02

자료: 저자 추계

[그림 VI-6] 법인세 개편이 소비에 미치는 파급효과

(단위: %)



자료: 저자 추계

다) 법인세 개편이 정부지출에 미치는 파급효과

법인세 개편이 정부지출에 미치는 파급경로는 다음과 같다. 본 모형에서는 정부의 재정이 항상 균형을 이루도록 균형예산이 제약조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법인세 인하는 세원이 그대로 있는 경우 세수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단,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증가하여 법인의 이윤이 증가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세원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가 재정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법인세 인하율과 세원인 기업의 이윤 증가율의 상대적 크기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균형예산조건에 의해 정부지출은 세수의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법인세제 개편이 정부지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모의실험 결과 모든 법인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법인세 유효세율 인하가 세수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세원의 증가를 통한 양(+)의 효과보다 커 법인세 인하에 의해 세수가 감소하고 그 결과 정부지출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0〉과 [그림 VI-7]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세 유효세율을 가장 크게 인하시키는 방안인 ACE1과 ACE2가 세수와 정부지출을 가장 크게 감소시키고, 다음으로 ACE3이 정부지출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법인세 유효세율을 인상시키는 방안인 CBIT1과 CBIT2는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VI-10〉 법인세 개편이 정부지출에 미치는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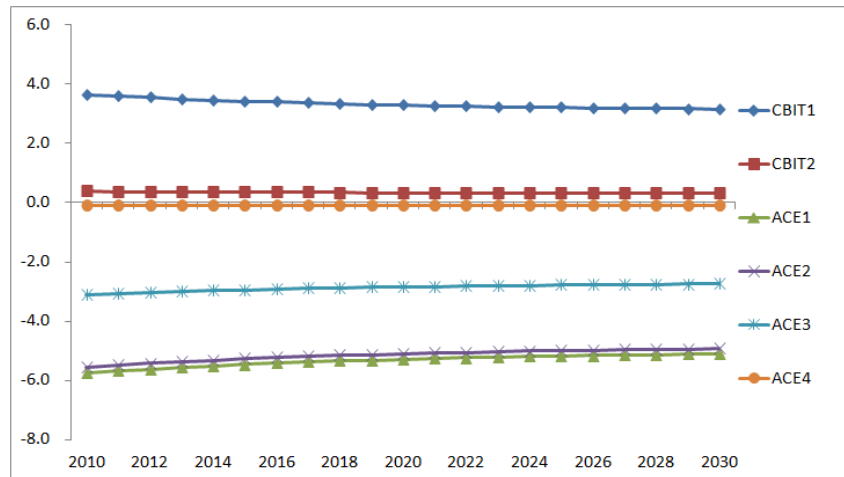
(단위: %)

	CBIT1	CBIT2	ACE1	ACE2	ACE3	ACE4
2010	3.65	0.38	-5.76	-5.56	-3.11	-0.10
2015	3.43	0.35	-5.47	-5.28	-2.95	-0.09
2020	3.29	0.34	-5.29	-5.10	-2.85	-0.09
2025	3.21	0.32	-5.18	-5.00	-2.79	-0.09
2030	3.16	0.32	-5.11	-4.93	-2.75	-0.09

자료: 저자 추계

[그림 VI-7] 법인세 개편이 정부지출에 미치는 파급효과

(단위: %)



자료: 저자 추계

라) 법인세 개편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파급효과

법인세 개편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파급경로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 개편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이유는 GDP의 한 요소로서 순수출이 포함되고, 순수출은 바로 본 모형에서 무역수지와 같기 때문이다. 법인세 개편에 따라 법인세 유효세율이 인하되는 경우 경제의 GDP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의 증대에 의해 수입이 증대되는 수입 증대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법인세가 인하되면 국내산업의 투자 증가 또는 생산기술의 향상 등에 기인한 생산성 증대로 인해 국내재화가 수입재화를 대체하여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I-8]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세 유효세율을 인하시키는 개편방안인 ACE1~ACE4의 경우 무역수지는 2016년까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증가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무역수지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은 수입대체에 의한 수입 감소효과가 소득 증가에 따른 수입 증대효과를 능가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I-11〉 법인세 개편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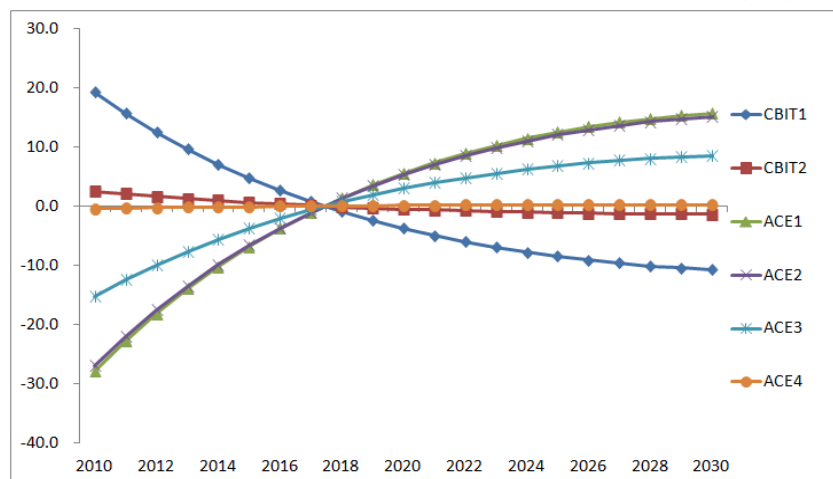
(단위: %)

	CBIT1	CBIT2	ACE1	ACE2	ACE3	ACE4
2010	19.32	2.56	-27.85	-26.84	-15.21	-0.38
2015	4.79	0.67	-6.81	-6.55	-3.71	-0.04
2020	-3.71	-0.43	5.59	5.40	3.06	0.16
2025	-8.45	-1.05	12.52	12.08	6.84	0.27
2030	-10.65	-1.34	15.72	15.16	8.59	0.33

자료: 저자 추계

[그림 VI-8] 법인세 개편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파급효과

(단위: %)



자료: 저자 추계

반면에 법인세 유효세율을 인상시키는 개편방안인 CBIT1과 CBIT2의 경우 무역수지는 2016년까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무역수지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은 소득 증가에 따른 수입 증대효과가 수입대체에 의한 수입 감소효과를 능가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법인세 개편이 노동수요 및 실질임금에 미치는 파급효과

가) 법인세 개편이 노동 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

법인세 개편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경로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가 인하되면 자본의 노동에 대한 상대가격이 하락하여 요소대체효과(factor substitution effect)에 의하여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법인세 인하로 최종생산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최종생산물 생산이 증가하고 파생수요인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산출효과(output effect)라고 한다. 법인세 인하의 산출효과는 노동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의 요소대체효과와 산출효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므로 이론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의하여 노동수요는 감소할 수도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의실험 결과, 법인세 유효세율이 인하되는 ACE 방안들의 경우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 인하의 요소대체효과가 산출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단, 기준연도인 2010년부터 노동수요의 감소폭이 큰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폭이 줄어들어 노동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동수요 감소가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법인세 유효세율이 인상되는 CBIT 방안들의 경우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노동수요의 증가 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VI-12〉 법인세 개편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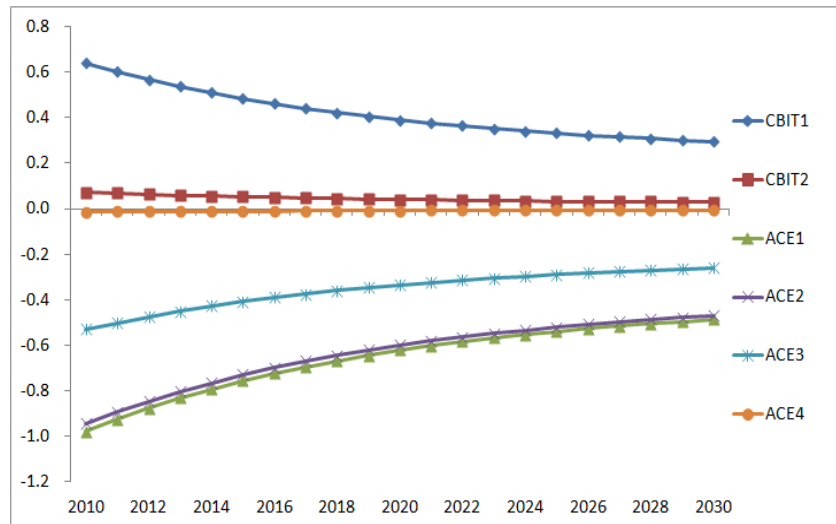
(단위: %)

	CBIT1	CBIT2	ACE1	ACE2	ACE3	ACE4
2010	0.64	0.07	-0.98	-0.94	-0.53	-0.01
2015	0.48	0.05	-0.76	-0.73	-0.41	-0.01
2020	0.39	0.04	-0.62	-0.60	-0.34	-0.01
2025	0.33	0.03	-0.54	-0.52	-0.29	-0.01
2030	0.29	0.03	-0.49	-0.47	-0.26	-0.01

자료: 저자 추계

[그림 VI-9] 법인세 개편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파급효과

(단위: %)



자료: 저자 추계

나) 법인세 개편이 실질임금에 미치는 파급효과

법인세 개편이 실질임금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질임금이 명목임금을 물가지수로 나눈 것이므로 명목임금과 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법인세 인하로 노동수요는 감소하므로 명목임금 역시 감소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그림 VI-11]과 [그림 VI-12]에서 보듯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명목임금의 하락률보다 물가의 하락률이 커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유효세율의 인하에 의한 실질임금의 상승은 <표 VI-13>과 [그림 VI-10]에 잘 나타나있다. 반면에 법인세 유효세율을 인상하는 CBIT 방안은 모두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3〉 법인세 개편이 실질임금에 미치는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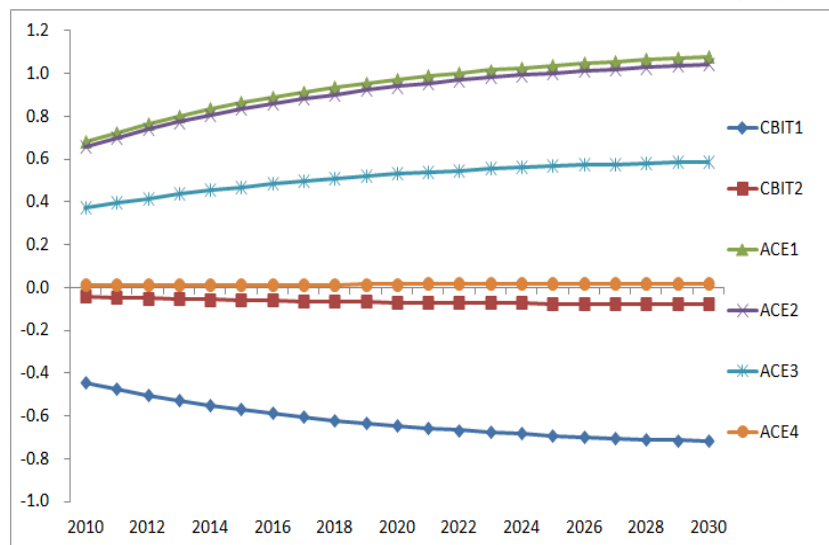
(단위: %)

	CBIT1	CBIT2	ACE1	ACE2	ACE3	ACE4
2010	-0.44	-0.04	0.68	0.66	0.37	0.01
2015	-0.57	-0.06	0.86	0.83	0.47	0.01
2020	-0.65	-0.07	0.97	0.94	0.53	0.01
2025	-0.69	-0.08	1.04	1.00	0.57	0.02
2030	-0.72	-0.08	1.08	1.04	0.59	0.02

자료: 저자 추계

[그림 VI-10] 법인세 개편이 실질임금에 미치는 파급효과

(단위: %)



자료: 저자 추계

4) 법인세 개편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법인세제 개편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생산비용이 하락

하고 생산자물가도 하락하게 될 것이다. 물론 생산자물가의 하락에 이어 소비자물가 역시 하락하게 될 것이다.

모의실험 결과 법인세 유효세율이 인하되는 ACE 방안의 경우 [그림 VI-11]과 [그림 VI-12]에서와 같이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모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법인세 유효세율이 상승하는 CBIT 방안의 경우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4〉 법인세 개편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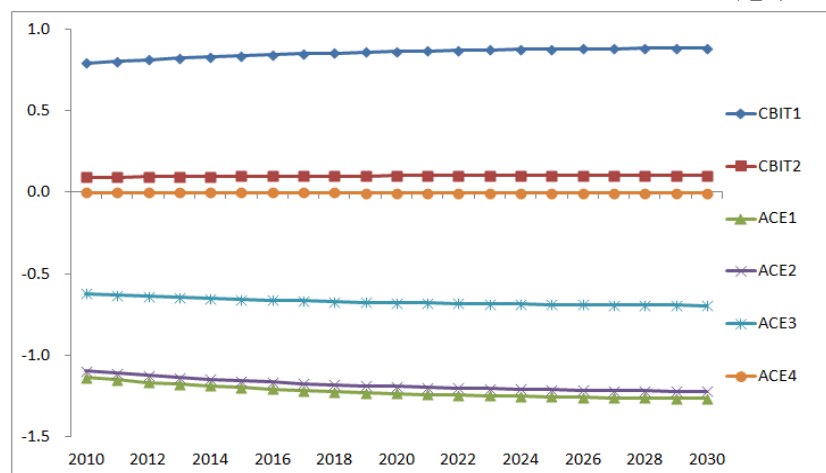
(단위: %)

	CBIT1	CBIT2	ACE1	ACE2	ACE3	ACE4
2010	0.79	0.09	-1.14	-1.10	-0.62	0.00
2015	0.84	0.10	-1.20	-1.16	-0.66	0.00
2020	0.86	0.10	-1.24	-1.19	-0.68	0.00
2025	0.88	0.10	-1.26	-1.21	-0.69	0.00
2030	0.88	0.10	-1.27	-1.22	-0.69	0.00

자료: 저자 추계

[그림 VI-11] 법인세 개편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단위: %)



자료: 저자 추계

〈표 W-15〉 법인세 개편이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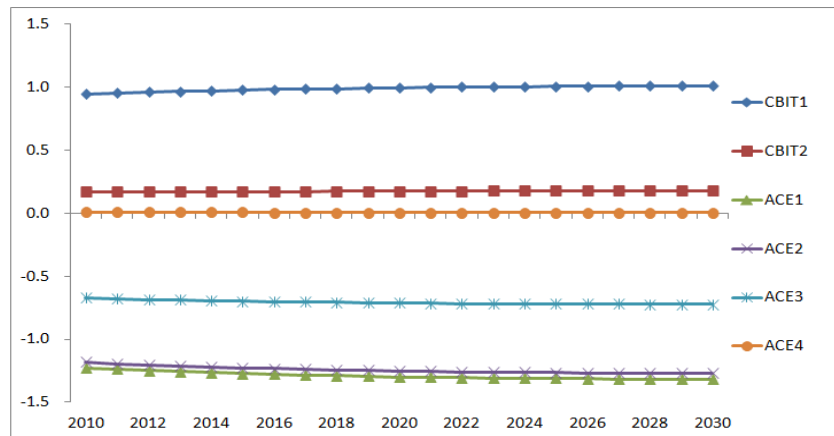
(단위: %)

	CBIT1	CBIT2	ACE1	ACE2	ACE3	ACE4
2010	0.95	0.17	-1.23	-1.18	-0.67	0.01
2015	0.98	0.17	-1.27	-1.23	-0.70	0.00
2020	0.99	0.17	-1.30	-1.25	-0.71	0.00
2025	1.00	0.17	-1.31	-1.26	-0.72	0.00
2030	1.01	0.18	-1.32	-1.27	-0.72	0.00

자료: 저자 추계

[그림 W-12] 법인세 개편이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단위: %)



자료: 저자 추계

나. 법인세 개편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파급효과

1) 소득분배에 미치는 파급효과

가) 지니계수의 변화

법인세제 개편에 의한 소득분배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소득계층별 총

소득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가계의 총소득은 임금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법인세 개편에 의한 소득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개편이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야 될 것이다.

우선 법인세제 개편이 자본소득에 미치는 결과를 살펴보면, 법인세 인하의 경우 모든 소득계층의 자본소득은 증가하는데, 자본소득의 증가율은 예상대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법인세제 개편에 의한 노동소득의 변화를 법인세 인하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 인하로 노동소득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감소하는데, 고소득계층의 노동소득 감소율이 저소득계층의 노동소득 감소율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층 노동소득의 규모가 저소득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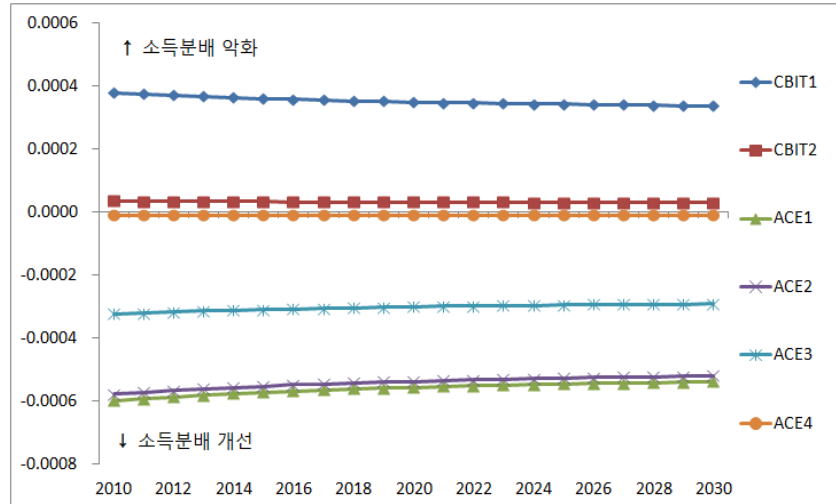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법인세제 개편이 가계소득에 미치는 최종효과는 상충되는 노동소득의 감소율과 자본소득의 증가율을 모두 고려하여 파악하여야 될 것이다. 모의실험 결과 <표 VI-16>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ACE 방안의 경우 지니계수가 축소되어 미미한 수준이지만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법인세 유효세율을 증가시키는 CBIT 방안의 경우 모두 지니계수가 증가하여 다소나마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6> 법인세 개편이 지니계수에 미치는 파급효과

	CBIT1	CBIT2	ACE1	ACE2	ACE3	ACE4
기준균형	0.354116	0.354116	0.354116	0.354116	0.354116	0.354116
2010	0.354495	0.354151	0.353518	0.353539	0.353792	0.354107
2015	0.354476	0.354149	0.353544	0.353564	0.353806	0.354107
2020	0.354465	0.354147	0.353560	0.353579	0.353815	0.354107
2025	0.354458	0.354146	0.353570	0.353589	0.353821	0.354107
2030	0.354453	0.354146	0.353577	0.353596	0.353825	0.354107

자료: 저자 추계

[그림 VI-13] 법인세 개편이 지니계수 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



주: 지니계수 변화분은 양(+)의 영역에서 '소득분배 악화'를 의미하며, 음(-)의 영역에서 '소득분배 개선'을 의미함.

자료: 저자 추계.

나) 십분위 배분율의 변화

십분위 배분율은 모든 가구를 소득의 크기에 따라 소득이 적은 순서대로 일렬로 정렬한 다음 10등분하여, 소득이 높은 제 9, 10 분위계층의 소득합계에 대한, 소득이 낮은 제 1~4 분위계층 소득합계의 비율이다. 즉, 하위 40% 계층소득의, 고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상위 20% 계층소득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며 당연히 높을수록 소득분배의 개선을 나타낸다.

$$\text{십분위 배분율} = \frac{\text{최하위 40\% 소득계층의 점유율}}{\text{최상위 20\% 소득계층의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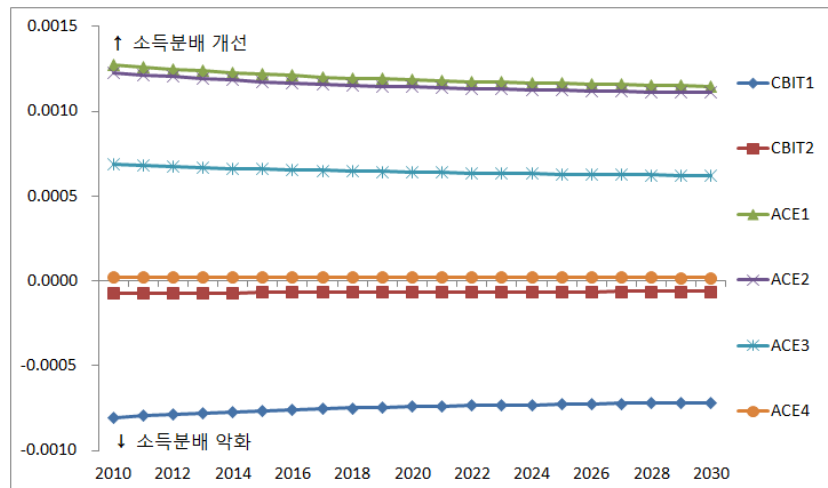
십분위 배분율 역시 ACE 방안들은 모두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반면 CBIT 방안들은 모두 소득분배를 다소나마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7〉 법인세 개편이 십분위 배분율에 미치는 파급효과

	CBIT1	CBIT2	ACE1	ACE2	ACE3	ACE4
기준균형	0.492362	0.492362	0.492362	0.492362	0.492362	0.492362
2010	0.491557	0.492288	0.493635	0.493591	0.493052	0.492382
2015	0.491596	0.492293	0.493580	0.493537	0.493021	0.492382
2020	0.491620	0.492296	0.493546	0.493505	0.493003	0.492381
2025	0.491635	0.492298	0.493525	0.493485	0.492991	0.492381
2030	0.491645	0.492299	0.493510	0.493471	0.492983	0.492380

자료: 저자 추계

[그림 VI-14] 법인세 개편이 십분위 배분율 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



주: 십분위 배분율 변화분은 양(+)의 영역에서 '소득분배 개선'을 의미하며, 음(-)의 영역에서 '소득분배 악화'를 의미함.

자료: 저자 추계

2) 후생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

법인세 개편이 후생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모든 소득계층의 후생변화를 합하여 추계한다. [그림 VI-15]에는 분석기간 동안 법인세제 개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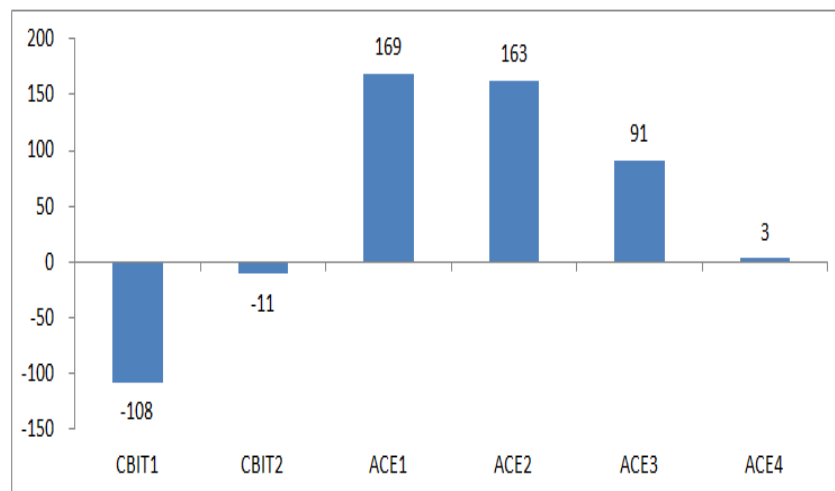
따른 경제 전체의 후생 변화가 나타나 있다.

분석결과 첫째, ACE 방안들은 모두 후생변화가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 ACE 방안에 의한 법인세제 개편은 경제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CBIT 방안들은 모두 음(-)의 값을 보이고 있어 CBIT 방안에 의한 법인세제 개편은 경제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인세제 개편안 중에서 후생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안은 법인세 유효세율을 가장 크게 낮추는 ACE1 방안으로 전 소득계층의 동등후생변화는 169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ACE2(163조원), ACE3(19조원)과 ACE4(3조원)가 뒤를 잇고 있다. 반면에 CBIT1 방안은 후생을 108조원이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15] 법인세 개편이 동등후생 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

(단위: 조원)



자료: 저자 추계

법인세 개편에 의한 소득계층별 동등후생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VI-18>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 결과, 첫째로 ACE1, ACE2 및 ACE3 방안에 의한 후생의 증가 규모는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로 ACE1, ACE2 및 ACE3 방안의 경우 전 소득계층의 후생이 증대되어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이 이루어지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인세 개편에 의하여 모든 소득계층의 후생이 증대된 것은 생산 증대 효과와 요소소득 증가가 전 소득계층에서 발생하였고, 또한 전 산업부문에 걸쳐 파급효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CBIT1과 CBIT2 방안은 법인세 개편에 의하여 전 소득계층의 후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후생의 감소규모는 소득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8〉 소득계층별 동등후생 변화

(단위: 조원)

	CBIT1	CBIT2	ACE1	ACE2	ACE3	ACE4
W01	-0.6	0.2	1.8	1.8	1.0	0.4
W02	-2.9	-0.1	5.3	5.2	2.9	0.4
W03	-5.3	-0.4	9.2	8.9	5.0	0.5
W04	-7.3	-0.6	12.0	11.6	6.5	0.4
W05	-9.0	-0.8	14.7	14.2	8.0	0.4
W06	-10.5	-1.0	16.8	16.2	9.1	0.4
W07	-12.8	-1.3	20.1	19.4	10.9	0.4
W08	-14.6	-1.5	22.5	21.7	12.2	0.2
W09	-18.1	-2.1	27.2	26.3	14.8	0.2
W10	-26.9	-3.4	38.8	37.4	21.1	-0.2
합계	-108.0	-11.0	168.5	162.7	91.4	3.1

자료: 저자 추계

다. 법인세 개편의 세수효과

법인세제 개편이 조세수입에 미치는 파급경로는 다음과 같다. 조세수입은 세율과 세원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법인세제 개편의 세수효과는 법인세 개편에 의한 유효세율의 변화와 세원의 변화에 의하여 결정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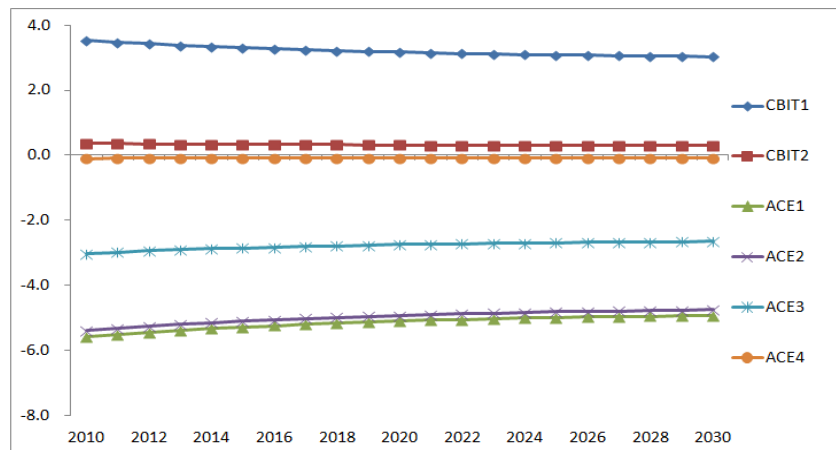
이다.

이론적으로 법인세의 유효세율이 인하되는 경우 세율 인하로 세수는 감소하게 될 것이나 세율 인하로 투자가 증가되고 투자수익이 증가하게 되어 법인세 세원은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가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상반되는 세율 인하 효과와 세원 증가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법인세 개편 모의실험 결과 법인세 유효세율을 인하시키는 ACE 방안들의 경우 세수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세원의 증가를 통한 양(+)의 효과보다 커 법인세 인하에 의해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9>에는 법인세 개편이 세수에 미치는 효과가 금액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그림 VI-16]과 <표 VI-20>에는 법인세 개편이 세수에 미치는 효과가 기준균형 대비 %변화율로 정리되어 있다.

[그림 VI-16] 법인세 개편이 조세수입에 미치는 파급효과

(단위: %)



자료: 저자 추계

법인세 유효세율을 가장 크게 인하시키는 ACE1 방안이 세수감소 효과가 가장 커 2010년에는 기준균형 대비 5.59%의 세수가 감소되고, 점차 감소폭이 줄어들어 2030년에는 4.9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CE2와

ACE3 방안도 법인세 수입을 2010년 기준균형 대비 각각 5.39%와 3.0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유효세율을 인상시키는 CBIT1 방안의 경우 2010년에는 기준균형 대비 3.53%의 세수가 증가되고, 점차 증가폭이 줄어들어 2030년에는 3.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중립적인 개편방안인 CBIT2 방안과 ACE4 방안의 경우 전자는 미미하나마 법인세 수입을 증가시키는 반면 후자는 법인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세수중립적인 방안들이 세수를 변화시키는 이유는 세수중립적인 방안이 산업평균으로 보면 기준균형의 유효세율과 동일하나 산업 간 유효세율이 상이하게 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VI-19〉 법인세 개편이 조세수입에 미치는 파급효과

(단위: 조원)

	CBIT1	CBIT2	ACE1	ACE2	ACE3	ACE4
2010	6.6	0.7	-10.4	-10.1	-5.6	-0.2
2015	7.5	0.8	-12.0	-11.6	-6.5	-0.2
2020	8.8	0.9	-14.1	-13.6	-7.6	-0.3
2025	10.4	1.0	-16.8	-16.2	-9.0	-0.3
2030	12.4	1.2	-20.1	-19.4	-10.8	-0.4
전 기간	189.5	18.8	-305.2	-294.4	-164.4	-5.5

자료: 저자 추계

〈표 VI-20〉 법인세 개편이 조세수입에 미치는 파급효과

(단위: %)

	CBIT1	CBIT2	ACE1	ACE2	ACE3	ACE4
2010	3.53	0.36	-5.59	-5.39	-3.02	-0.10
2015	3.31	0.33	-5.29	-5.10	-2.85	-0.10
2020	3.17	0.31	-5.10	-4.92	-2.75	-0.09
2025	3.08	0.30	-4.99	-4.82	-2.69	-0.09
2030	3.03	0.30	-4.92	-4.75	-2.65	-0.09

자료: 저자 추계

5. 요약 및 분석의 한계

법인세제 개편의 효과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법인세 개편이 투자 및 자본축적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인 CBIT1과 CBIT2 방안은 투자를 감소시키는 반면,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인 ACE1, ACE2, ACE3, ACE4 방안은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투자 증가 효과는 법인세 실효세율의 인하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개편이 자본스톡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투자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CBIT1과 CBIT2 방안은 자본축적을 감소시키는 반면, ACE1, ACE2, ACE3, ACE4 방안은 자본축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 개편이 자본축적에 미치는 효과는 누적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ACE1 방안의 경우 2030년까지 자본이 기준균형 대비 1.32%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둘째, GDP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무역수지($X-M$)의 합계이므로 법인세 개편이 GDP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GDP의 개별 요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하여야 될 것이다. 여섯 가지 법인세제 개편방안이 GDP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법인세 유효세율이 인하되는 ACE 방안의 경우 GDP가 증가하는 반면 법인세 유효세율이 인상되는 CBIT 방안의 경우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ACE1이 장기적으로 GDP를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ACE2가 GDP를 크게 증가시키고 ACE3과 ACE4가 그 뒤를 잇는다. ACE1의 경우 2010년 GDP는 기준균형 대비 0.34% 증가하다가 점차 GDP 증가폭이 커져 2030년 GDP는 기준균형 대비 0.9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증대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된다.

셋째, 법인세 개편이 소비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결과 법인세 유효세율을 인하시킬수록 소비자가격을 하락시켜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ACE1이 소비를 가장 크게 증가시키고, 뒤를 이어 ACE2, ACE3이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CBIT 방안은 모두 법인세 유효세율을 인상시켜 생산자가격과 소비자가격을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소비의 감소규모는 유효세율의 인상폭이 클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법인세 개편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ACE1~ACE4의 경우 무역수지는 2016년까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증가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무역수지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은 수입대체에 의한 수입 감소효과가 소득 증가에 따른 수입 증대효과를 능가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법인세 개편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유효세율이 인하되는 ACE 방안들의 경우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법인세 유효세율이 인상되는 CBIT 방안들의 경우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인세 개편이 실질임금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ACE 방안의 경우 법인세 유효세율의 인하에 의하여 실질임금은 상승하는 반면, CBIT 방안의 경우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법인세제 개편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법인세 유효세율이 인하하는 ACE 방안의 경우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모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법인세 유효세율이 증가하는 CBIT 방안의 경우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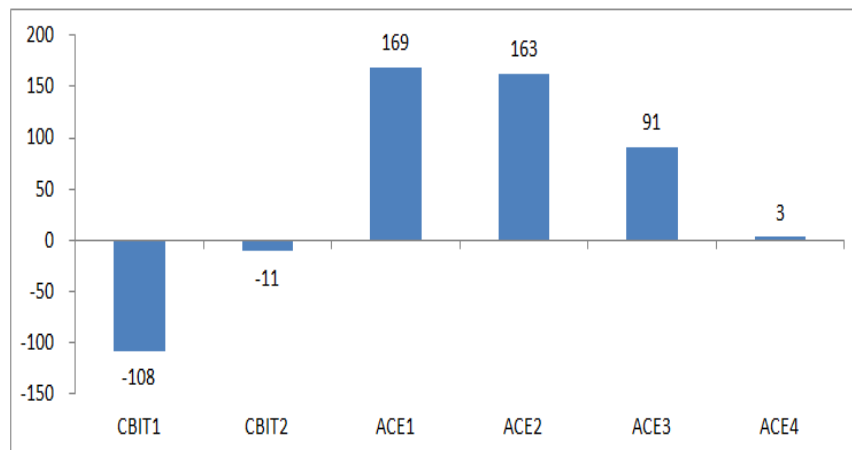
일곱째, 법인세제 개편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리하면, ACE 방안의 경우 지니계수가 축소되어 미미한 수준이지만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법인세 유효세율을 증가시키는 CBIT 방안의 경우 모두 지니계수가 증가하여 다소나마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십분위 배분을 역시 ACE 방안들은 모두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반면 CBIT 방안들은 모두 소득분배를 다소나마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법인세 개편이 후생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ACE 방안에 의한 법인세제 개편은 경제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 CBIT 방안에 의한 법인세제 개편은 경제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제 개편안 중에서 후생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안은 법인세 유효세율을 가장 크게 낮추는 ACE1 방안인 것으로 나타나 전 소득계층의 동등후생변화는 169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ACE2(163조원), ACE3(91조원)과 ACE4(3조원)가 뒤를 잇는다. 반면에 CBIT1 방안은 후생을 108조원이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17] 법인세 개편이 동등후생 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

(단위: 조원)



자료: 저자 추계

끝으로 본 장에서 분석한 CGE 모형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ACE제도와 CBIT제도는 투자자 즉, 기업의 투자 규모와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결정에 세부담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투자행태의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제시된 제도들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들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가 기업의 투자 규모와 재원조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모형 내에 내생적인 의사결정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규모의 경우 앞서 제VI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국내투자와 국제

투자가 다르게 반응하므로 국내투자와 국제투자를 구분하고 각각 적절한 세부담(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이 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포함되면 가장 좋을 것이다. 재원조달구조에 대해서도 기업이 투자 재원을 신주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는지, 차입을 통해서 조달하는지, 아니면 내부에 유보된 자산을 활용하여 투자하는지에 대한 선택이 모형 내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면 재원조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은 국내투자와 국제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평균세율 변화가 총투자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선택도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모형은 ACE와 CBIT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ACE와 CBIT가 자본비용에 대한 한계세부담 변화를 통해 한계적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았으며, 그보다는 산업별 평균세율 변화에 따른 투자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경제적 효과가 대체로 세부담 변화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추정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한 CGE모형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연구를 계속 발전시켜 좀 더 정교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법인세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한층 발전된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국제투자 결정이 모형에 포함되어야 하며, 재무구조 결정도 모형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VII. 요약 및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가장 먼저 1980년 이후 OECD 국가들의 법인세 정책 변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명목세율과 한계유효세율, 그리고 배당에 대한 실효세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명목세율은 1980년에 평균 47.5%였던 것이 2012년에는 25%로 낮아졌다. 1980년대 초에는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던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이 30여년에 걸친 경쟁적 세율 인하 과정을 통해서 세율이 동조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34개 회원국 중 28개 국가가 30%, 25%, 20%를 중심으로 하는 세 개의 세율 집단군에 각각 9개, 9개, 10개 국가씩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4.2%로 25%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에 포함된다. 배당에 대한 세율과 한계유효세율도 명목세율 변화와 유사한 세율인하 추이를 보였다.

한편 세수입의 변화를 보면, 총세수입에서 법인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에 평균 7.9%였는데, 세율 인하가 지속된 가운데도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의 비중은 계속 상승하여 2007년에는 10.6%가 되었다. 법인세 수입의 GDP 대비 비율도 1985년 2.6%에서 2007년 3.8%로 상승하였다. 세율이 인하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세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경제효율성 제고, 조세회피의 감소, 세목간 세원의 이동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세율이 빠르게 인하되는 가운데도 계속 상승세를 보였던 법인세 수입이 세율 인하가 주춤한 최근에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총세수입에서 법인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0.6%에서 2009년 8.4%로 하락하였으며, 법인세 수입의 GDP 대비 비중은 2007년 3.8%에서 2009년 2.8%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법인세 수입의 감소는 법인세의 추가적인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재정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재정수입을 감소시키는 세계개혁이 어려운 형편이다.

1980년대 초와 비교해 볼 때 세율이 상당히 인하되었고, 국가 간 세율체계의 동조화도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당초에 법인세율의 인하를 초래하였던 법인세제의 문제점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법인세는 오래전부터 부분요소세로서 생산요소의 투입을 왜곡시킴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투자 결정을 왜곡하며, 법인·비법인 간 투자 배분을 왜곡하고, 국내투자와 국제투자 배분을 왜곡하고, 자기자본과 차입의 구성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1980년대 중반부터 경쟁적으로 세율이 인하된 것은 국내·외 투자배분의 왜곡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율이 상당히 인하되어 왜곡효과가 축소되긴 하였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과세체계를 모색하여 법인세의 왜곡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제도가 현금흐름 과세제도와 ACE제도, CBIT제도이다. 현행 법인세제는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하는 과세체계인데, 이를 현금주의 과세로 전환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금흐름 과세에서는 투자 시점에 투자된 금액을 모두 비용으로 공제하므로 결과적으로 자본비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다. 또한 차입된 자금과 자기자본을 구분하지 않고 자금이 투자되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재무구조를 왜곡시키는 효과도 없어진다. 자본비용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인세는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초과수익(지대)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된다.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석유개발로부터 발생한 지대에 대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수단으로 현금흐름 과세가 사용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금흐름 과세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현행 발생주의 과세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본비용 공제(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ACE)제도이다. 이 제도는 법인소득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무위험자산의 수익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자본비용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므로 법인세가 한계적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세는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초과수익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그리고 차입금과 자기자본에 대한 과세상 취급이 동등하여 법인세의 재무구조 왜곡효과가 사라진다. ACE제도는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크로아티아에서 도입하였다가 폐지한 바 있으며, 브라질과 벨기에에서는 아직 유지되고 있다.

ACE는 법인세가 유발하는 여러 가지 왜곡을 제거한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는 반면 과세표준이 축소되므로 도입 이전과 동등한 수준의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명목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한계적 투자만을 고려할 때는 독점적 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므로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의 신설이나 국제 이동 등의 경우에는 총투자에 대한 평균 세부담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때 명목법인세율의 인상은 국제 투자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기술력 등 독점적 이익을 창출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해외 자회사 설립을 고려할 때는 평균세부담이 높은 국가를 회피하게 된다.

CBIT(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는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비용뿐만 아니라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차입금과 자기자본에 대해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재무구조 왜곡을 축소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본비용에 대한 과세는 유지되므로 투자왜곡 효과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과세표준이 확대되므로 평균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 제도는 아직 도입된 사례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들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나 유럽지역에서는 법인세제의 근본적 개혁에 대해 상당히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결과들을 보면 대체로 현금흐름 과세제도와 ACE제도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투자를 증대시키는 한편 세수입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CBIT는 자본비용을 상승시키고, 결과적으로 투자가 감소된다. 차입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재무구조는 개선

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세수입은 증가한다. 그러나 사례별로 보면 도입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진다. 브라질의 ACE 제도는 배당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배당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어 차입을 통한 배당 증대를 유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다. 또한 한계세율보다 평균세율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투자를 고려할 경우 ACE가 투자를 감소시키고 반대로 CBIT가 투자를 증가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본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ACE나 CBIT를 적용하는 경우 세부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투자와 경제성장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ACE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ACE1)에는 세수입이 27.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낮은 세율 제도를 폐지하고 초과수익에 대해 전액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ACE2)과 자본비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ACE3)을 검토하였는데, 전자는 세수 증대효과가 미미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ACE1에 비해서는 세수가 상당히 증가하나 ACE 도입 이전과 비교해서는 14.9%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중립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려면(ACE4) 자본비용에 대해서는 2010년 기준 11%(지방세 포함)보다 14.9% 높은 12.639%를 적용하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24.2% 대신 27.806%를 적용해야 한다. CBIT의 경우 현행 법인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CBIT1) 세수입이 15.8% 증가하며, 세수중립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면(CBIT2) 낮은 세율은 9.5%, 높은 세율은 20.5%가 된다.

투자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CBIT는 투자를 감소시키는 반면 ACE는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증가·감소 효과는 실효세율의 변화 크기에 비례하여, CBIT1과 ACE1의 경우에 효과가 크고, 세수중립적인 CBIT2와 ACE4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변화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의 경우에도 ACE는 GDP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반대로 CBIT는 GDP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변화의 크기는 실효세부담의 크기에 비례하여 ACE1과 CBIT1의 경우에 변화가 크고, ACE4와 CBIT2의 경우에는 미미한 정도의 변화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과세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 지금까지 큰 고민을 하지 않고 대체로 다른 국가들이 추진하는 방향을 보아가며 큰 흐름을 그대로 따라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선도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제도 도입의 효과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자본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ACE1의 경우에는 세수감소 효과가 상당히 크다. 하지만 제도를 약간 변형하여 자본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면 세수 감소 효과를 상당히 축소하면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다(ACE3). 세수중립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세수 감소 없이 약간의 효율성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가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대안에 대한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특히 자본비용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ACE3의 경우에는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로 구분되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하에서 검토해볼 만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2012년에는 법인세가 3개의 세율체제로 개편되었지만 그 전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로 구분되는 두 개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일정액 이하이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체계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과세소득의 규모를 기준으로 높은 세율과 낮은 세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명목상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조치로 인식되지만 중소기업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고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과세소득의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대기업을 구분하는 것도 타당성이 부

족하다. 수익률이 매우 낮은 기업도 대규모 기업이라는 이유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문제도 있다. 이는 기업을 분할하여 소규모로 운영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이 단일세율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CE3은 단일세율체제만이 대안이 아님을 보여준다. 과세소득의 규모가 아니라 수익률을 기준으로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 적용대상을 구분하면 기업의 소득 중 자본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경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기업이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규모를 조정하려는 유인이 사라진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연구를 계속 발전시켜 좀 더 정교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법인세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층 발전된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ACE의 효과와 CBIT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제투자 결정이 모형에 포함되어야 하며, 재무구조 결정도 모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일반균형 모형 중에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생화한 모형이 없어 부득이 그 두 가지 의사결정을 외생적인 것으로 간주하다 보니 본 분석에서는 ACE제도 및 CBIT제도의 효과를 충분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강동구, 『우리나라 법인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과세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1995.
- 곽태원, 『법인소득과세의 이론과 현실』, 한국조세연구원, 2005.
- _____, 『우리나라 조세제도 운영비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4.
- 곽태원 · 이병기 · 현진권, 『법인세제의 변화와 기업투자-토빈 q모형을 사용한 실증분석』, 연구보고서 05-30, 한국경제연구원, 2006.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1.
- 김명규, 「CGE모형을 이용한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명규 · 김성태, 「동태 CGE모형을 이용한 한국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제58집 3호, 한국경제학회, 2010, pp. 75~119.
- 김성태, 『산업별 법인세 실효세율 추정』, 용역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04.
- 김성태 · 이상돈 · 조경엽 · 임병인, 「한국의 산업별 생산의 대체탄력성 추정」, 『응용경제』 제13권 제3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11, pp. 99~122.
- 김성태 · 이인실 · 안중범 · 이상돈, 「KOCGE 모형을 이용한 법인세 개편의 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제51집 1호, 한국경제학회, 2003, pp. 5~34.
- 김성태 · 조경엽, 「한국 부품소재산업 정책모의실험 분석 - CGE모형을 중심으로」, 『응용경제』 제9권 제1호, 2007, pp. 5~36.
- 김승래, 『법인세 개편의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6.

- _____,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주체별 귀착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9.
- 김승래 · 김우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주요 세목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
- 김우철,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법인세제 개편방향」, 『한국의 조세 · 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2008.
- 김유찬,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유인 효과」, 『재정금융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원 1995.
- _____, 「최근 독일의 세제개혁」,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1. 1.
- 김종웅, 「법인소득세와 개인자본소득세의 초과부담」, 『논문집』 제14집, 경산대학교, 1996, pp. 17~33.
- 김학수,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 09-11, 한국경제연구원, 2009.
- 김홍배 · 임재영, 「Recursive CGE 모형을 이용한 경제성장과 산업별 토지 수요 예측」, 『국토계획』, 제29권, 제2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 노현섭 · 김태수,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의 관계」, 『한국조세연구』 제11권, 한국조세학회, 1996, pp. 157~188.
- 박기백, 「최근 법인세 추이와 시사점」,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1. 9.
- 박기백 · 김진, 『법인세 부담연구-미시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4.
- 박기백 · 이명현, 『세수추계의 기법개발 연구: 법인세, 관세의 세수추계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 전환효과』, 연구보고서 00-03, 한국조세연구원, 2000.
- 박정우 · 이현선,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을 위한 법인세감면제도의 효과 분석」, 『재정논집』, 한국재정학회, 1998. 6.
- 성명재 · 김현숙,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소득·부동산자산 결합분포 및 관련 세부담 분포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손 민, 「기업규모에 따른 법인세부담율 차이의 실증적 연구」, 『창업정보 학회지』, 제8권, 제4호, 한국창업정보학회, 2005, pp. 199~217.
- 손양훈 · 신동천, 「환율변동이 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제45권,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7, pp. 123~139.
- 손원익, 『주요국의 기업과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1999.
- _____, 『준조세의 실태와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98-06, 한국조세연구원, 1998.
- 안종범 · 박기백 · 김승래 · 김우철,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귀착 - 법인세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9-14, 한국경제연구원, 2009.
- 안종석, 「개방경제하에서 조세정책이 투자 및 저축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재정금융연구』 제3권 제2호, 한국조세연구원, 1996.
- _____, 『조세정책이 대내외 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94-12, 한국조세연구원, 1994.
- 안종석 · 권오성, 『금융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과세특례에 대한 연구』, 정책보고서 05-05, 한국조세연구원, 2005.
- 안종석 · 전병목, 『자본소득분리과세에 대한 연구: DIT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07-11, 한국조세연구원, 2007.
- 안종석 · 전영준, 『미래환경변화에 대비한 조세체계 개편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11-01, 한국조세연구원, 2011.
- 안종석 · 정재호, 『해외직접투자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의 재검토: 거주주의 대 원천지주의』, 연구보고서 09-04,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원윤희, 「유효한계세율의 측정을 통한 우리 나라 자본소득과세 분석」, 『한국조세연구』 제11권, 한국조세학회, 1996, pp. 111~156.
- 원종학 · 성명재,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7.
- 유병훈, 「한국 법인기업의 유효세율에 관한 연구」, 『영남경상논총』 제11권, 영남경상학회, 1993, pp. 245~264.
- 유시권, 『기업회계 기준 개정과 법인세법의 개선방향』, 정책보고서 97-09,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유시권 · 이노창 · 유재권 · 오엽록, 『기업회계 기준 개정과 법인세법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윤탤휘 · 심현옥, 「법인세율인하가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및 재무활동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제9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08.
- 이남우 · 박주철, 「2001년과 2003년의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시장반응 비교」, 『회계정보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07, pp. 199~219.
- 이두기 · 김영락, 「조세혜택법인의 내재적 조세와 법인세 부담률에 관한 실증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산업경제학회, 1998, pp. 451~478.
- 이만우, 「2001년 세제개편안의평가」,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1. 10.
- 이명훈, 「법인세의 무변명 지급이자 과세」, 『재정논집』 제8집, 한국재정학회, 1993, pp. 31~60.
- 이우택, 「법인세제의 평가와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3호, 한국세무학회, 1999, pp. 67~100.
- 이인실 · 김성태 · 안중범 · 이상돈, 『법인세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12, 한국경제연구원, 2002.
- 이장규, 「일본의 세제개혁 방향」,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1. 1.
- 이준규, 「법인과세의 공평과 법인세부담의 측정방법」, 『사회과학논총』 제9집,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91, pp. 239~258.
- 전영준, 「CGE모형을 이용한 법인세의 성장 및 분배효과 분석」, 『경제분석』, 한국은행, 2003.
- 정문현, 「미국과 한국의 법인세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 『부산상대논집』 제64집,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1993, pp. 69~90.
- 정재호, 「미국의 조세감면정책」,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1. 6.
- 조경엽, 「2003~2005년 세제개편 평가: 동태적 CGE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과 형평성 평가를 중심으로」, 『공공경제』, 제11권, 제1호, 2006.
- 조경엽 · 나인강,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기술진보」, 『경제학연구』 제51집,

- 제3호, 한국경제학회, 2003, pp. 263~294.
- 조계근, 「우리 나라 제조업의 유효한계세율 분석」, 『재정논집』 제11집 제1호, 한국재정학회, 1996, pp. 185~214.
- 최광 · 나성린 · 박대근 · 안종범 · 윤건영 · 한경동 · 허찬국, 『경제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와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1998. 12.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1.
- _____, 『한국통계연감』, 2011.
- 한국은행, 『2010 산업연관표』, 2012.
- 한국조세연구원, 『미래경제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2012. 7.
- 한도숙, 『국제적인 조세경쟁과 조세회피에 대응한 조세협력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1.
- 행정안전부, 『2011 지방세정연감』, 2011.
- 현진권,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OECD 평가」,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1. 2.
- _____, 『조세관련 통계자료집』, 한국조세연구원, 2000.
- NICE 신용평가정보, KISVALUE DB.

- Atkinson, A. B. and J. E. Stiglitz, *Lectures on Public Economics*, McGraw Hill, New York, 1980.
- Auerbach, A. and Joel Slemrod,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ax Reform Act of 1986,"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997, pp. 589~632.
- Auerbach, A. and Laurence Kotlikoff, *Dynamic Fiscal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Auerbach, A., "Who Bears the Corporate Tax? a Review of What We know," *NBER/Tax Policy and the tax Economy*, Vol. 20, Issue 1, 2006, pp. 1~40.
- _____, "The Deadweight Loss from 'Non-Neutral Capital Income

- Tax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40, 1989, pp. 1~36.
- _____. "Corporate Taxation in the U.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1983.
- Avi-Yonah R. S., "Risk Rents Regressivity: Why the United States Needs Both an Income Tax and a VAT," *Tax Notes International*, Vol. 37, No. 2, 2004, pp. 177~195.
- Bernstein, P. M., W. O. Montgomery, and T. F. Rutherford, 1999, "Global Impacts of the Kyoto Agreement: Results from MS-MRT Model," *Resource and Energy Economics* Vol. 21, pp. 375~413.
- Boadway, R.W. and D.E. Wildasin, *Public Sector Economics*, 2nd Edition, Little Brown, 1984.
- Boskin, Michael, "Taxation, Saving, and the Role of Interes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6, No. 2, Part 2, 1978, pp. S3~27.
- Bradford, David, *Distributional Analysis of Tax Policy*, Washington D.C. : The AEI Press, 1995.
- _____. "Factor Prices May be Constant, but Factor Returns are Not," *Economics Letters*, 1, No. 3, 1978, pp. 199~203.
- Brav, A. and Graham, J. R. and Harvey, C. R. and Michaely, R., "The Effect of the May 2003 Dividend Tax Cut on Corporate Dividend Policy: Empirical and Survey Evidence," *National Tax Journal*, Vol. 61, Issue 3, 2008, pp. 381~396.
- Brocker, Johannes, Chamberlinian, "Spati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ling: A theoretical framework," *Economic Systems Research*, Vol. 7, No. 2, 1995.
- CFE(Confederation Fiscale Européenne), "Corporate Income Tax in Belgium," <https://www.cfe-eutax.org/taxation/corporate-income-tax/belgium>, 2012.

- Colm, G., "The Corporation and Corporation Income Tax," *Essays in Public Finance and Fiscal Policy*, 1955, pp. 88~90.
- de Mooij Ruud A. and Michael P. Devereux, "An Applied Analysis of ACE and CBIT reforms in the EU,"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Vol. 18, 2011, pp. 93~120.
- de Mooij Ruud A., "Tax Biases to Debt Finance: Assessing the Problem, Finding Solutions," IMF Staff Discussion Note, 2011.
- Desai, Mihir A., C. Fritz Foley and James R. Hines Jr., "Repatriation Taxes and Dividend Distortions," *National Tax Journal*, 54, Vol. No. 4, 2001, pp. 829~851.
- Devereux Michael P. and Peter Birch Sørensen, "The Corporate Income Tax: International Trends and Options for Fundamental Reform," *European Economy*, No. 264, 2006.
- Devereux Michael P. and Rachel Griffith, "Evaluating Tax Policy for Location Decision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Vol. 10, 2003, pp. 107~126.
- Dixon, P. B. and M. T. Rimmer, "Changes in Indirect Taxes in Australia: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n Economic Review*, Vol. 32 No. 4, 1999, pp. 327~348.
- Feldstein, M. and L. Summers, "Inflation and the Taxation of Capital Income in the Corporate Sector," *National Tax Journal*, Vol. 32, 1979, pp. 445~470.
- Feldstein, M., "The surprising incidence of a tax on pure rent: A new answer to an old ques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5, 1977, pp. 349~360.
- Feldstein, Martin, "Imputing Corporate Tax Liabilities to Individual

- Taxpayers,” *National Tax Journal*, Vol. 90, 1980, pp. 314~329.
- Finke, K. and J. H. Heckemeyer, “Assessing the Impact of ACE and CBIT Regimes on Heterogeneous Firms and Aggregate Tax Revenue - A Microsimulation Analysis for Germany,”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66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Public Finance(IIPF), August 23-26, 2010.
- Fuchs, Victor, Alan Krueger, and James Poterba, “Why Do Economists Disagree about Policy? The Role of Beliefs About Parameters and Values,” NBER Working Paper 6151, 1997.
- Fullerton, Don and Diane L. Rogers, *Who Bears the Lifetime Tax Burden?*, Washington D. C. The Brooking Institution, 1993.
- Funke, M., “Determining the Taxation and Investment Impacts of Estonia’s 2000 Income Tax Reform,” *Finnish Economic Papers*, Vol. 15, 2002, pp. 102~109.
- Gordon, R., L. Kalambokidis and J. Slemrod, “Do We Now Collect any Revenue from Taxing Capital Incom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88, No. 5, 2004a, pp. 981~1009.
- _____, “Toward a Consumption Tax and Beyond,”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4, No. 2, 2004b, pp. 161~165.
- Goulder, L. H. and Schneider, S. H., “Induced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Attractiveness of CO₂ Abatement policies,” *Resource and Energy Economics* Vol. 21, 1999, pp. 211~253.
- Gravelle and Laurence Kotlikoff, “Corporate Taxation and the Efficiency Gains of the 1986 Tax Reform Act,” *Economic Theory* Vol. 6, 1995, pp. 51~81.
- _____, “The Incidence and Efficiency Costs of Corporate Taxation When Corporate and Noncorporate Firms Produce

the Same Good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7, 1989, pp. 749~90.

Gravelle, Jane, “Corporate Tax Incidence in an Open Economy,” Proceedings of the 86th Annual Conference of the National Tax Association, Columbus, Ohio: *National Tax Association*, 1994.

Gravelle, *The Economic Effects of Taxing Capital Income*, Cambridge: MIT Press, 1994.

Harberger, A. C., “The Incidence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Revisited,” *National Tax Journal*, Vol. LXI, No. 2, 2008, pp. 303~312.

_____, “The ABCs of Corporate Tax Incidence: Insight into the Open Economy Case,” in *Tax Policy and Economic Growth*, Center for Policy Research, American Council for Capital Formation, 1995.

_____, “Efficiency Effects of Income from Capital,” *Effects of Corporation Income Tax*, ed. M. Krzyzaniak, Wayne State Univ. Press, 1966.

_____, “The Incidenc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0, 1962, pp. 215~240.

Hines, James, Jr. and Eric Rice, “Fiscal Paradise: Foreign Tax Havens and American Busines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9, No. 1, 1994, pp. 149~82.

Hufbauer, Gary Clyde and Ariel Assa, *U. S. Taxation of Foreign Income*, Washington, D. 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October 2007.

Institute for Fiscal Studies(IFS), *Tax by Design: Mirrlees Review*, September 2011.

Jones, R. W., “The Structure of simple general equilibrium models,”

- Journal of the Political Economy* Vol. 73, 1965, pp. 557~572.
- Keuschnigg Christian and Martin D. Dietz, "A Growth Oriented Dual Income Tax,"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Vol. 14, 2007, pp. 191~221.
- King, M. A. and D. Fullerton (eds.),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A Comparative Study of the U.S., U.K., Sweden and West German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4.
- Klemm Alexander, "Allowances for Corporate Equity in Practice," IMF Working Paper WP/06/259, 2006.
- Koe Lu and Charles and Charles Swenson, "Tax burdens around the world : How do Asia Pacific Companies and Countries Compare?," *Asia-Pacific Journal of Taxation*, 2000
- Kotlikoff, Laurence and L. H. Summers, Tax Incidence, In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edited by Alan J. Auerbach and Martin S. Feldstein, Amsterdam: North-Holland, 1987.
- Kydland, F. E. and Prescott, E. C., "Time to Build and Aggregate Fluctuations," *Econometrica*, Vol. 50, 1982, pp. 1345~1370.
- Lehis L. et al., "The Compatibility of the Estonian Corporate Income Tax System with Community Law," *Juridicia International*, Vol. XV, 2008.
- Mankiw, Gregory, *Who pays the corporate income tax?*, Harvard University, Working paper, 2006.
- Mieszkowski, P.M., "On the theory of tax inc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5, 1967, pp. 250~262.
- Mutti, John and Harry Grubert, "The Taxation of Capital Income in an open Economy: The Importance of Resident-Nonresident Tax Treat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7, 1985, pp. 291~309.

- OECD, "Taxation of Widely-held Dividend Income, Interest Income and Capital Gains Earned by Individuals in OECD Countries," CTPA/CFA/WP2(2011) Vol. 28, 2011.
- _____, *Fundamental Reform of Corporate Income Tax*, Tax Policy Study No. 16, 2007.
- _____, *Revenue Statistics 2011*, 2011.
- _____, *Tax Burdens: Alternative Measures*, 2000.
- _____, Tax Database.
- Radulescu D. M. and Michael Stimmelmayer, "ACE vs. CBIT: Which is Better for Investment and Welfare?," CESIFO Working Paper No. 1850, 2006.
- Rasmussen, T. N. and T. F. Rutherford, "Modeling Overlapping Generations in a Complementarity Format,"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Aarhus and University of Colorado, 2001.
- Rutherford, t. F., *The GAMS/MPSGE and GAMS/MILES User Notes*, Washington D. C., GAMS Development corporation, 1994.
- Shome, P. and C. Schutte, "Cash-flow Tax," in P. Shome(ed), *Tax Policy Handbook*, Fiscal Affairs Department, IMF, 1995.
- Sibert, Anne, "Taxing Capital in a Large Open Econom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4, 1990, pp. 297~319.
- Slemrod, "Taxation With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In *Uneasy Compromise: Problems of a Hybrid Income- Consumption Tax*, edited by Henry J. Aaron, Harvey Galper, and Joseph A. Pechman,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8.
- _____, "Free Trade Taxation and Protectionist Taxation,"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Vol. 2, 1995a, pp. 471~89.

- _____. "Professional Opinions About Tax Policy," *National Tax Journal*, Vol. 48, 1995b, pp. 121~47.
- U.S. Treasury, *Integration of Individual and Corporate Tax Systems-Taxing Business Income Once*, Washington, D. C., 1992.

〈부록〉 동태 CGE모형 설명

A. 소비부문

- 가계는 소득수준에 따라 10분위 소득계층으로 구성됨.
 - 각 소득계층은 하나의 대표적 소비자로 구성되며 시제 간 예산제약조건하에 효용 극대화를 행동원리로 소비를 결정함.
 - 또한, 모든 가계는 미래에 대해 완벽한 예측이 가능함.
- 계층별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함수로 가정함.

$$\underset{Q, L}{Max} U_w(Z_{w,t}) = \sum_{t=0}^{\infty} \beta^t \frac{Z_{w,t}^{1-\theta}}{1-\theta} \quad (A-1)$$

$$s.t. Z_{w,t} = [\alpha Q_{w,t}^{\rho} + (1+\alpha)(H_{w,t} - L_{w,t})^{\rho}]^{\frac{1}{\rho}} \quad (A-2)$$

- 단, 여기서 하첨자 w 는 소득계층, β 는 시간에 대한 할인율, $1/\theta$ 은 시제 간 대체탄력성(intertemporal elasticity of substitution)을 나타냄.
- $L_{w,t}$ 는 t 기의 소득계층별 노동시간을 의미하며, $H_{w,t}$ 은 부존시간(endowment time), 따라서 $H_{w,t} - L_{w,t}$ 은 여가시간이 됨.
- 계층별 최종 소비복합재화($Z_{w,t}$)는 소비복합재화 $Q_{w,t}$ 와 여가의 CES함수 형태로 구성됨.
 - 소비자의 시제 간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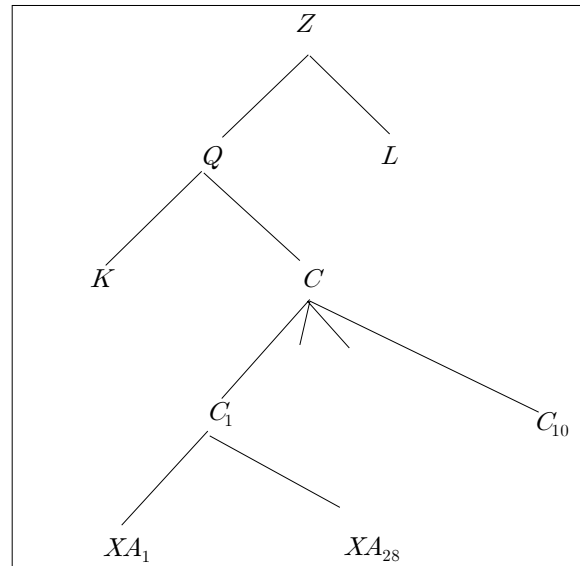
$$\begin{aligned}
& \sum_t P_{Q,t} Q_{w,t} + \sum_t P_t I_{w,t} + \sum_t R_t K_{w,t}^d \\
&= \sum_t W_{w,t} L_{w,t} + \sum_t R_t K_{w,t}^s + \sum_t Tr_{w,t}
\end{aligned} \tag{A-3}$$

- 위의 가격은 모두 시간에 대한 할인율을 반영한 세후가격임.
- $P_{Q,t}$ 는 할인율을 반영한 소비복합재화의 t 기의 세후가격, P_t 는 할인율이 반영된 자본에 대한 투자재의 세후가격, $W_{w,t}$ 는 w 소득계층의 자본에 대한 세후임금률, R_t 는 자본의 세후수익률,
- $I_{w,t}$ 는 w 소득계층의 자본에 대한 투자를 나타내고, $K_{w,t}^d$ 와 $K_{w,t}^s$ 는 자본에 대한 w 계층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냄.

□ 자본과 노동은 이동이 자유롭다고 가정하였음.

- 따라서, 각 부문은 동일한 가격으로 노동과 자본을 구매할 수 있음.
- 균형에서 소득계층별 총노동공급 $\sum_w L_{w,t}$ 은 산업의 총노동수요 ($\sum_i L_{i,t}$)와 일치함.
- 또한 총자본 공급 $\sum_w K_{w,t}^s$ 은 산업과 가계에서 수요하는 자본의 양 $\sum_i K_{i,t} + \sum_w K_{w,t}^d$ 과 일치함.

[부도 1] 가계의 소비재 복합구조



- 소득계층별 소비복합재화는 $Q_{w,t}$ 는 자본의 서비스와 소비재화로 복합됨.

$$Q_{w,t} = [\alpha K_{w,t}^\rho + (1 - \alpha) C_{w,c,t}^\rho]^\frac{1}{\rho} \quad (\text{A-4})$$

- 소비복합재화는 $C_{w,c,t}$ 는 t 기에 w 소득계층의 c 재화에 대한 소비임
○ 이는 다음과 같은 아밍톤 재화로 구성됨.

$$C_{w,c,t} = [\sum_i^{28} \alpha_i (XA_{w,c,i,t})^\rho]^\frac{1}{\rho} \quad (\text{A-5})$$

- 단, $XA_{w,c,i,t}$ 는 t 기에 w 소득계층이 소비하는 c 소비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i 아밍톤 복합재화를 의미함.

B. 생산부문

- 모든 산업에서 생산되는 최종소비재화는 복합단계를 거쳐 생산됨.
○ 김성태·조경엽(2007)과 유사한 과정을 통하여 생산됨.
○ 생산구조의 특징을 복합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각 산업에서 생산된 t 기의 최종재화($Y_{i,t}$)는 노동·자본복합재화와 아밍톤 중간재화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생산됨.

$$Y_{i,t} = [\alpha KL_{i,t}^\rho + (1 - \alpha) XA_{i,t}^\rho]^\frac{1}{\rho} \quad (\text{A-6})$$

- 여기서 $KL_{i,t}^\rho$ 와 $XA_{i,t}^\rho$ 는 t 기에 i 생산부문에 투입된 노동·자본복합재화와 아밍톤 재화를 각각 의미함.²³⁾

23) 아밍톤 복합재화란 국내재화와 수입재화 사이의 복합과정을 나타내는 방법의 하나로서 국내재화와 수입재화가 불완전한 대체관계에 있다는 소위 아밍톤 가정(Armington Assumption)에 근거한다. 반대로 국내재화와 수입재화가 완전대체 관계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Heckscher-Ohlin 방식이다. 아밍톤 가정은 최초 Armington(1969)가 제시한 것으로서 “원산지가 국내인 상품과 외국인 상품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 아밍톤 재화($XA_{i,t}$)는 국내재화($XD_{i,t}$)와 수입재화($XM_{i,t}$)의 복합재화로서 그 생성과정은 다음과 같음.

$$XA_{s,t} = [\alpha XD_{s,t}^\rho + (1 - \alpha)XM_{s,t}^\rho]^\frac{1}{\rho} \quad (A-7)$$

- 부문 i 에서 생산된 최종재화 $Y_{i,t}$ 는 수출재화와 국내소비재화로 전환됨.
- 또한 $Y_{i,t}$ 가 불변 전환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에 의해 t 기의 수출재화($XE_{i,t}$)와 국내소비재화($XD_{i,t}$)로 전환된다고 가정함.²⁴⁾

$$Y_{i,t} = [\alpha XE_{i,t}^\rho + (1 - \alpha)XD_{i,t}^\rho]^\frac{1}{\rho} \quad (A-8)$$

- 생산부문에서 소요되는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으로 구분하여 모형을 설정함.
- 각 생산요소 시장에서 복합된 노동과 자본은 각 산업으로 다음 식과 같이 배분됨.

$$\left(\sum_w \alpha_w L_{w,t}^\rho \right)^\frac{1}{\rho} = L_t = \sum_i L_{i,t} \quad (A-9)$$

$$\left(\sum_w \alpha_w K_{w,t}^\rho \right)^\frac{1}{\rho} = K_t = \sum_i K_{i,t} + \sum_i K_{c,w,t} \quad (A-10)$$

□ 아밍톤 복합재화의 분배과정

- 총 아밍톤 복합재화 s 는 산업의 중간재화, 가계와 정부의 소비재화, 투자재 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분배됨.

$$XA_{s,t} = \sum_i XA_{s,i,t} + \sum_w \sum_c XA_{w,c,s,t} + XA_{inv,s,t} + XA_{g,s,t} \quad (A-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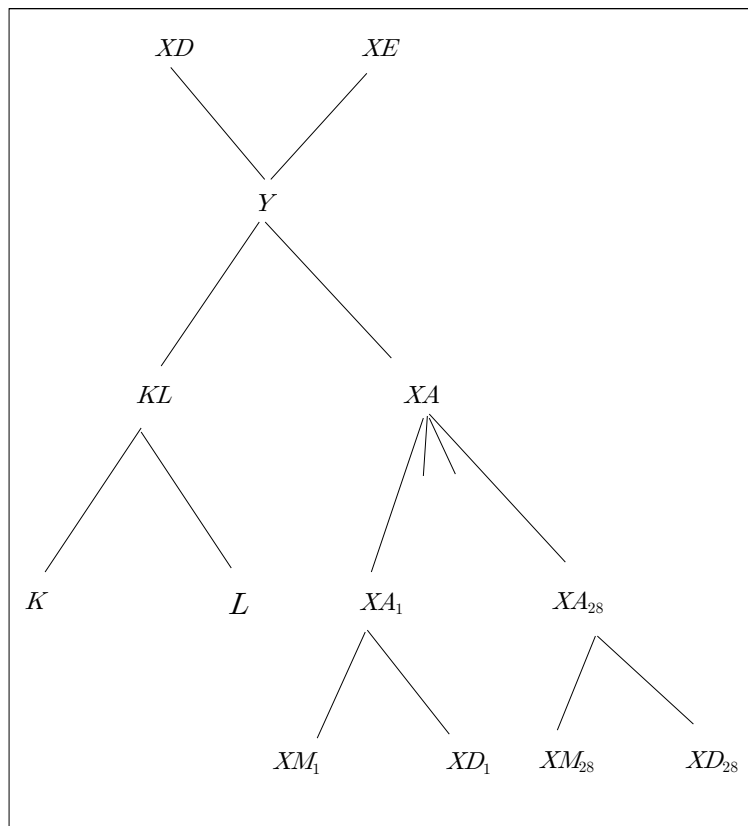
- 여기서 $XA_{s,i,t}$ 는 t 기에 i 부문에서 중간재로 사용된 s 아밍톤

24) 여기서 주의할 것은 편의상 모든 CES 형태의 생산함수는 동일한 대체탄력성(ρ)을 갖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각각의 크기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ρ 는 대체탄력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파라미터로 간주하면 될 것이다.

복합재화, $XA_{w,c,s,t}$ 는 t 기에 w 소득계층이 c 소비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한 s 아밍톤 복합재화를 나타냄.

- $XA_{inv,s,t}$ 는 투자재 형성을 위해 사용된 s 아밍톤 복합재화, $XA_{g,s,t}$ 는 정부에서 소비한 s 아밍톤 복합재화를 나타냄.

[부도 2] 산업의 최종소비재화 생산구조



C. 정부부문

- 정부부문은 크게 정부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정부는 주로 각종 세금 징수를 통한 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함.

○ 또한, 정부소비, 이전지출 등을 통해 지출함.

□ 본 모형에서는 조세를 법인세, 관세, 생산세, 근로소득세로 간소화하여 분석함.

○ t 기의 정부수입(Φ_t)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begin{aligned}\Phi_t + D_t = & \sum_i \tau_i^1 r_{i,t} K_{i,t} + \sum_i \tau_{i,t}^2 P_{XD_{i,t}} XD_{i,t} \\ & + \sum_i \tau_{i,t}^3 P_{XM_{i,t}} XM_{i,t} + \sum_w \tau_w^4 W_t L_{w,t}\end{aligned}\quad (\text{A-12})$$

- 여기서 D_t 는 t 기의 정부부채를 나타내며,
- τ_i^1 는 자본수익에 대한 산업별 유효세율로서 법인세율을 나타내고,
- $r_{i,t}$ 는 t 기의 i 산업의 세전 자본수익률을 나타냄.
- $\tau_{i,t}^2$ 는 t 기의 i 부문에서 생산된 국내재화($XD_{i,t}$)에 대한 생산세율, $P_{XD_{i,t}}$ 는 t 기의 국내재화의 가격을 나타냄.
- $\tau_{i,t}^3$ 는 t 기의 i 부문의 수입재화($XM_{i,t}$)에 대한 관세율, $P_{XM_{i,t}}$ 는 t 기에 수입된 수입재화의 가격을 나타냄.

○ t 기의 정부지출(Γ_t)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Gamma_t = \sum_s P_{XA_{s,t}} XA_{s,t} + \sum_w Tr_{w,t} \quad (\text{A-13})$$

- $P_{XA_{s,t}}$ 는 s 아밍톤 재화($XA_{s,t}$)의 세후가격을 의미함.
- $Tr_{w,t}$ 는 t 기에 w 소득계층에 이전한 정부지출을 나타냄.

□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예산균형은 전 기간에 걸친 시제 간 균형예산(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을 가정함.

○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예산균형은 다음과 같음.

$$\sum_{t=0} \Phi_t + \sum_{t=0} D_t = \sum_{t=0} \Gamma_t \quad (\text{A-14})$$

D. 대외부문

- 본 모형에서는 소국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재화의 가격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며, 수출도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함.
- 그러나 무역수지 불균형으로 인한 경상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모형에서는 환율은 고정환율제도와 같이 고정함.
 - 대신 외국과의 자본이동에 의해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가정함.
 - 이는 국제 간 자본거래가 자유롭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음.

$$\sum_i P_{XE_i,t} XE_{i,t} - \sum_i P_{XM_i,t} XM_{i,t} + P_{ex} B_t = 0 \quad (A-15)$$

- 여기서 $P_{XE_i,t}$ 는 i 재화의 세후수출가격을 나타내며, $P_{XM_i,t}$ 는 i 재화의 세후수입가격을 나타냄.
- 환율(P_{ex})은 기간에 상관없이 고정됨.

- 무역수지의 불균형은 외국과의 자본이동(B_t)이 내생적으로 변동하여 해소되는 것으로 가정함.

<국문요약>

법인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개혁에 관한 연구

안종석 · 김성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세는 법인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이러한 과세제도는 법인의 투자와 재무구조를 왜곡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기업활동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투자 왜곡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으며, 세계 각국은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처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법인세가 현행의 당기순이익 과세체계를 유지하며 국가 간 세율 격차가 존재하는 한 법인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세율을 계속 인하할 경우 세수입의 감소도 우려된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재정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재정수입을 감소시키는 세제 개혁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과세체계를 모색하여 법인세의 왜곡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적절한 수준의 세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금흐름 과세제도와 ACE, CBIT제도인데, 본 보고서에서는 법인세 과세체계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의 내용과 특징, 다른 국가에서의 적용사례, 경제적 효과를 검토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경우에 세율체계의 변화,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투자 등)에 대해 분석한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과세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 지금까지 큰 고민을 하지 않고 대체로 다른 국가들이 추진하는 방향을 보아가며 큰 흐름을 그대로 따라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선도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비용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ACE3)의 경우에는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로 구분되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하에서 검토해볼 만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Abstract>

A Study on Fundamental Reform of Corporate Income Tax in Korea

Jongseok An · Sung Tai Kim

There are many discussions and researches on fundamental reform of corporate income tax in European countries, and some of them introduced new systems like cash flow tax system and ACE(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Also in the U.S., there are discussions on reforming corporate income tax into CBIT(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 However, in Korea,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did not pay much attention on this issue yet.

In this report, we examined fundamental reform of corporate income tax in Korea. Firstly, we investigated trends of corporate income tax system in OECD countries and the reasons why the fundamental reform became an important issue. We also discussed the reasons why we have to consider the fundamental reform in Korea

Secondly, we reviewed literature on cash flow tax system, ACE, and CBIT. We discussed theoretical issues, precedent cases of reforms, and evaluations of previous or hypothetical reforms.

Lastly, we studied on the introduction of ACE and CBIT in Korea. We investigated changes in tax revenue and the revenue-neutral tax rates in new systems. We also estimated expected effects of ACE and CBIT on investment, GDP, employment, and welfare through dynamic CGE model for Korean Economy.

〈著者略歴〉

안중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경제학 박사

현,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소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研究報告書 12-05

법인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개혁에 관한 연구

2012년 12월 24일 인쇄
2012년 12월 31일 발행

저 자 안중석 · 김성태

발행인 조원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일 지 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2

ISBN 978-89-8191-603-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7,000원